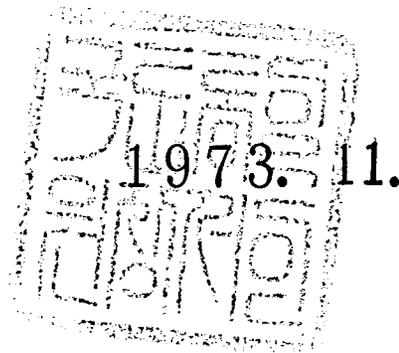


# 開發途上國의 軍備에 對한 強大國의 役割



國土統一院



## 머 리 말

인류문명의 발달과 병진한 대소 분쟁은 도처에서 야기되어 수 많은 역사의 페이지를 점철해 왔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군비경쟁은 평화유지를 위한 명분속에 일익 발전을 거듭하여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선진개발국과 저개발국간에 있어서의 이 무기무역은 군사 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은 재언을 요치 아니할 것이며 이를 편찬하게 된 것도 앞으로 군사분야 연구에 팔목할만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믿는 마음에서 발간케 된것이다.

1973년 11월

국토통일원



# 차 례

## 제 1 장 무기 무역억제협상 및 제안의 연혁 — 3

### 제 1 절 2 차대전 이전의 제안 — 3

1. 1890년의 브르셀법 — 3

2. 국제연맹 규약 — 3

3. 1919년의 생 제르맹 협약 — 5

4. 국제연맹 연감 — 6

5. 1925년의 제네바 협약 — 9

6.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있어서의 기타의 제안들 — 14

### 제 2 절 2 차대전 이후의 제안 — 18

#### 서 론 — 18

1. 일반적 제안 — 19

2. 지역적 제안 — 33

3. 기타의 공식, 비공식 제안 — 39

제 3 절	각종제안의 평가	44
1.	각개제안의 목적	44
2.	무기무역규제의 장애물	46
3.	가능성있는 제안	51
4.	결 론	69

## 제 2 장 국 동 77

제 1 절	서 론	77
가.	양극화	83
나.	북 령	85
다.	그밖의 수원국	86

제 2 절	북 한	89
	서 론	89
가.	한국전쟁	91

제 3 절	한 국	95
	서 론	95

제 4 절		103
1.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103

2. 중공을 중심으로	114
3. 북한	115
4. 월맹	117

부 록 121

1. 미국방에 관련된 원조현황	123
가. 군사원조 계획 ( M A P )	125
나. 군사판매계획 ( M S P )	125
다. 동남아시아 병력에 대한 군사원조	126
라. 잉여장비 품목의 인도	126
마. 해군함정차관	126
바. 추가원조	126
사.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	127
아. 공공안전계획	127
2. 제 3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현황 ( 지역별 )	129
3. 제 3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현황 ( 미국이 정한 범주별 )	135
4. 남북한의 군사방위조약	141
가. 한. 미 상호방위조약	143
나. 조. 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145

5.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한·미간의 공동성명 ————— 151

6.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 155

開發途上國의 軍備에 대한 強大國의 役割



# 才 1 章 武器貿易抑制協商 및 提案의 沿革

## 第 1 節 2 次大戦以前의 提案

### 1. 1890 年의 브르셀法

武器貿易을 規制하기 위한 最初의 國際的 努力은 1890 年의 브르셀法<sup>(1)</sup>으로 불리우고있는 아프리카 奴隸貿易抑制一般法에 그 일부로 內包되어있다. 이 國際法은 유럽 13 個國과 美國, 이란, 잔지바르 및 콩고自由國간에 調印되었다. 이 法은 本質的으로 奴隸貿易에 관한 것이며 그 明示的 目的은 『아프리카 奴隸貿易이 낳은 犯罪行爲와 慘狀에 終止符를 찍음으로써 아프리카 原住民을 效果的으로 保護하고 尙大한 아프리카大陸에 平和와 文明의 惠沢을 確保』해주는 데 있었다. 이 法은 北緯 20 度와 南緯 20 度사이의 아프리카 地域에 效果的인 保障下에서를 除外하고는 火繩銃과 火藥以外의 모든 火器 및 彈藥을 搬入하는것을 禁止하고있다.

### 2. 國際聯盟規約

1918 年 1 次大戦의 終戰과 더불어 1 次大戦勃發主因의 하나는 1914 年以前의 軍備競争이었다는 遺念이 普通化했다. 또한 戰時와 平和時의 武器輸出規制가 世界平和에 크게 寄與할수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같은 見解는 유럽과 美國에서 広範한 國民的

支持를 얻었고 그 결과 이 문제는 極久的인 世界平和 確保를 目的으로 1919년 創設된 國際聯盟의 活動에 그 足跡을 새기게 되었다.

國際聯盟이 이 分野에서 취한 그 後의 모든 措置의 法的 根柢는 國際聯盟 規約<sup>(2)</sup>에 具現되어있다. 國際武器貿易과 武器製造는 그것이 全般的인 軍備縮小와 관련하여 지나고있는 重要性을 떠나서 그 自体로서 獨自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民間武器製造問題와 全般的인 武器貿易統制에 관한 國際聯盟規約의 關係條文인 同 規約 第8條 5項은 『聯盟會員國은 私企業의 兵器 및 戰爭道具製造가 重大한 反對의 대상이 된다는데 合意한다. 聯盟理事會는 兵器 및 戰爭道具製造能力을 갖지 못한 聯盟會員國의 必要에 따라 그들의 安全을 위해 必要한 充分의 配慮를 하면서 (私企業의 兵器 및 戰爭道具) 製造에 隨伴되는 惡影響을 防止할 수 있는 方案을 勸告한다』고 宣稱하고있다.

또 第23條 d項에서 聯盟會員國들은 『武器 및 彈藥去來統制가 共同의 利益을 위해 必要한 國家들과의 武器 및 彈藥貿易의 全般的 監視權을 聯盟에 委任한다』는 方針을 闡明하고 있다.

國際聯盟規約은 1919년 4월에 採択되었다. 武器貿易規制의 責任은 분명히 國際聯盟에게 있었지만 폭넓은 解釈은 可能했다. 즉 諸條文의 適用範圍를 一定한 國家의 武装을 계속 解除시키고 이를 監視하는데 局限한다는 解釈으로부터 監視를 一切의 國際武器貿易에 까지 擴大한다는 普遍的 概念으로의 擴大解釋이 可能했다. 적어도

初期段階에서의 趨勢는 前者의 概念으로부터 後者の 概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생.제르맹協約과 제네바協約은 이같은 趨勢의 表現이었다.

### 3. 1919年の 생.제르맹協約

생.제르맹 武器 및 彈藥貿易統制協約<sup>(3)</sup>은 國際聯盟規約의 關係規定에 따라 講和會議各國 特命全權代表들에 의해 成案되었다.

이 協約의 目前의 目的은 國際聯盟全會員國을 聯盟規約 第23條 d項에 規定된 武器去來統制對象으로 삼자는데 있었다.

이 協約의 일부 目的은 또 유럽의 敗戰列強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協約遵守는 講和條約<sup>(4)</sup>을 통해 事前에 確立되었다

생.제르맹協約은 1890年の 브르셀法的 延長이었다. 아프리카野蠻族의 武装만이 警戒해야 할 唯一한 위협으로 더이상 看做되지 않게 되었다. 즉 『文明國』간의 武器去來를 規制하고 統制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重要한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輸出免許에 의해 許容되는 一定한 例外를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武器輸出은 禁止되도록 되어있었다. 이 協約은 相異한 規制가 適用될수있는 包括的인 戰爭武器目錄을 作成했다<sup>(5)</sup> 이 協約은 또 國際聯盟管轄下에 設置된 國際中央統制局(C.I.O.)이 武器輸出免許寫本을 接受하고 이를 公開하게끔 되어있음으로 武器貿易의 完全公開가 이루어져야한다고 規定했다.

생.제르맹協約은 이 協約이 萬國政府에 의해 一般的으로 受諾

될 것이라는 前提위에서 成案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이 協約의 批准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武器生産國들이 모두 이 協約을 批准하기로 決定했으면서도 전혀 批准하지 않음으로써 이 協約은 결코 施行되지 못하였다. 美國이 國際聯盟會員國이 아닌터(6)에 이 協約의 諸規定이 國際聯盟과 지나치게 相互關聯되어있어 批准하기가 불가능하다는 主張들이었다. 이외에도 美國은 이 協約의 適用對象地域이 殘存하는 유럽植民主義列強의 利害關係를 거의 全적으로 保護하는 한편 美國의 中南美政策에 干涉할수있는 結果가 생길수 있도록 勸定되었다고 주장했다(7). 美國은 國際聯盟의 논의에 걸친 要請에도 불구하고 생.제르맹 協約의 批准을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그 後 모든 武器生産國政府에 受諾될수 있도록 하자면 이 協約이 訂正되어야 한다는 決定이 이루어졌다. 이 協約訂正任務는 國際聯盟의 臨時混成委員會(T.M.C.)에 委任되었다.

#### 4. 國際聯盟年鑑

臨時混成委員會(T.M.C.)는 1920년 國際聯盟規約 第8條 6項에 따라 聯盟總會에 의해 設置되어 軍備縮小案을 聯盟理事會에 提出하는 任務를 부여받았다. T.M.C.는 이같은 大任을 遂行하면서 各種問題點을 檢討하여 1923년 聯盟總會에 最初의 報告書를 提出하고 『官公文書에서 뽑은 情報를 土台로 하고 聯盟規約 第8條 마지막項의 限界에 따른』包括적인 年鑑을 聯盟事務局이 發行할것을 建議했다. 이같은 建議가 受諾되어 聯盟事務局은 60余國政府가 제공

한 많은 政府刊行物과 함께 聯盟事務局이 그밖의 다른 곳에서 入手한 資料를 檢討하게끔 되었다. 그리하여 1924년에 國際聯盟의 첫 『軍事年鑑』이 刊行되었고 1939년까지 都合 15권이 發行되었다.

『軍事年鑑』은 公式出典을 資料로 한것으로서 예컨대 機動部隊나 戰爭物資備蓄과 같은 機密事項으로 간주되는 情報은 收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年鑑은 平和時에 組織화된 軍事力및 軍裝備에 관한 比較的 包括적인 輪廓을 把握할수있게 해주었다. 일부 年鑑은 또 燃料, 鈹物, 農產物등과 같은 國防용으로 輸入되는 物資의 生産및 交流에 관한 資料는 물론 準軍事組織, 警察力등 防衛体制에서 一翼을 担当하는 民兵에 관한 情報를 收錄했다. 收錄된 情報는 반드시 完璧하거나 比較 可能한 것은 아니었다. 例컨대 各國의 豫算執行의 差異로 直接比較가 無意味함에도 불구하고 軍事費統計가 1個의 統計表에 收錄되었다. 더구나 獨逸은 1934년以後부터 軍事費發表를 中止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年鑑은 兩次大戰 사이의 時期에 있어서 軍備政策에 관해 入手possible한 情報를 集大成한 唯一한 刊行物로서 軍事費의 規模와 趨勢에 관해 다소나마 어림프시 알수있게 해 주었다.

1924년 國際聯盟理事會는 聯盟事務局을 통해 國際武器貿易에 관한 定期的인 統計刊行物을 管掌하는 동시에 모든 國家에 대해 이같은 誅業을 圓滑하게 할수있는 文書제공을 促求하기로 한다는 內容의

決議案을 채택했다. 最初의 『國際聯監統計年鑑』은 1925년의 제네바國際武器貿易會議의 準備作業으로 編纂되었으며 最終版이 發刊된 것은 1938년이었다. 1924년의 統計年鑑은 23個國을 收錄하고 있으며 1938년에 이르러 이 統計年鑑은 60個國과 64個 植民地 保護領 및 委任統治領의 國際武器 및 彈藥貿易의 細部內容을 收錄하기에 이르렀다. 統計 및 統計表 역시 이 15년 동안에 相當히 向上되었다.

全般的으로 統計年鑑編纂을 위해 年間對外貿易統計와 月間 또는 分期別 貿易收入統計라는 2가지 소오스의 統計分類作成을 各國政府에 依賴했다. 이 年鑑의 第1部는 品目別과 輸出對象地 또는 輸入地別에 따라 武器 및 彈藥의 輸出入을 表示한 貿易概要表로 구성되어 있었다. 第2部는 武器輸出入額을 表示한 一聯의 統計表 概要이며 第3部는 檢討對象國의 官公文書에서 뽑은 武器貿易에 관한 統計의 細部情報을 收錄하고 있었다. 처음 2部는 이같은 情報를 土台로 한 것이었다. 收錄된 統計는 概略的이고 不完全했으며 全般的으로 比較不可能했다. 各國別 貿易統計編集 方法도 各기각색이었다.

즉 당시의 貿易分類制度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多種多樣했던 것이다. 일부 國家는 輸入地와 輸出對象地別로 交易內訳을 發表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 國家에게 있어서는 輸入對象國 또는 輸出對象國이란 物品을 購入해오는 곳 또는 物品을 船積해 보내는 곳을 의미하는데 불과했다. 또한 各國마다 相異한 交易額算定方法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年鑑에 收錄된 統計는 때로는

『公式額數』『発表額數』등을 나타내는데 불과했다. 더구나 重要な 範주의 武器는 사실상 除外되었다. 이 統計年鑑은 重野砲, 탱크, 軍艦, 軍用機등과 같은 重武器에 관한 情報은 사실상 전혀 收錄하지 못했다. 그 結果 例컨대 美國은 實際보다 훨씬 兪 重要的 武器輸出國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統計的 不完全性은 이의 資料가 된 各國統計의 性格을 놓고 볼때 不可避한 것이었다. 이같은 欠點에도 불구하고 敘上한 2個의 年鑑은 世界軍備規模의 變化를 어느정도 描寫해 주었고 貿易側面에서는 各國의 小規模 武器輸出의 占有率變動과 趨勢 輪廓를 表現해 주었다.

#### 5. 1925年의 제네바協約

1922年 國際聯盟臨時混成委員會는 생.제르맹 協約이 武器生産國들 에게 受諾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協約의 改定에 着手했다.

当初 이 委員會는 民間武器製造 問題와 함께 武器貿易問題를 檢討할 예정이었으나 1924年 美國이 武器貿易을 대상으로하는 協約에만 關心을 갖고 있다고 宣言한뒤 2가지 問題가 分離되었다.

臨時混成委員會의 提案은 『武器및 彈藥과 戰爭道具의 國際貿易에 관한 監視』를 論議하기위해 1925年 5월 召集된 國際聯盟의 제네바會議에서 검토된 協約草案에 具體적으로 나타나있었다. 제네바會議은 兩次大戰사이의 時期에 있어서 武器貿易의 論議를 위해 개최된 가장 重要的 會議였다.

제네바會議에 提出된 協約草案은 5個의 章을 담고 있었다.

즉 武器의 概念規定, 一切의 武器輸出은 政府의 許可를 거쳐 輸出免許狀을 필요로하며 輸出免許狀은 國際聯盟에 依해 公表되어야 한다고 規定한 一般規制와 輸出 禁止地域을 다룬 3個 章이 그것이다. 輸出禁止地域에 관한 章은 오늘날의 可能性있는 提案에는 거의 重要性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論及되지 않고있다.

제네바協約은 施行되지는 못했으나 2가지 主要 理由에서 오늘날에도 関心을 끌고 있다. 첫째 理由는 最終적으로 確定된 형태에서 볼때 제네바協約은 本質적으로 武器移勳의 公開에 관한 措置였으며 그리하며 公開를 強化하기 위한 提案들이 戰後時期에 거듭 提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제네바會議는 公平性の 問題 즉 武器貿易에만 関心을 갖고 武器生産에는 関心을 갖지 않는 措置의 公平性問題에 상당히 專念했다는 점이다. 이 點에 관한 1925년 의 討議는 오늘날에도 如前히 重要性을 갖고있다.

〈公開에 관한 討議〉 제네바會議의 第1次會議에서 議長은 다음과 같이 제네바會議目標의 限界性を 明白히 했다.

『그러므로 本 會議(제네바會議)의 直接的인 目的은 우리가 과히 멀지 않았다고 期待하고있는 將來를 위해 留保된 問題인 軍備減縮도 아니면 나아가서는 武器貿易의 縮小도 아니다. 本 會議는 合法的인 武器貿易이 있을수있다는 것을 認定하는 바이다. ....

(本 會議의) 目的은 이같은 合法的인 武器貿易을 妨害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合法的인 武器貿易을 容되게 하거나 諸國간의 平和와 善意의 霧脚氣를 造成하려는 善良한 努力의 성공을 妨害하는 危險千萬한 不法武器去來의 危脅可能性을 除去하려는 것이다』(8)

이같은 目的에는 普遍的인 輸出免許와 公開制度가 隨伴되어야 한다. 議長은 또 그의 제네바會議 閉會辭에서 Control이라는 語彙가 使用될때 그것은 英語에서의 意味가 아니라 프랑스語에서의 意味로 사용된다는 것을 分明히 했다.

『이 問題에서 몇가지 論争點이 提起되는 것은 國際會議에서 사용되는 "Controle"이라는 語彙의 兩面的 意味때문일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語彙는 英語와 프랑스語에서 각기 相異한 價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臨時混成委員會) 協約 精神은 監視(監督) 觀念의 範圍를 넘지않는 프랑스語의 "Control"의 意味로 다소 풀리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權限"의 意味를 內包하는 英語의 "Control"까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9)

이탈리아代表도 統制(Control)에 관해 同一한 主張을 썼다.

『本 協約이 想定하고 있는 統制는 어떠한 意味에서도 "武器와 彈藥生産 및 貿易의 監督, 干涉 또는 管理"를 뜻하지 않는다.

本 協約의 主目標는 合法的인 去來와 生産에 대한 調査와 妨害를 最小限으로 줄일수 있는 方法을 採択하며.....

가능한限 完璧한 公開를 實現하는 것이다』(10)

公開에 反對하는 主張에는 2가지 種類가 있었다. 폴투갈과 같이 安保理由에서 公開에 반대하는 國家도 있었는데 폴투갈 代表는

『安保上의 機密을 公開한다는 것은 安保를 弱化시키는 것』(11)  
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重要한 一團의 國家들은 公開 그 自体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偏頗的인 公開에 反對할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武器生産의 公開도 아울러 要求했는데 엘살바도르代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本 協約草案은 武器輸出에 관한 情報의 蒐集 및 公表만을 規定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充分치않다. 이같은 統計만으로는 不完  
全하고 無益하다. 武器生産國들이 普遍的으로 그리고 共同的 利益  
을 위해 當然히 適用되어야 할 措置를 回避해야 할 理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12)

其他의 代表들도 이와 同一한 主張을 폈는데 브라질代表의 주장  
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本人은 本國代表團을 代表하여 本國이 深慮하고 있는  
바는 오직 한가지 特殊한 境遇 즉 武器를 製造하지 못하기 때문에  
武器를 輸入하지 않을 수 없는 國家들의 武器購入에 관한 公開라  
는 것을 附言하고자 한다. 이같은 種類의 公開는 偏頗的일뿐이며  
이는 곧 武器非生産國은 監視를 받게되는 反面 武器生産國은 完全  
히 監視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意味할뿐이다. 이는 極히 不公  
平한 處事이다』(13)

要컨대 武器製造에 適用되는 某種의 規定이 없는 武器貿易만의  
公開는 이미 1925년에 不公平性의 根拠에서 攻撃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武器貿易과 生産의 同時統制〉 多數의 國家들이 이러한 不公平性의 問題를 보다 包括的으로 展開했는데 例컨대 그리스代表는 『더구나 弱小國國防軍의 機密은 強制的으로 公開되나 武器生産國들은 그들의 軍備에 관한 機密을 完全히 維持하게 될 것이다.

平等性은 國際聯盟의 第1原則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앞에 提示된 協約草案은 不平等原則을 基礎로 하고 있다』<sup>(14)</sup>고 주장했다.

프랑스代表는 民間武器製造가 武器貿易에 앞서 우선 規制되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比較的 상세히 주장했다.

『本人은 經濟的 觀点과 純粹한 論理的 觀点에서 볼때 武器貿易 規制에 앞서 民間武器製造規制부터 시작하는것이 보다 賢明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武器製造는 역사상의 첫번째 고리인데 反해 武器貿易은 마지막 고리에 不適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만일 우리가 全般的인 武器減縮을 達成할때 까지 眞實로 最小限 軍備上의 秘密要素에 終止符를 찍고자한다면 武器가 陸上과 海上을 통해 全世界로 搬送되는 途上에 있을 때까지 그 統制를 延期시키기 보다는 武器가 工場에서 生産 組立 내지 結合되고있는 時点에서 措處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國家들은 武器貿易에 관한 協約이 施行되자면 武器生産도 同時에 對象으로하는 協約에 대한 同意가 隨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武器生産國들이 民間武器製造에만 關心을 두고있는 反面 武器非生産國들은 民間製造와 國家製造를 区分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일부 國家들은 國家武器製造 또한 (武器製造에 관한) 第2의 協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熱熱히 주장했다. 武器生産國 가운데에서는 民間企業에 依存하여 武器需要를 充足시키고 있었던 美國만이 國家武器製造問題를 拳論했다. (15)

제네바協約의 無條件 批准을 주장한 小數의 武器非生産國代表 가운데 하나는 늘웨이代表였다. 그는 武器非生産國이 公開發問에서 武器生産國에 模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1925년의 제네바協約은 武器移轉의 公開發問에만 關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제르맹協約보다 훨씬 脆弱했다. 그러면서도 제네바協約은 부분적으로는 많은 國家政府들이 武器貿易에는 適用되나 生産에는 適用되지 않는 提案을 受諾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施行되지 못했다.

#### 6. 兩次大戰사이의 時期에 있어서의 其他의 提案들

제네바會議이 끝난뒤 1926년 武器製造問題를 檢討하기위해 特別委員會가 設置되었다. 이 委員會가 1929년에 提出한 武器製造公開發問을 規定하고 있는 協約草案은 1925년의 제네바協約과 함께

1932년의 제네바軍縮會議에 回附되었다. 제네바軍縮會議開幕式에서의 스페인의 提議에 따라 民間및 國家製造武器貿易規制特別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 委員會는 美蘇兩國을 비롯한 15個國으로 構成되었다.

이 委員會의 議題에는 武器貿易은 물론 國家 및 民間武器製造問題가 包含되었다는 점에서 1925년 제네바會議의 敎訓 가운데 한가지가 徹底된 셈이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措置案의 適用範圍에 관해 이 委員會委員國들 간에 곧 異見이 露呈되었다. 일부 國家 특히 英國, 이탈리아 및 日本은 諸案件이 1925년의 제네바會議와 1929년의 協約草案으로부터 逸脫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스칸디나비아諸國 및 和國은 武器貿易 및 製造規制를 如何한 軍縮協定の 核心으로 간주하여 國家武器製造의 嚴格한 規制와 함께 民間武器製造 根絶을 요구했다. 터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一切의 武器製造 甚至於는 國家武器製造까지를 國際化하고자 提議했다. 또한 武器를 生産하지 못했던 페르샤는 그들이 民間武器製造撤廢를 受諾하는 前提條件은 國家武器製造의 國際化라고 宣言했다. 이 같은 提議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武器非生産國 사이에서도 反對가 많았던 것이 分明하다.

1932년 스페인은 麻藥去來와 武器製造 및 貿易간의 類似性을 立證하는 研究를 실시하자고 提議했다. 이 같은 提議文書가 1933년에 發表되었는데 (16) 이 文書는 世界麻藥生産 및 貿易에 이미 適用되고 있는 監視檢桶管轄下의 公開制度가 약간의 修正을 加하여 武器에도 應用될 수 있을 것이라고 結論을 내렸다. 이 文書는 제네바軍縮會議나 特別委員會에 의해 결코 檢討되지 는 못했으나

1933년 5월과 1934년 6월 프랑스와 美國이 각각 提示한 提案의 主要 土台가 되었다。

武器製造 및 貿易制限을 위한 프랑스의 計劃案이 提示된 것은 1933년 5월이었다 (17) 이 提案은 各國이 保有하는 武器는 國際軍縮協定을 통해 制限된다는 前提를 基礎로 하고있다. 國際軍縮協定을 監視할 常設軍縮委員會가 武器輸入國에 대한 武器供給을 承認하도록 되어 있었고 一切의 武器製造 및 輸出은 許可를 받도록 되어있었으며 輸出先許狀寫本을 國際聯盟에 提出토록 되어 있었다.

武器貿易問題에 대한 一般의 關心高潮에도 불구하고 包括的인 軍縮條約에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비추어 美國政府가 主導權을 잡아 武器去來를 別個의 條約으로 規制하기 위한 包括的인 立法措置를 提議했다. 1934년의 美國側 試案 (18)은 自律的인 常設監視機構의 監視를 받게 될 武器製造 및 貿易의 包括的인 國家許可制度를 提議했다. 美國은 또 國際協約에 의해 사용이 禁止되어있는 武器의 販賣 및 購負를 禁止하고 그밖의 다른 軍備物資의 貿易 및 製造에 대해서도 某種의 抑制措置를 實施하고자 提議했다. 美國의 試案은 1934년 7월 民間 및 國家製造武器貿易規制特別委員會에 의해 滿場一致로 受諾되었다. 이 試案은 美國의 從前立場의 撤回인데 美國은 그들의 善意를 誇示하기 위해 1925년의 제네바協約을 批准했다. (19)

1934년 11월 美國은 一般軍縮耐議와는 역시 別個의 새로운

協約을 提議했다。(20) 美國의 이 提案은 그해 7월 特別委員會에 의해 受諾된 提案에 數個의 附加規定을 結合한 것이었다. 특히 常設軍縮委員會가 武器製造 및 貿易의 完全公開을 担当하는 當局者가 되는 동시에 各國政府가 行使하는 規制活動의 監視責任을 맡도록 되어있었다. 이 提案은 또 要請이 있을때 現場特別調査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었다.

特別委員會委員國 가운데서 美國의 이 提案을 受諾하지 않은 國家는 2個國뿐이었다. 英國은 이탈리아의 支援을 받아 公開規定을 『範疇別 總額』으로 緩和시킬것을 주장하면서 武器生産 및 輸出國內에서의 國際的인 現場檢査를 受諾하기를 거부했다. 한편 프랑스와 蘇聯은 이 提案의 強化에 關心을 가졌다. 特別委員會가 1935년 4월 提出한 報告書(21)는 各 委員國의 立場을 反映하는 一聯의 類似한 代案들을 羅列했다. 이 代案들은 從來 主要 論争對象이 되었던 武器貿易 및 製造規制의 諸原則에 關係 合意를 包含하고 있어서 相當한 進展이 이루어졌음을 反映하는 많은 共通된 特性을 지니고 있었다. 國家武器製造 및 民間武器製造와 武器生産國 및 武器非生産國의 同一取扱原則이 滿場一致로 受諾되었다. 某種의 國際監視下에서의 一切의 武器生産 및 輸出入의 許可와 公開制度確立의 必要性에는 反論이 없었지만 確立되어야 할 이 같은 制度의 性格에 關係해서는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후 이 問題에 關係한 加一層의 論議는 國際緊張과 國家再武裝의 물결이 高潮됨에 따라

潛跡하고 武器製造 및 貿易統制를 위한 協約체결을 가로막고 있던 異見은 妥結되지 못했다。

## 第 2 節 2 次大戰以後의 提案

### 序 論

戰後期에 있어서는 武器貿易이 國際軍備 및 軍縮討議에서 戰前보다 훨씬 浮刻되지 못했다。 이에는 많은 理由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兩次大戰사이의 時期와 比較하여 이 問題에 대한 一般의 關心이 크지 못하여 이 問題를 國際會議 議題로 上程토록 할 수 있는 輿論의 壓力이 거의 없었다。 둘째로 兩次大戰사이의 軍縮會議은 주로 民間武器去來의 惡弊에 專念했는데 이제는 武器去來의 대부분이 政府管理下에 들어감으로써<sup>(22)</sup> 民間武器去來가 더 이상, 生々한 問題點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武器貿易의 調査에 대해 拳國的인 強力한 關心을 보이고 있는 國家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主要 武器供給國은 經濟的, 政治的 利害關係에서 武器貿易을 永統化하려고 있으며 主要 武器輸入國은 如何한 형태의 干涉에도 반대하고 있다。 國際會議에서 武器貿易問題를 처음으로 拳論한 國家가 武器貿易에 관해 供給國이나 輸入國 어느 한편으로서도 전혀 利害關係가 없는 말타였다는 것은 意味深長한 일이다。

以下에서 우선 유엔테누리안팎에서 이루어진 武器貿易規制를 위한 一般的 提案들을 검토하고 이어 地域協定을 위해 提示된 提案들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밖의 다른 公式, 非公式 提案들을 檢討한다.

### 1. 一般的 提案

戰後 약 20년간 武器貿易問題는 間接的인 國際的 關心事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戰後 軍縮論議는 全般的인 軍備에 關心을 두었다. 武器貿易의 直接 規制보다는 軍備 및 軍隊의 規制와 減縮을 위한 方向으로 努力이 기울여졌다. 유엔總회의 最初의 決議의 하나인 1946년 12월 14일의 決議(B) 42 (1)<sup>(23)</sup>은 安保理事會에 대해 유엔會員國이 그들의 現存 兵力 및 軍備에 관해 提供해야 할 情報의 形態를 決定하도록 要求했다. 이같은 措置外에도 安保理事會는 1947년 2월 軍備와 兵力의 全般的인 規制 및 減縮을 다룬 在來 軍備委員會(CCA)를 設置했다.<sup>(24)</sup> 그후 1948년 유엔總회는 CCA가 『戰力과 在來軍備에 관해 유엔會員國으로부터 提供되는 全情報의 安保理事會傘下 國際統制機關에 의한 接受, 檢討 및 發行을 위한 提案의 起草에 優先的인 關心을 傾注』하도록 勸告했다.<sup>(25)</sup> 軍備 및 兵力規制를 促進하기 위한 이러한 最初의 努力이 대체로 失敗하고 또 CCA가 1950년 解体되기는 했지만 그후 東西兩 陣營에 의해 提示된 많은 提案은 이 問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提案은 武器規制 및 軍縮措置와 全般的인 軍備情報에 관한 것이어서 武器貿易規制에 미치는 效果는 오로지 間接的으로 發生하게끔 되어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提案들은 여기에서

檢討되지 않고 있다。

<유엔의 提案> 유엔의 테두리안에서 全的으로 武器貿易에 關係에서 提示된 最初의 提案은 말타代表가 1965년 11월 30일 總會 第1委員會에 提出한 提案이었다。 그의 決議案은 다음과 같았다。

『總會는 普遍的인 全面軍縮問題를 檢討한 結果 貿易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한 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의 國家間 移動에 關係한 普遍的이고 效果的인 公開制度가 國際緊張의 緩和와 國家間 相互信賴關係의 發展에 建設的인 寄與를 할것으로 確信하고 이같은 公開가 效果的인 國際管理下의 普遍的인 全面軍縮目標 달성을 위해 進展을 이룰수있는 可能性을 向上시킬 것으로 認定하고 “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貿易年鑑”이 國際聯盟에 의해 刊行되었음을 想起하면서 18個 國軍縮委員會가 貿易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한 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의 國家間 移動問題를 檢討하여 總會에 유엔을 통한 公開制度 立案을 提出하도록 勸告한다。』(26)

말타代表의 主張은 그후 許多히 되풀이되어온 主張이기 때문에 다소 詳細히 檢討해볼 價值가 있다。 그는 核武器競爭은 물론 非核武器競爭에 關係한 某種의 指値를 취할 必要性에 관심을 두고자한다고 말했다。 第3世界의 局地的 軍備競爭은 軍事強大國들의 直接介入을 誘發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며 더구나 軍備競爭은 稀小한 資源의 轉用을 통해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妨害하고 있다。 그는 一國의 安保를 위한 合法的인 武器貿易에는 反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많은 武器去來를 둘러싼 秘密은 世界平和를 危殆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強大國들은 항상 그들에게 利害關係가 있는 地域의 武器去來를 전부 알고 있으나 弱小國들은 그들의 隣接國家에 대한 武器供給에 관해 正確한 情報를 갖고 있지 못하여 隣接國家들의 軍備增強說에 過剩 反應을 보일런지 모른다. 効果的인 公開制度는 局地的 緊張緩和에 寄與할수 있으며 보다 一般的으로는 國家間에 信賴感을 造成함으로써 政治的 雰囲気을 改善하는데 도움이 될것이 틀림없다. 유엔은 國際聯盟이 1924년 부터 1938년까지 發刊한것과 같은 世界武器貿易에 관한 信憑性 있는 情報를 갖지 못하고 있다. 1967년으로 예정된 軍縮會議에 앞서 武器貿易에 관한 年鑑試驗本을 發行할수도 있다. (27)

美蘇兩國은 이같은 提案에 熱意를 보이지 않았다. 蘇聯은 現在의 軍縮會談과 관계가 없는 提案 특히 核軍縮에 관한 提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美國은 말타가 提議한 方法이 实效性에 懷疑를 보였다. 強大國의 反對는 그것만으로서도 이 提案을 默殺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는데 雪上加霜으로 武器非生産國들로부터도 辛辣한 批判이 있었다. 일부 武器非生産國의 主張 例컨데 사우디아라비아代表의 主張은 1925년 제네바會議에서 開陳된 主張과 相似했다 (28) 그는 武器生産國으로 하여금 輸出目錄을 포함한 自國의 武器生産에 관한 完全한 報告書를 유엔事務總長에게 提出토록 하는 것이 필선 綱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植民主義 列強이

尙存하고 있던 時期로 소及 實施되는 公開制度는 非植民化의 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獨立國家들에게 強要하기가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冷談한 反應에도 불구하고 말타代表는 그들의 決議案을 1965년 12월 4일 表決에 부쳤다. 贊成은 18個國뿐이었고 19個國이 反對 39個國이 棄權함으로써 이 決議案은 否決되었다.

主要 武器輸出國의 投票動向을 보면 英國은 贊成, 美國은 棄權, 蘇聯은 反對였다. 그후 유엔總會第1委員會는 이 問題에 관한 모든 資料를 『國際緊張緩和方案』이라는 題目으로 묶어 제네바의 18個國軍縮委員會(BNDG)에 回附했다.

全般的인 武器貿易問題가 덴마크의 提案을 통해 다시 爭論된것은 1967년에 이르러서였다. 1967년 9월 21일 유엔駐在 덴마크 代表는 事務總長이 武器貿易規制立法에 관한 會員國의 見解에 관해서 調査를 實施하도록 提案했다. 이 提案은 그範圍에 있어서 말타決議案보다 더 制限的이었는데 그 決議案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政府는 在來式武器貿易을 制限하는 國際協定이 극히 有益할것으로 믿는다. 이같은 目標가 가까운 將來에 達成되지는 못할것이나 그러나 有益한 一段階로서 유엔機構를 통한 在來式 武器의 國際貿易에 관한 情報交換協定이 있을수있다. 이같은 目的을 위해 事務總長은 全會員國의 見解를 調査하여 이를 23次總會에 報告할 수 있다』(29)

그러나 時間이 너무 匆迫하여 정식 提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68年初 數個月間 덴마크政府는 NATO會員國, 中立國및 東歐圈 國家들을 相對로 여러모로 打診한뒤 이 計劃을 推進하기로 決定했다. 1968년 10월 23일 유엔總會本會議에서 덴마크外相은 武器規制및 軍縮을 위한 制限된 措置로서 武器貿易登錄에 관한 決議案을 제출한 方針을 發表했다.(30) 總會一般討議에서 덴마크提議는 단하나의 唯一한 反應을 挑發했다. 즉 白露西亞 代表는 이 提案

은 『유엔이 軍縮問題를 다루고 있다는 印象을 남겨하여 總회가 軍縮과 平和強化에 關係 當面하고 있는 眞正한 問題들을 解決하지 못하도록 妨害하기 위한 또하나의 粗雜한 企圖』<sup>(31)</sup>에 지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는 武器貿易問題에 關係 社會主義國家의 最初의 공식 反應이었다.

마침내 1968년 11월 21일 이 決議案은 유엔總會 第1委員會에 提出되었다.<sup>(32)</sup>

이 決議案은 挪웨이, 아이슬란드 및 말타에 의해 共同發議되었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및 멕시코는 共同發議를 거부했다. 決議案은 다음과 같다.

『總회는

軍縮과 軍備規制는 물론 全人類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과 相關한 其 任務를 銘心하고,

局地紛爭으로부터 惹起되는 國際平和 및 安保에 對한 危險을 意識하고, 그로부터 招來되는 局地紛爭 및 緊張의 危險이, 在來式 武器獲得競爭에 의해 惡化될수있다는 것을 憂慮하고,

武器輸出量의 漸增을 憂慮하고

貿易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한 在來式 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의 國家間 移動에 關係 情報刊行이 緊張緩和을 促進하고 國家間 相互 信賴關係를 造成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確信하고, 유엔에 의한 地域別 規模의 武器供給에 關係 情報交換 및 登錄協定을 가능한

限 早速히 達成하기 위한 現在의 努力을 계속해야 할 重要性을 認  
識하여

1. 유엔事務總長이

- (a) 在來式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의 全輸出入을 事務總長에게 登錄  
하는 義務를 履行하는 것과
- (b) 事務總長이 在來式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의 移動에 관한 情報  
를 定期的으로 蒐集, 公表하도록 承認하는 것과
- (c) 이 같은 目的을 위해 취해야 할 實際措置에 관한  
會員國政府들의 立場을 糾明할것을 要請하고

2. 事務總長이 第24次 總회의 審議 및 18 個國軍縮委員會에의 回附  
를 위해 그의 調查結果를 24次 總회에 報告할것을 要請한다』。

덴마크代表는 이 ~~같은~~ 決議案을 主唱하는 그의 論拠를 다음과 같이 披瀝  
했다. 『우리는 (決議案) 前文에서 披瀝한 바와 같이 武器 및 彈藥 移動에 관  
한 情報公表가 緊張緩和을 促進하고 國家間 相互信賴關係를 造成하는데 도  
움이 될수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는 또한 그公表가 武器 移動의 抑制措置  
를 結果할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特定國家의 軍備增強에 관한  
秘密維持는 隣接國家들의 不安을 增加하여 不必要한 武器購入을 招  
來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登錄協定이 會員國으로 하여금  
國際的인 武器移動의 含蓄性을 보다 잘 認識 할수 있게 할 것이며  
또 이것이 成就될때 비로소 武器移動이 어느 程度로 國際安保를  
惡化시키게 되는가를 究明할수있고 또 事實이 그러하다면 이 같은

事態가 如何히 逆轉될수있는가를 究明할수있게 될것이라는 見解를 갖고 있다. (33)

그는 合法的인 武器移動의 公開는 破壞活動 또는 類似한 目的을 위한 武器移動을 계속 秘密로 維持하는것을 어렵게 할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의 見解로서는 이 決議案은 強大國들이 弱小國들이 関心을 갖고있는 武器移動을 探知할 수 있는 充分한 資源을 갖고있기 때문에 弱小國들에게 不利하게 差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進行되는 事態에 關係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弱小國이 弱小國이라고 強調했다.

美國은 이번에는 이 決議案에 대해 다소 積極的이었으며 和蘭과 말타 또한 支持를 示唆했다. 이들 3個國代表는 武器貿易登錄이 보다 根本的인 協定締結을 위한 첫 段階의 역할을 할수있을 것이라고 認定했다. 그러나 主要 武器輸入國들이 이 決議案을 辛辣하게 攻擊함으로써 이 決議案은 表決에 부치지 못했다. 덴마크 代表團이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상 이들은 유엔事務總長의 調査案에 대해 미리부터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었다.

印度와 사우디아라비아代表들이 長時間의 反對演說을 했고 아르헨티나 統一아랍共和國 (=이집트) 및 파키스탄代表等도 덴마크提案에 反對했다.

이번에도 역시 主要 論題는 武器貿易規制에 관한 協商이 1920年代에 開始된 以來 줄곧 強調되어온 差別이라는데 있었다.

印度代表는 다음과 같이 反問했다.

『核武器保有國과 其他의 武器生産國이 國家安保와 汎世界的 責任이라는 美名下에 機密과 行動의 自由를 保有하는 反面 武器非生産 弱小國들은 그들의 安保에 惡影響을 미치게 될 規律의 支配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正當化될수 있는가들 우리는 묻고 싶다』<sup>(34)</sup>

그는 國際聯盟의 武器貿易年鑑을 實例로 들면서 이 年鑑과 함께 武器生産年鑑도 刊行되었음을 指摘했다. 그는 이어 核武器保有強大國과 其他의 武器및 彈藥生産國들이 國際聯盟의 武器生産年鑑에 收錄된것과 같은 種類의 情報을 提供할 用意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1952년以來 全世界 모든 國家의 軍備및 兵力保有現況에 관한 提案을 전히 들어본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武器貿易年鑑은 事實上 不法的인 武器去來를 收錄하는데 成功하지 못했으며 多數의 國家들이 統計提供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代表 역시 이와 同一한 差別主張을 내세우면서 『이 決議案은 疑아스러운 價值原則 즉 在來式武器의 輸出入을 登錄할 必要는 있으나 그 生産은 登錄할 必要性이 없다는 原則을 闡明하고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sup>(35)</sup>고 말했다.

이밖에도 反對대상이 되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었다. 例컨데 덴마크決議案中の 반란을 目的으로한 武器供給의 制限에 관한 句節과 決議案은 現實的으로 局地的 紛爭解決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命題는 가장 論難의 대상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代表는 첫번째

問題點에 言及하여 『植民統治의 基線이나 外部로부터의 侵略으로부터 解放하기 위해 鬪爭하고 있는 國民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決議案에서 構想하고 있는 武器登錄 規定이 스스로 解放할 能力을 갖지 못하고 있는 國民들에게는 어떻게 適用될 것인가』<sup>(36)</sup>라고 反問했다.

이 집트와 파키스 坦代表는 武器去來登錄이 어떻게 局地的 緊張과 紛爭의 緩和를 促進할수 있느냐고 懷疑를 表明했다.<sup>(37)</sup>

1~2 個國代表들은 이 決議案은 武器貿易이 強大國들에 의해 弱小國에 대한 主導權行使를 위해 사용되는 武器가 되고 있다는 現狀을 無視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武器貿易登錄은 強大國들이 같은方式으로 行使하고 있는 支配의 程度를 弱化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強化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決議案은 軍縮問題를 本末顛倒하고 있다는 主張이 있었다. 즉 軍縮의 必要性은 武器非生産國보다는 武器生産國에게 있는 것이며 또 弱小國의 在米式 軍備보다는 오히려 強大國의 核軍備分野에 軍備의 必要性이 있다는 主張이었다.<sup>(38)</sup> 이같은 討議過程에서 武器貿易과 다소 關聯을 갖고 있었던 튀니지代表가 한가지 具體的인 提案을 提示했다. 그는 유엔이 『各種 傘下機關이 豫算의 一定比率 例컨데 5~6%를 軍備에 割當하는 低開發國에 대해 援助를 提供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라고 提議했다.<sup>(39)</sup>

이 같은 批判에 부딪침으로써 덴마크代表는 그의 決議案을 撤回했으며 그리하여 이 決議案은 表決에 부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모든 關係文書와 議定書를 ENDC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40)

武器貿易問題는 1970년 다시 유엔의 關心을 받게되었다. 이 問題는 1970년봄 軍縮委員會會議(GCD) 討議에서 스웨덴과 英國代表에 의해 다루어졌다. 兩國代表는 武器貿易規制에 관하여 論명히 言及했는데 스웨덴代表는 이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闡明했다.

『本人은 現段階로서는 軍縮委員會會議가 이같은 問題를 妥結할수 있는 어떤 解決策은 姑捨하고 이 問題를 다룰수 있는 어떤 具體的인 方法을 提議할 생각은 없다. 本人은 오늘 다만 우리가 討議를 忌避할수없는 全般의 分野의 일부로서 이 問題에 言及하고자 할뿐이다..... 武器貿易은 相當한 程度까지 高價의 精巧한 武器의 擴散형태를 띠고 있으며 더구나 供給國에 의한 武器生産은 흔히 輸入顧客國에 대한 政治的 影響力을 追求하려는 慾望때문에 増進되고 있다. 武器貿易抑制의 着手는 地域的 檢討와 打診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問題의 一般의 性格의 일부는 우리 유엔檄稱에서 公開發될수있을것이다』(42)

英國代表는 英國政府는 地域的 武器制限에 관한 國際協定을 促進하기 위해 努力할 用意가 있으며 특히 『武器貿易을 統制하는 効果的인 措置에 관한 國際協定을 勸迎할것』이라고 言明했다.

그는 또 英國政府의 見解로서는 모든 主要 武器供給國의 積極的

인 支持가 效果的인 國際協定の 履行을 위한 第1次的인 要件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輸入國의 態度 역시 主要한 要因』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어 『過去의 經驗은 武器貿易에 관한 效果的인 協定을 締結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이 問題가 앞으로 等閑視되지 않기를 바란다』(43)고 말을 맺었다.

이같은 一時的인 問題提起는 일부 武器非生産國代表로 부터 例의 即刻的인 反應을 불러일으켰다. 아르헨티나代表는 軍備競爭의 負擔은 在來式 武器의 販賣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高度로 發展된 先進開發國들에 依한 모든 형태의 武器 특히 核武器의 生産때문이라고 指摘했다. 따라서 「武器生産國들이 이미 飽和狀態에 있는 그들의 軍備를 增強할수있는 自由를 保有하고있는 比深에 非武裝國의 軍縮을 深刻하게 主張할수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44) 나 제르代表도 이와 類以한 論法을 사용하면서 다음과같이 主張했다.

『全世界의 武器生産을 制限하는 것과 在來式武器貿易만을 制限하는 것은 다른 問題이다. .... 武器生産 能力을 갖고 있는 小數의 國家들이 계속 自由로히 武器를 無制限 生産, 備蓄할수있는 터에 在來式 武器貿易만을 抑制한다는 것은 武器를 生産하지 못하면서도 最小限 國內安保目的을 위해 이들 必要로 하는 大多數 國家들에 대해 差別措置를 하는것과 다름없을 것이다』(45)

<西歐聯合의 提案> 유엔의 테두리밖에서는 武器貿易 規制에

관한 國際的인 論議가 많지 못했다。 事實 1969年 西歐聯合 (W E U)內에서의 이 問題에 관한 唯一한 討議는 그것이 다룬 具體的인 提案들의 多樣性으로 보아 重要한 것이다。

武器貿易 問題는 W E U의 防衛問題및 軍備委員會에서 討議되어 1969年 12월 4일 國際武器貿易에 관한 勸告案을 채택, W E U 議員總會의 審議를 위해 提出되기에 이르렀다。 이 勸告案은 武器貿易의 惡弊와 武器登錄에 관한 從前提案들의 欠點을 指摘한뒤 議員總會가 理事會에 대해 다음과 같이 勸告하도록 提議했다。

『理事會는 會員國政府가 一切의 武器貿易을 嚴格히 統制하고 國際紛爭의 平和的 妥結을 凶謀할 수 있는 調整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기 위해 國際的인 最高位層에서 특히 유엔의 테두리內에서 모든 努力을 傾注하도록 促求한다。 理事會는 武器를 製造 이를 保有하는 國家들에 대해 軍用機, 미사일, 탱크, 軍艦, 重野砲및 레이 다등 世界의 一定地域에서의 戰爭危險을 高潮시킬 가능성이 있는 主要軍備輸出을 中止하도록 요청한다。 理事會는 軍備統制局에 대해 一切의 武器輸出과 이 같은 武器輸出이 世界平和 維持에 미치고 있는 影響에 관한 完全한 報告를 作成, 防衛問題및 軍備委員會에 提出하도록 指示한다』(4)

이 勸告案에 添附된 說明覺書末尾에서 提案者는 武器貿易規制를 위한 보다 詳細하고 具體的인 提案을 提示했다。(48) 그는 이 같은 方向에서의 모든 可能한 努力은 오로지 軍事同盟外部의 武器供給에

만 局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認定했다.

비록 『이같은 貿易의 大部分이 龐大한 軍事同盟內에서 遂行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見解로서는 가까운 將來에 이들 制限할 可能性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政策이 弱小國들의 歎心을 살수있는 接近方式이 아니며 弱小國들은 『이같이 政策이 그들을 第2次的인 位置로 묶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弱小國들에 대한 武器供給抑制案은 檢討해볼 價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目的을 위해 現代式 重裝備貿易 制限과 軍備一般의 制限이라는 두가지 可能한 接近方式이 提示되었다. 第1案의 美現은 주로 武器『供給潛在力을 가진 小數의 國家의 同意에 依存하고 있으나 우선 美蘇兩國이 이들 受諾하도록 要求』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같은 協定の 利點은 重武器가 隱匿될수없기 때문에 現場規制 내지 檢證이 거의 必要하지 않을 것이라는 事實에서 派生된다. 이러한 接近方式의 技術的 妥當性에도 불구하고 提案者는 政治的 考慮에 立脚하여 이같은 協定締結의 最終 展望에 관해 다소의 懷疑를 表明했다.

그의 見解로서는 『美蘇兩超強國이 그들의 被保護國에게 武器供給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을 버릴 程度로 兩國의 政策을 統一할 可能性은 當分間은 없는 것 같다. 이같은 事態는 만일 蘇聯이 美國과 같이 介入政策에 反感을 느끼게 된다면 앞으로 變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第2의 接近方式의 可能性 즉 軍備一般의 制限에 關係서는 提案者는 이 接近方式이 훨씬 더 複雜한 問題를 提起할 것으로 보았다. 이 接近方式은 한편으로는 최소한 全世界國家의 절반가량을 關與시켜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小型武器는 훨씬 容易하게 輸送될수있기 때문에 港口, 空港 및 國境에서의 檢證을 포함한 嚴格한 統制가 實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武器貿易規制를 위한 보다 包括的인 措置의 實現에 關連되는 이 같은 難關들이 當分間은 克服不可能한것 같다는 것을 認識하여 提案者는 훨씬 簡單한 第3의 解決案 즉 武器貿易의 登錄을 提議했다. 이 解決案은 유엔의 테두리안에서나 또는 試驗的 方法으로서 WEU의 테두리안에서 實行될수있을 것이다. 그의 見解로서는 이같은 措置는 武器貿易 自体를 抑制하는 동시에 各國議會에 대한 通告를 통해 國民의 與論과 行動變化를 刺戟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을런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勸告案은 1969년 12월 10일 WEU議員總會에서 採択되었으며 理事會의 回答은 1970년 3월 25일 議員總會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理事會의 回答은 熱意가 없었다. 이 回信은 表明된 여러 見解들을 注目하면서도 『効果的인 國際協定 履行을 위한 第1次的인 要件은 모든 主要 武器供給國의 積極的인 支援이다. ……

輸入國의 態度 역시 主要 要因이 된다. 過去의 經驗은 ……

이같은 効果的인 協定을 締結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示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理事會는 또 軍備統制局이 그 活動을 規制하는 勸告案 原文으로부터 議員總會의 勸告案에서 提議된 報告書를 作成할 權限을 委任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 2. 地域的 提案

보다 広範한 武器規制 및 軍縮努力의 테두리내에서 在來式 武器의 地域的 制限問題를 다루고 있는 提案外에도 局地的 武器貿易 規制의 一般原則이나 特定地域에 대한 武器供給規制의 具體的인 提議를 提示한 提案들이 많이 있었다. 以下에서 그중 몇가지 提案을 檢討한다.

< 一般的 > 局地的 武器供給規制問題는 유엔이나 제네바軍縮會議에서 軍縮問題를 論議하는 過程에서 美蘇兩國에 의해 여러차례 擧論되었다. 특히 1960年代中葉에 이르러 이 問題에 대한 關心이 커졌다. 그후부터 이 問題의 軍縮側面 뿐만아니라 軍備競爭側面 즉 武器貿易를 통한 武器購入에 대해서도 力點이 두어지게 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美國의 提議를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존슨大統領은 1966년 1월 27일 ENDC에 보낸 書翰<sup>(49)</sup>을 통해 흔히 『國威宣揚妄恣에서 追求되는 高価의 武器獲得을 위한 競爭을 抑制』할수있는 國家間의 地域的 協定에 대한 美國의 支持를 表明했다. 존슨大統領은 當該地域이 率先하여 措置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關係當事國들은 自体生産과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을 포함한 一切의 供給源으로부터 스스로 規定하는 軍事裝備를 獲得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할것』이라는 것이었다.

제네바軍縮會議의 美國代表는 同年末 이같은 構想을 보다 詳細하게 闡陳했다.(50) 事實上 그는 美國의 見解로 보아 在來式 軍備 制限을 위한 地域協定啓發의 指針이 될수있는 몇가지 原則을 提議했다. 존슨大統領의 囑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가지 原則으로서 當該地域이 率先해야 한다는 것과 協定은 當該自體의 武器生産과 輸入을 모두 網羅해야 한다는 것이 強調되었다.

또 協定은 『다른 協定當事國에 의해 協定參與가 重要하다고 看做되는 當該地域의 모든 國家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潛在的인 武器供給國들이 地域協定을 尊重하도록 하는것』이 必須不可欠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美國의 提案은 (協定에서) 規定되지 않는 武器供給을 妨害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며 關係國家들의 防衛및 國內 安保體制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援助가 必要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끝으로 協定은 『關係國들의 安保와 安定된 軍事均衡維持』에 寄與할수 있어야 하며 協定이 尊重된다는 適切한 規定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美國의 見解에 따르면 이같은 地域協定이 成效되는 경우 그 地域은 물론 世界全般의 安保가 增進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協定은 또 『局地的 緊張을 緩和시키고 經濟資源의 建設的인 利用을 促進할 것이며 全般的인 軍縮의 窮極的 達成에 寄與할것』으로 보았다.

1966년以後 이 提案은 定期的으로 되풀이 되었는데 가장 最近인

1970년 봄 C C D의 美国代表는 다음과 같은 一般的인 提議를 되풀이 했다。

『諸国간의 武器競争을 緩和할수있는 局地的 武器制限 協定이나 그밖의 다른 措置를 장려하고…… 武器供給国으로서 關係当事国간에 締結된 協定履行을 위해 協力할 用意가 있다는 것이 美国政府의 立場이다』(51)

蘇聯 역시 数次에 걸쳐 地域的 軍備規制에 대해 包括的인 支持를 表明했다。

1967년의 아랍-이스라엘戰爭이 끝난뒤 蘇聯의 関心은 中東地域에 集中되었으나 蘇聯의 일부 声明은 其他地域에 대한 武器供給 規制에 대해서도 関心を 보였다. 예컨대 1968년 7월의 覚書を 통해 『蘇聯政府는 中東을 비롯한 世界各地的 地域的 軍縮措置의 履行에 관한 提案을 支持한다』(52)고 闡明되었다。

<特定地域> 特定地域 특히 中東에 대한 武器供給을 制限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発言들이 隨時로 있었다. 1950년에 있어서 中東地域에 西方側의 後援을 받는 軍事同盟창설을 促進하기 위한 一方的 措置로서 武器供給을 抑制하려는 西方側의 企圖外에도 對中東武器供給規制를 위한 國際協定提議는 主로 蘇聯으로부터 나왔다. 1956년 4월 후루시체프는 런던記者會見에서 이러한 提案을 처음으로 提示했다. 그러나 이 提案은 바그다드條約에 대한 西方側의 公約때문에 西方側에게는 受諾될수 없는 것이었다. 蘇聯은

1957년 이 문제를 다시 拳論했다。

즉 中近東의 平和 및 安保에 관한 同年 2월 11일字의 蘇聯宣言 草案에는 4大국이 公約해야 할 命題의 하나로서 『中東諸國에 대한 相互武器供給 拒否』<sup>(54)</sup>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提案은 西方國家들에 의해 다시 拒否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提案이 武器供給 規制를 中東地域으로부터의 外國軍 撤収 및 外國軍基地 撤廢와 結付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루시체프는 1958年初 런던타임즈紙 特派員과의 會見에서 아랍諸國에 대한 攻擄可能性을 排除할수있는 內政不干涉保障을 條件附로하여 對中東武器供給 提案에 贊成한다고 示唆했다. <sup>(55)</sup>

1967년의 아랍-이스라엘戰爭이 끝난뒤 中東에 대한 武器供給問題가 다시 拳論되었는데 同年 6월 존슨大統領은 다음과 같이 言明했다.

『우선 本人은 유엔이 全會員國에 대해 中東地域으로 搬入되는 一切의 武器輸出을 全面 報告하도록 各국 要求하는 동시에 全世界 국민이 閱覽하는 武器輸出台帳을 作成하도록 提議하고자 한다.』<sup>(56)</sup>

딜러스크國務長官도 同年末 이와 同一한 主張을 폈다.

『美國이 바라는 바는 유엔을 통한 武器供給에 관한 某種의 諒解이다. 美國은 他國도 똑같이 해준다면 某種의 適切한 方式을 통해 中東地域에 대한 美國의 武器供給을 기꺼히 公開發하고 또 이를 登錄하고자 한다. 事實 美國은 이 問題를 一方的으로 秘密에

부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問題는 公開되고 있다. 美國이 바라는 바는 武器供給國들이 中東地域에서의 大々的인 軍備競争再開을 스스로 誘發시키지 않는다는 (細部的인 事項은 講究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概括的인 것이 되었건· 또는 細部的인 것이 되었건간에 某種의 諒解이다.』(57)

이같은 提案에 대한 蘇聯의 反應은 全적으로 否定的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武器輸出制限은 이스라엘軍이 그들이 占領한 아랍領土로부터 撤収한 然後에 檢討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現在까지의 蘇聯의 공식 態度이다. (58)

1971年1月 美議會는 中東軍備制限協商을 위한 努力強化를 要求하는 軍事販賣法修正案을 通過시켰다. 美行政府는 軍事販賣法에 관한 聽聞會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美國은 過去 數年間에 걸쳐 對中東武器販賣에 관한 某種의 制限策과 諒解를 成就하기 위해 努力해 왔으며 이같은 美國의 目標에는 如前히 變함이 없다. 大統領은 지난 土曜日 이틀 再闡明했고 國務長官 역시 어제 이틀 再闡明했는데 美國은 이에 관한 某種의 制限策을 成就하기를 如前히 希望하고 있다』(59)

그밖의 다른 地域으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武器制限을 위한 몇 가지 提案이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全世界에서 非核地帶가 設定되어 있는 唯一한 地域임에도 在來式軍備制限協定을 위한 提案들이 있었다. (60)

戰前의 提案中에서 軍備制限에 관한 1923年의 中央아메리카 共和國의 協約草案은 言及해볼만한 價值가 있다. 人口, 面積 및 國境線의 길이에 立脚하여 軍事刀의 最高限度가 設定되었다. 海岸警備艇以外의 軍艦과 國家當 10台以上の 軍用機保有가 禁止되었다. 中央아메리카의 一國으로부터 他國으로의 武器輸出은 禁止되었으나 域外

供給國으로부터의 輸入은 禁止되지 않았다. 이 協約草案은 數個國에 依해 調印되었으나 그들중 어느 한나라도 이를 批准하지는 않았다. 檢證問題가 主要障礙가 되었다.

2次大戰以後 中南美地域의 軍備 問題와 관계가 있는 그밖의 다른 提案들이 있었다. 例컨데 1958년 코스타리카는 美洲國家機構(OAS)에 대한 國際武器供給制限을 提議했다. 이 提案은 (a) 라틴 아메리카國家들이 西半球外部國家로부터 在來式武器를 購入하지 않는다는 協定(b)美國과 이같은 武器를 製造하는 그밖의 다른 美洲國家들이 專門的인 美洲域內委員會가 一定國家의 國內安保를 위해 充分하다고 생각하는 量以上の 在來式武器를 販賣 貸與 또는 贈與하지 않는다는 協定 및 (c) 라틴 아메리카 各國이 保有할수있는 空軍 海軍 및 地上軍兵力의 最高限度策定을 包含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밖의 다른 라틴아메리카國家들은 美國이 兵力을 減縮하지 않는限 라틴아메리카 兵力을 減縮하기는 不可能하며 地域的 軍縮이 汎世界的 軍縮計劃의 一環이 되지 않는限 이는 無意味하다고 하여 이 提案을 反對했다.

그후 1967년 4월 분타델 에스테에서 美國은 라틴아메리카諸國에 대해 軍事費支出을 國家安保상의 實需要額으로 限定함으로써 軍隊의 特定한 軍事任務遂行을 위해 必須不可決하지않는 軍事費支出을 回避한다는 方針을 闡明하는 동시에 超音速航空機, 感逐艦以上の 海軍艦艇 30 t級以上の 탱크 및 미사일을 購買 또는 生産하지 않는다는 것을 公約하도록 促求했다. 그러나 이 提案은 모두 受諾되지 않았다.

끝으로 1967년 10월 發展을 위한 同盟美洲域內委員會(IGAP)는 武器貿易과 間接的 關係가 있는 提案을 承認했다. 즉 이 委員會는 一定한 國家의 軍事費支出規模는 援助提供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考慮되어야할 한가지 要因이 된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3. 其他의 公式 非公式 提案

武器貿易規制를 위한 國際的인 措置의 可能性에 관한 戰後이 論議는 대부분 登錄 또는 地域協定을 위한 提案을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特異한 側面에서 武器貿易問題와 어떤 關聯性을 갖고있는 한가지 公式提案이 隨時로 提示되곤했는데 즉 老후武器廠 提案이 그것이다.

이 提案은 1964年1月 鄧 러스크 美國務長官에 依해 처음으로 提議되었으며 「爆撃機의 화뫓불」<sup>61)</sup> 案으로 불려지게되었다. 러스크長官은 強大國들이 어느程度 高度로 精예화된 武器들이 在庫倉庫로부터 나와 發動하고있는 時期에 접어들고있음을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言明했다.

「美國은 이러한 武器들이 東西兩陣營에 의해 全世界에 配給된다면 不辛한 事態가 빚어질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다른 大陸에서의 質的 軍備競爭의 激增을 意味하게될것이기 때문이다. 設령 이러한 武器들이 東西對決에서 쓸모 없게 된다하더라도 이러한 武器들은 아직도 高度로 發展된 武器이며 다른 側面에서 볼때 完全히 쓸모없게된것은 아니다」

이같은 事態를 解決하기위한 러스크長官의 提案은 概括的으로 說明되었을뿐이다.

「許多한 資源이 이같은 比較的 高度로 精巧화된 武器로 轉用됨으로써 이제 他大陸에서의 軍備競爭을 制限하는 一般的 問題는 불론 東西兩陣營에 다같이 利로운 某種의 物理的 軍縮을 論議할 餘

地가 多小 있을런지모른다」

그후 同年末 이 提案은 ENDC의 審議를 위해 正식으로 提出되어 事實한두가지 具體的인 형태의 爆彈器破棄 즉 美國의 B-47 機와 蘇聯의 Tu-16 機의 破棄를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 提案은 蘇聯에 依해 原則的으로 受諾되었으며<sup>62)</sup> ENDC 또는 유엔總회에 提出된 數個의 文書를 통해 敍術되었다.<sup>63)</sup> 그러나 蘇聯은 一定한 型態의 爆彈機는 물론 모든 爆彈機의 全面破棄를 주장했다. 그후의 討議過程에서 東西兩陣營간의 接近方式의 差異가 더욱 커지게 됨으로써 얼마안되어 이 問題는 軍縮論議에서 完全히 撤回되었다.

美國內에서는 또한 탱크過剩保有에 관해 이와 同一한 內容의 暫定的인 提案이 있었다. 1967年4月 國防省代表는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國防省은 어느 時點에 가서 議會에 對한 某種의 要請을 포함하게될런지도 모를 이 問題의 包括的인 解決策을 成就하기 위해 努力하고있다. 本人은 현재 暫定的으로 發言하고 있으나 그러나 國防省에서 이 問題를 檢討해온 우리들에게는 이같은 種類의 裝備의 大規模 移動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이들 國家들에게 某種의 誘因을 提供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裝備가 그들의 必要量을 超過할때 이를 예컨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 販賣하지않고 廢棄하도록 誘因할 수 있는 某種의 誘因이 되어야할것같다」<sup>64)</sup>

美製裝備를 大量 保有하고있는 國家들간의 多邊的 協定이라는 또 하나의 加能性이 學論되었다.

國際的인 措置를 위한 非公式 提案은 많지 못했다. 왜냐하면 武器貿易이 一般大衆의 눈에 띄이게 될 때 問題化되는 것은 時定 國家의 政策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英國이나 벨기에의 壓力團體들은 對나이지리아 武器供給政策에 反對해왔다. 이들 壓力團體는 自國 政府의 政策에 關心을 갖고 있을뿐이며 一般的으로 어떤 國際的 措置를 要求하는 行動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國際的 措置를 要求한 提案 가운데에서 두가지 提案에 관해서는 論及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가지 提案은 武器供給問題가 一般的으로 一般大衆과 民間 또는 半官半民機關에 의해 広範하게 討議되고 있는 美國에서 나왔다. 두가지 提案 가운데 하나는 地域的 武器貿易規制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武器貿易一般을 다루고 있다.

開發途上國들의 地域的 武器規制協定에 관한 폭넓은 研究報告란가 1964年 마사추세츠工科大学(MIT)에 의해 작성되어 發表되었다.<sup>65)</sup> 이 研究報告表動告案의 主要刀點은 供給國協定에 있었다. 이 報告란은 中東에 관해서 4個 主要供給國 가운데 一國이 率先하여 이 地域에 대한 武器販賣禁止措置를 취하고 이어 4大國이 協定을 締結하면 이들 中小武器供給國들에게 까지 擴大하여 網羅하도록 할것을 提議했다. 中東地域輸入國의 協定遵守에 관해 이 報告란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協定이 공식으로 發表되면 모든 關係當事國들에게 協定을 遵守하도록 勸誘해야 한다. 中東地域의 一定國家에 대한 이 協定의 어떤 側面의 適用이 그 國家의 遵守與否에 左右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當該地域國家들의 協定參與은 그것이 必要하게 될런지도 모  
를 協定履行上의 어떤措置의合法性을 提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  
이 분명하다」

이 報告書는 또 사하라沙漠地域의 아프리카國家들에게도 精巧한  
在來式武器購入을 國內安保目的에 適合한 限度의 武器購入으로 限定  
하도록 勸奨할 것과 同地域國家들이 軍兵力規模를 制限하기 위한  
萬策을 검토할것을 勸告했다. 이 報告書는 美國의 行動에 관해서  
도 여러가지 提案을 勸告하고 있다. 즉 이 報告書는 美國이 사  
하라沙漠地域의 아프리카에 대한 軍事援助計劃을 國內安保用 在來式  
武器供給으로 局限하고 外部로부터 (이 地域에) 供給되는 武器의  
質과 量을 國內安保目的을 위해 필요한 質과 量의 武器로 制限할  
수 있는 協定을 他供給國들과 체결하기 위해 努力할것을 提議하고  
있다. 美國은 또 아프리카團結機構(OAU)가 사하라沙漠地域 아프  
리카國家들의 國內軍의 任務를 國內전覆活動과 國內安保問題에 対処  
하는 任務로 局限시키도록 勸奨할것, 美國은 궁극적으로 OAU와  
아프리카警察軍에게 直接 軍事援助를 提供함으로써 OAU 武器規制集團  
安保体制의 長期的 發展을 支援할 것등을 이 報告書는 勸告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이같은 勸告案들이 可及的이면 非아프리카國家  
들의 協力を 얻어 實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報告書는 라틴아메리카에 관해서도 強大國들  
의 武器不売 協定과 라틴아메리카 各國政府의 武器不買 協定을 勸  
告했다.

1年뒤인 1965年 11月 全国市民委員會의 武器統制 및 軍縮委員會가 작성한 또 하나의 文書 즉 國際協力에 관한 報告書가 發表되었다. 66) 開發途上國들의 在來式武器競争問題가 別個項目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

「主要 武器供給國들은 低開發地域에 爆擊機 탱크 및 潛水艦 등의 精巧한 武器를 더 이상 搬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美國과 蘇聯의 過去行蹟은 좋지 못하다. 開發途上國 스스로가 地域的 베이스에 立脚하여 武器를 獲得하지 않는다는 協定可能性을 深求하도록 勸奨할 수 있는 努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在來式武器의 販賣 및 購入을 制限할 수 있는 協定이 유엔을 통해 追求되어야 한다. 이는 첫 段階로서의 地域協定과의 關係에서 極히 妥當性을 지녀야 하는바 以下에서 論及코자 한다. 최소한 유엔은 國際武器移動에 관해 『軍備年鑑』을 發刊한 國際聯盟의 措施를 復活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主張이 이 報告書의 勸告關係 部分에 다음과 같이 要約 收錄되어 있다.

「低開發國간의 在來式武器競争을 抑制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諸提議를 勸告한다.

1. 美國은 (a)主要列強의 精巧한 武器搬入中止協定 (b)地域的 不購入協定 (c)販賣 및 購入에 관한 유엔監視下의 協定 (d)武器去來를 記錄하는 유엔監視制度 樹立에 의해 武器去來에 관한 統制措置가 確立되도록 努力할것.

2. 美國은 他列強들과 合同으로 低開發國들을 의해 適切한 安保

策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이같은 目的을 위한 유엔 平和維持規程의 確立을 支援할것」

이 報告書는 1965年 11月 28日 부터 12月 1日까지 개최된 白 악館國際協力會議에 提出되었다.

### 才 3 節 各種 提案의 評價

#### 1. 各種 提案의 目的

武器貿易에 관한 대부분의 提案은 NATO와 바르샤바 條約機構의 直接 對決外에도 開發途上國들의 軍備增強에 대한憂慮에서 提議되었다. 67)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이 적어도 精巧한 武器를 製造하지 못하는 武器 非生産國임을 생각할때 武器貿易은 이들의 軍備增強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루트이다. 따라서 軍備競爭過程을 鈍化시킬 수 있는 한가지 方便으로서 武器貿易이 考慮대상이 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비록 2次大戰後의 提案에서는 대부분 明白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憂慮의 根源이 된 또하나의 事實은 武器供給이 強大國간의 競爭을 全世界로 波及시키는 루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分野에 있어서의 各種 提案의 目的은 開發途上地域의 軍備增強을 鈍化내지 中止시키거나 可能하다면 이를 逆轉시키고 東西간의 大大的인 軍備競爭이 才 3世界에 感染되는 程度를 緩和시킬 수 있는 方法을 模索하는데 있다. 多邊的 武器制限내지 軍備縮小

가 바람직 하다는데 大體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目標達成이 바람직 하다는데 대해서도 大體로 意見이 合致되고 있는것 같다. 現在의 軍備增強이 開發途上國들에게 미치는 結果에 대해서는 이미 論及된바 있다. 全世界的으로 武器供給이 增加하면 할수록 오늘날 世界의 많은 紛爭에 대해 軍事的 解決策이 追求될 加能性이 더욱 커진다는 主張에는 상당한 論據가 있다. 더구나 武器管理 및 維持로 虛費되는 勞苦는 姑捨하고 이로인해 消耗되는 經濟資源 또한 相當하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武器增強問題를 解決하고자 함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武器貿易統制만이 가장 適切한 方途인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있다. 現在의 軍備增強 現象을 一新하자는 主張이 強力한것은 確實하다. 束手無策의 結果는 매우 深刻할 수 있으며 이는 두고두고 言及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떤 提案의 好不好를 따지는 한가지 基準은 그 提案이 成功할 可能性을 다소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過去의 提案들은 武器非生産國들의 政治実情 및 武器非生産國의 武器增強과 武器生産國의 武器增強 간의 關係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提案은 이 問題에 關心을 가졌다는 점을 除外한다면 거의 無價値한 것이었다.

以下에서 武器貿易規制를 가로막고 있는 各種 障礙를 分析하고 이어 公衆에 관해 다소 制限性을 띤 提案과 才3世界地域의 武器生産 및 貿易에 관한 提案들을 論구한 다음 武器供給國政策의 土台가 되고있고 또 될수있는 各種 基準을 검토코자 한다.

## 2. 武器貿易規制의 障礙物

武器貿易規制提案의 成功을 妨害하는 2가지 主要 障礙物이 存在하고 있다. 첫째로 開發途上國은 이러한 提案들이 本質的으로 差別的이라고 不平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하다. 둘째로 武器供給國 特히 強大國에 對는 武器供給이 重要한 政策手段이 되고 있어 이들은 이 政策手段의 使用을 拋棄하려는 意思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障礙物 가운데 一部는 武器生産 및 貿易을 동시에 網羅하는 協定에 의해 克服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 가. 需要側面의 障礙物

過去의 武器貿易提案들에 對한 主要 反對는 이 提案들이 差別的이라는데 있었던 것 같다. 이 提案들은 兩者共히 禁止對象地域에 對한 武器供給을 規制하는데 注力했던 1890年의 브뤼셀法과 생제르맹協約案으로 부터 이어져 내려온 系譜를 이루고 있다. 이 提案들이 含蓄하고 있는 한 가지 意圖는 世界의 一部地域에 있어서는 유럽系國民이 武器保有의 独占權을 維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開發途上國의 見解로 볼때 이는 納得할 수 없는 立場이다. 開發途上國은 그들도 어떤 先進開發國과 마찬가지로 武器를 保有할 수 있는 똑같은 權利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對内外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安保를 지키는 것은 主權과 不可分離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또 全世界 武器量의 대부분은 先進開發國의 手中에 保有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開發途上國들은 先進開發國은 훨씬 많은 量의 武器를 備蓄하도록 許容되는 反面 開發途上地

域의 武器貿易만을 規制하려는 提案을 支持할 何等의 特別한 理由가 없다고 보고있다. 만일 武器貿易提案들이 先進開發國의 軍備競争을 아울러 規制하기 위한 措置를 隨伴하고 있었더라면 開發途上國들이 武器貿易規制案에 보다 積極的인 태도를 보였을런지 모른다.

한편 대부분의 武器非生産國들은 開發途上地域의 他國과 各種의 現實的 또는 潛在的 紛爭 特히 領土權紛爭을 벌이고 있다. 開發途上國들은 이같은 狀況下에서는 武器를 購入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保持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고있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또 武器購入은 그들 各種 國內 必要性을 위해 또는 外交政策의 뒷받침으로서 必須不可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武器購入) 抑制 措置가 先進開發國의 任意로 加해질런지 모른다는데 당황하여 그들에게서 叙上한 目的을 위한 武器를 약奪하려는 提案은 差別的인 것이라하여 反對하고 있다.

武器非生産國들이 差別待遇의 위험성이 特히 甚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狀態가 있다. 첫째는 일부 才3世界國家들이 同盟 또는 其他의 軍事協定을 통해 武器生産國의 保護를 받고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保護를 받지못하고 있는 國家들은 武器貿易抑制 措置는 이같은 保護를 받는 敵國을 有利하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非同盟國家들은 이같은 狀態에 介在되는 危險성을 緩和하자면 武器貿易規制案에 武器生産國과 非生産國간의 防衛條約을 終結시키는 協定이 附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武器非生産國이 武器生産國과 某種의 紛爭을 벌이게 되면

差別的 待遇의 可能性은 極히 苦痛스러운 것이된다. 越盟과 美國의 戰鬪에서 처럼 武器生産國이 富裕한 先進工業國일수있다.

이같은 경우에 있어서 富國은 精巧한 武器를 보다 많이 保有하여 이를보다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武器貿易協定이 없다하더라도 武器非生産國이 生産國의 精巧한 武器에 対接할 수 있을것 같지는않다. 베트남에서의 長期게릴라戰法사용은 精巧한 武器保有가 勝利를 거두는데 必須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示해 주고있다.

또 武器生産國이 自体武器生産으로 그需要의 일부를 充足시키고 있는 同一地域의 他國일 수 있다. 第3世界武器生産國의 대부분이 第3世界圈의 다른 武器非生産國과 紛爭을 벌이고 있다는 事實은 後者가 武器供給에만 局限되는 提案을 露骨的으로 反對하는 理由 가운데 하나가 되고있다. 이것이 거의 모든 地域에서 武器貿易規制를 가로막고 있는 主要 障礙物의 하나이다. 極東과 南아시아에 있어서는 印度와 그보다 규모가 작기는하나 인도네시아가 武器를生産하고 있다. 中東에서는 이스라엘이 比較的 發展된 防衛産業을 갖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 南아프리카共和國의 防衛力生産이 가장 重要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武器를 生産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拳발가 自体固有武器生産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武器非生産國이 隣接하고 있다.

따라서 武器供給을 規制하기 위한 어떤 提案이 開發途上國들에 의해 受諾될 可能性을 갖으려면 3가지 要因을 考慮하지 않으면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武器非生産國은 물론 武器生産國의 武器貿易과 아울러 그 生産(또는 保有)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貧國은 물론 富國에도 軍備競爭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認定하는 셈이 될 것이다.

둘째로 國內政治情勢나 그 地域의 他國과의 關係로 인한 開發途上國들의 武器需要를 考慮해야 한다. 셋째로 先進開發國과 開發途上國간에 存在하고 있는 軍事同盟 또는 防衛協定과 관련되는 問題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例컨대 對外強國의 軍事介入에 대한 某種의 保障策이 있어야만 한다.

#### 나. 供給側面의 障礙物

設令 武器貿易만을 規制하기 위한 協定이 武器輸入國들의 利害關係에 馳背馳된다. 하더라도 供給國들은 그들의 独占的 위치를 利用하여 輸入國들의 見解를 考慮하지 않고 武器貿易을 規制하기로 合意할 수 있다. 供給國들이 이같은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自体가 供給側에서도 強力한 障礙物이 依存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武器貿易에 관한 實効性있는 協定을 妨害하는 또 하나의 障礙物이다.

供給國側의 反對에는 두가지 主要 理由가 있다. 첫째는 武器供給이 強大國들 特히 美蘇兩國에 依해 政策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다는 점이다. 武器供給은 強大國들간의 紛爭이 全世界로 波及되고 있는 한가지 媒介가 되고있다. 만일 一國이 美蘇兩超強國에 依해 供與되는 武器를 武器貿易對象에서 除外한다면 全世界의 軍備競爭이

緩和될 뿐만아니라 東西對決의 擴散위험성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둘째로 才3世界國家들에 대한 強大國들의 軍事防衛公約은 주로 大大的인 軍備競爭의 副產物이다. 이 같은 軍備競爭이 계속 누그러지지 않는 限 軍備競爭은 才3世界國家와의 武器貿易의 規制를 방해하는 障礙物이 될 것이라고 想定해도 無妨하다.

비록 強大國 特히 美國이 때때로 그들의 武器供給政策을 再檢討하고 또 武器供給政策自體의 成功의 記錄조차 흔히 未審스럽다는 것을 隱然中 認定하고는 있지만 強大國들이 才3世界와의 武器貿易 規制協定에 臨하는 接近方式을 一變할 用意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徵兆는 아직 까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強大國들의 支援이 없다면 이 分野에서 取할 수 있는 措置는 많지 못하다.

이 같은 障礙物들이 緩和될 수 있는 狀況이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供給側面에서의 武器貿易抑制可能性」에서 보다 詳述하기로 한다. 만일 美蘇兩國關係가 改善된다면 世界霸權鬭爭과 全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關聯되어 있는 各種의 局地的 紛爭은 解決하기가 보다 容易해질 것이며 局地的武器需要도 減少될 것이고 또 強大國 스스로도 某種의 武器供給規制協定을 체결하기가 보다 容易해질 것이다. 또한 強大國들이 그들간의 軍備競爭에 관해 어떤 協定을 맺게된다면 그들의 才3世界國家에 대한 武器供給에 관해서 合意를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보다 나아질 것이다.

才3世界에 대해 武器供給을 계속하라는 強力한 壓力은 美蘇兩國에만 局限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英國과 프랑스에서도 國內軍備基

盤은 世界問題에서의 独自の 位置를 위해 必要한것으로 看做되고 있으며 또 이들은 輸出을 하지않고서는 그들의 現軍備産業構造를 持탱할 수 없는 것이다.

### 3. 可能性 있는 提案

그러므로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武器供給의 繼續과 擴大를 주장하는 勢力이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다. 供給側面에서는 強大國들이 武器供給을 政策的으로 利用하고있는 것 외에도 특히 英國과 프랑스에서는 經濟的 壓力이 작용하고있다. 需要側面에서는 差別氣味가 있는 提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되었건간에 強力히 反對하고있다. 따라서 主要 武器供給國과 輸入國은 모두 武器貿易提案에 反對하는 傾向을 보이고있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才3世界의 軍備增強問題에 대한 가장 実効性 있는 接近方法은 武器貿易에만 관련되는 提案이 아니라 武器規制 내지 非武装協定을 통한 接近方式 換言하면 武器獲得方法에 대한 某種의 統制가 協定の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武器獲得方法보다는 武器保有에 관계되는 協定을 통한 接近方式이다. 그러나 다소 規模가 작고 包括性은 적은 提案들도 아울러 檢討될 수 있다.

以下에서 武器貿易을 둘러싸고있는 秘密에 관한 提案 즉 武器移動의 登錄 및 公開를 위한 提案, 才3世界特定地或에 대한 武器供給規制와 관계되는 提案 및 武器供給國의 政策에 관한 提案 등 3가지 그룹의 提案을 論述한다.

#### 가. 登錄과 公開

유엔에서 論議된 唯一한 武器貿易規制案은 武器의 國際的 移動의 登錄이었다. 公開強化가 武器去來를 制限 할것 이라는 생각이 「國際 聯盟의 統計年鑑」發行을 재촉하여 이 年鑑은 1924年부터 1938年 까지의 每年 發刊되었다. 戰後의 登錄案에 대한 反應은 兩次大戰中 間 時期의 慣行의 改善은 姑捨하고 그 踏襲마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提案에 대한 많은 批判者들은 만일 登錄案이 武器貿易과 아울러 生産은 網羅하고 또 그것이 汎世界的이라면 이에 보다 好意的인 反應을 보일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公開強化가 武器購入 또는 販賣를 制限한다는 主張을 뒷받침하기 위해 提示된 論據에는 大體로 2가지 種類가 있다. 첫째로 紛爭 当事國들은 一般的으로 敵國의 軍事力을 過大評價하여 그에 対応하여 軍備를 갖추는 傾向이 있다는 主張이다. 만일 모든 武器去來가 公開되고 또 公平하다면 이들은 보다 小規模의 軍事力으로서도 安全感을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른다. 補給은 諜報施設을 갖추고 있는 盟國의 防衛體制는 그들의 潛在的 敵國의 詭計을 比較的 分明하게 把握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나 반드시 그렇지 도 않으며 -미사일에 관한 蘇聯의 意圖를 反駁하는 美國의 主張을 눈여겨보라- 諜報에 割當할 資源을 보다 적게 갖고있는 貧國들에게 는 더욱 그렇지못하다. 또 하나의 問題點으로서는 國防當局이 公式 聲明을 통해 一般的으로 敵國의 軍事力을 誇張하는 傾向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權威있는 國際的인 公開는 이 問題點을 다소는

正해줄 것이다. 68)

公開에 관한 두번째 論據는 一般大衆의 平和愛護性向에 依存하고 있다. 만일 武器供給國들이 武器貿易을 통해 才3世界國家에 얽매어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與論의 壓力이 作用하여 武器輸出을 減縮하게 할것이다. 事實上 武器輸出의 真相이 밝혀진 많은 武器供給國에서 그러했었다. 1967年 美國에서는 輸出入銀行이 國防省의 保證下에 武器輸出資金調達에 깊이 關与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인해 國民들간에 激烈한 討論이 일게되었으며 드디어 議會는 輸出入銀行이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武器輸出의 資金調達을 하는것을 禁止하고 國防省이 이같은 借款을 제공할 수 있는 權限을 制限하는 法律을 通過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제리아內戰은 多數의 武器供給國에서 公論을 일으키게한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몇가지 事例에 있어서는 이같은 公論이 나이제리아와 비아프라에 대한 武器禁輸措置를 招來하기에 이르렀다. 이와는 正反對의 事例로서 1967年 6月の 中東戰後 이스라엘에 대한 武器禁輸決定에 反對한 프랑스의 일부 與論의 抗議도 있다. 그러나 各國政府가 그들의 武器輸出真相을 보다 詳細하게 公開하게 된다면 與論의 壓力은 一般的으로 抑制方向으로 움직일것이라고 말해도 無妨하다.

武器生産 및 貿易을 登錄시키려는 國際的인 提案은 이같은 公開을 合法化시키는 한가지 方法이 될것이다. 이것은 우선 한가지 範圍만의 武器, 즉 現시점으로서 가장 情報가 많은 예컨대 軍艦

과 같은 한가지 範疇의 武器만의 登錄案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같은 種類의 提案으로서는 秘密의 利點이 크게 喪失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軍艦같은것은 일단 航海를 하게되면 거의 숨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軍艦登錄案이 수락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其他의 武器 우선 軍用機나 탱크 그 다음으로 隱匿하기가 보다 容易한 그밖의 다른 種類의 武器의 登錄案도 受諾될 수 있다.

才 3 世界國家들은 만일 武器登錄案이 武器生産을 아울러 網羅한다면 이를 受諾할 用意을 갖게될런지 모르나 武器生産國들은 이에 同意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特히 한가지 難點은 현재로서는 바르사바條約機構의 武器生産보다는 西方國家의 武器生産에 관한 情報가 보다 많이 公開되고 있다는 점이다. 西方側으로서는 그들의 衛星偵察이나 그밖의 다른 方法을 통해 바르사바條約機構에 관한 情報를 入手함에 있어서 相當한 經費가 소비되고 있을런지 모른다. 바르사바條約機構側에서도 그들에게 一方的인 讓步라고 생각되는 提案에 대해서는 이미 反對가 일고있다. 그들은 이는 軍縮案이나 武器規制案이라기 보다는 情報를 蒐集하기 위한 西方側의 計略에 불과하다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各國마다 政府에 대해 武器販賣에 관한 情報를 보다 많이 公開하도록 壓力을 가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일부 國家들은 이미 輸出對象地別로 武器輸出統計를 發表하고있다. 이같은 情報를 隱匿하는 安保上的 理由는 脆弱하며 公開를 주장하는 公益上的 論據는 강력하다. 有權者들은 條約과 同盟에 관해 알기를 期待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武器販売에 관해서도 알 權利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武器供給은 全的으로 行政府의 裁量權에 一任되어 있다. 만일 武器供給對象地에 관한 情報가 알려진다면 与論은 特定한 武器供給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判断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特히 紛争当事國에 대한 武器供給 拒否原則을 受諾하지 않는 國家에 該當된다. 武器供給의 細部內容을 公開하지 않는 主要 理由는 武器輸入國들이 公開는 그들의 安保를 위협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差別의 實例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機密과 安保의 聯関性은 模糊한 것이며 따라서 武器供給國들이 그들의 武器生産內容도 아울러 公開할 用意를 갖는다면 이같은 反對도 그만큼 克服될 수 있다.

#### 나. 地域的 提案

広範한 関心を 모은 才 3.世界의 武器制限에 대한 두번째 接近方式은 地域的武器制限協定이었다. 이러한 提案들에 관한 全面檢討는 本 研究報告書는 범위밖의 일이지만 이 提案들은 武器貿易에 관해 重要な 含蓄性을 지니고 있다.

軍備制限協定 체결 可能性이 가장 큰 곳은 紛争이 참銳化하지 않고 있으며 局地的 紛争이 東西競争을 反映하지 않고 있는 地域이다. 極東과 中東에 있어서는 이 같은 協定の 前提條件은 某種 형태의 紛争妥結과 이 地域에 대한 外部의 軍事防衛公約의 縮小이다.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는 쿠바를 除外한다면 競争은 西方列獨으로 局限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國家간의 武力紛争은 거의 全無한 狀態이며, 武

器는 계릴라活動牽制와 政治志向의인 軍部の 目的을 위해 導入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軍事的인 面에서 超強國들의 役割이 극히 制限的이다. 武力紛爭도 적고 武器購入도 낮다. 아프리카黑人國들은 一般的으로 南아프리카共和國과 對比한 그들의 在來式 軍事力劣勢가 不遠간에 克服될 可能性이 없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沙漠周邊의 아프리카地域의 具體的인 軍備制限案을 논술하기 앞서 才3世界國家들이 그들의 軍事的 自立을 增強시킬수있는 方法을 검토해보는것도 価値있는 일이다. 이는 東西競爭의 余波를 緩和시킬수있는 한가지 方法이 될수있고 또 地域的 베이스의 軍縮協定을 成就함에 있어서 重要한 한가지 要因이 될수있음을 意味할수있다.

武器市場은 販賣者市場이다. 武器購入國의 協商立場을 強化할수있는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分명한 方法은 才3世界國家들이 그들의 武器를 國際的 또는 地域的 베이스에서 購入하는것이다. 理論的으로 볼 때 才3世界國家들은 모든 軍事裝備및 用役의 供給通路가 되는 購買國聯合을 發展시킬 수 도있다.

勿論 이같은 制度에는 엄청난 障礙가있다. 紛爭當事國들은 同一한 供給源으로 부터 武器를 購入했는데 거의 同意하려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모든 武器購入國의 軍事的 需要를 판단하는 基準을 創案하는 問題가 提起로된다. 만일 購買國聯合이 어느 國家가 武器를 어느 정도 購入할 權利가 있느냐에 관한 判斷을 忌避하게 된다면 이같은 基準은 支払能力을 土臺로 하지않을 수 없게 된다.

武器供給國들이 購買國聯合을 인정하여 그 規程에 따라 行動할 用意을 갖지 않는限 貧國과 게릴라運動團體들이 特히 그들이 購買國聯合의 認定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같은 制度를 受諾하여 購買國聯合에 두리밖의 武器供給國들로부터의 軍事援助提議를 거절하리라는 可能性을 없는것 같다. 끝으로 이같은 制度도 武器供給國과 輸入國간의 關係를 完全히 解消시키자는 못할것이다. 만일 武器輸入國이 그들의 武器형태를 具體적으로 提示한다면 供給國들은 如前히 個別的 武器販賣를 促進하고 借款斡旋을 하며 技術陳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같은 某種의 構想의 일부 地域에서 比較的 小規模로 試圖해 볼 수 있다고 想定할 수 있는 根據가 있다. 아프리카團結機構의 아프리카解放委員會(A.L.C)는 萌芽的 형태의 이같은 購買國聯合의 實例를 提供하고 있다. A.L.C는 아프리카및 非아프리카供給國들로부터 아프리카解放運動에 提供되는 外部援助의 通路역할을 하도록하기 위해 設치되었다. 그러나 事實上 아프리카解放運動團體들의 需要카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A.L.C에 의해 充足되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이 比率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方法으로 제공되는 援助는 變務的 援助 特히 蘇聯으로부터의 援助를 相殺하는데 약간의 效果를 내고있다. A.L.C의 限界性은 주로 構造的 問題點에 基因하고있다. 外部供給國들은 그들의 援助를 A.L.C를 통해 提供하려 하지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아프리카解放運動을 支援하는 그들의 努力이 広範하게 暴露되기 때문이다. 또

A L C 는 이 같은 計劃에 대한 出資金을 確保하는 基準과 解放運動을 認定하는 基準에 關係 O A U 内部로 부터의 反발에 직면하고있다.

또한 一切의 援助를 取扱함에 있어서 物理的問題가 提起되고있다. A L C 의 方針路線에 따른 某種의 措置가 아프리카에서 購買國聯合으로 發展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諸國의 軍事의 自立을 增進시키고 外部列強에 대한 協商立場을 強化해줄것이다. 南아프리카共和國의 白人政權으로부터 直接的인 위협을 받고있다고 느낄런지모를 各國政府에 대한 某種 형태의 아프리카共同援助를 構想하는것도 어렵지않은 일이다. 아프리카國家들간에는 이미 其他의 才 3 世界國家들 例컨데 이스라엘및 印度와는 勿論 訓練과 軍服務의 交流가 실시되고있다. 數個 國家들사이에서는 超強國들로부터 軍事援助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있으며 또 多數의 相異한 供給源으로부터 軍事裝備 및 用役을 導入하려는 傾向이 있다. 이 같은 側面的 軍事政策은 첨銳化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또 制度化될 수도있다.

아프리카만이 이 같은 政策을 追求할 수 있는 唯一한 地域은 아니다. 아랍國家들간에도 이미 軍事購入에 關係 協力하려는 企圖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主로 資金調達과 關係된것이기는 하나 아랍合同購買使節團이 또한 存在하고 있다. 中東의 問題點은 첨銳化現象이 이미 存在하고 있으며 軍備制限에 關係 武器輸入國의 協定은 超強國의 協力을 必要로 하는 某種의 紛爭妥結이 이루어지지않고서는 체결되지 못할것이라는 점이다. 極東과 南아시아에 있어서도 이 같은 種類의 政策에 대해서는 이와 類似한 障礙가 있을것같

다.

라틴아메리카諸國은 얼마전부터 유럽으로부터 精巧한 武器를 購入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그들의 對美軍事依存性を 減少시켜주고있다. 그러나 購買國聯合이 그것이 美州國家機構(OAS)와 獨立된 것이건 또는 아니건간에 事態를 현저하게 變化시킬 수 없는것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政權들이 其他의 分野에서 美國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現狀態下에서는 東西競爭이 이 地域에 反映될 가능성은 없다.

<아프리카의 武器制限協定> 아프리카는 恆常 武器規制및 軍縮의 存在性을 갖고있는 地域으로 看做되어왔다. 國防費支出이 낮고 현재 아프리카諸國이 保有하고있는 武器도 比較的 精巧하지않다. 아프리카 35個가운데 불과 19個國만이 제트엔진을 具備한 戰鬪機를 保有하고있을 뿐이다. 이디오피아 우간다. 나이제리아및 수단만이 超音速 戰鬪機를 保有하고 있으며 7個國만이 탱크를 保有하고있다. 가나와 나이제리아가 巡察艇보다 重型的 장비를 갖춘 海軍을 갖고 있을뿐이다. 아프리카 黑人國家로서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는 國家는 전혀없다.

아프리카에서 武器制限協定체결을 가로막고있는 主要 障礙物은 南部아프리카白人政權들과의 紛爭이다. 이같은 協定이 체결될 수 있으려면 南아프리카共和國 폴투갈및 로디지아에 대한 効果的인 武器禁輸措置가 必要할것이다. 그러나, 武器禁輸措置의 有無에 關係없이 이들 政權이 在來式 軍事力面에서 그들에 敵對하는 勢力보다

如前히 훨씬 強力할것이라는 主張이 있을 수 있다. 開發途上國들은 精巧한 武器를 動員하더라도 先進工業과의 在來式戰爭에서 不利한 立場에 놓일 可能性이 있다. 設령 南아프리카共和國과 폴투 같이 外部供給源으로 부터 武器供給을 받지않았다하더라도 이들은 某種의 國內生産武器를 自由自在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設令 紛爭의 軍事的 解決策이 試圖된 다하더라도 精巧한 大型武器로 싸우는 戰爭이 될 可能性은 없다. 오히려 白人政權을 相對로 國內에서 벌이는 게릴라戰의 형태를 띠 可能性이 보다 크다. 그러므로 아프리카地域에서의 一定한 範圍의 精巧한 武器制限을 提議하는것은 不合理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게릴라들을 包容하고 있는 國家들에 대한 空襲對処의 問題는 如前히 남게된다. 武器制限協定은 이들 國家의 防空防衛를 위해 某種의 規定을 마련하지 않으면안된다. 이 問題의 가능한 解決方案은 이같은 航空防衛體制를 건설하는 國際的인 協定이 될수있다. 이같은 解決方案이 갖는 意義는 平和維持軍을 마련하는 意義에 比喩된다.

多邊的 軍事援助가 提議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4年 킨샤사공고와 美國은 유엔平和維持軍의 撤収와 關聯하여 유엔主管下에 실시될 공고후을위한 多邊的 訓練 計劃을 共同으로 提議했다. 놀웨이, 벨기에, 캐나다, 英國및 이탈리아를 비롯한 多數의 國家들이 이 計劃에 參與하기로 同意했다. 이들의 計劃은 結局 拋棄되고 말았는데 유엔內에서의 이에 대한 主要反對는 西方側의 偏見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이같은 種類의 提議에서는

쉽게 克服될 수 있을런지모른다.

<라틴아메리카의 武器制限協定> 라틴아메리카의 非核地帶에서는 地域的 武器制限協定の 先例가 있다. 美國은 1967年 4月 분데, 델. 에스테에서 그밖의 다른 範圍의 武器도 同時에 批除하는 協定 두자고 提議했다. 提議對象이 된 그밖의 다른 範圍武器는 超音 速機 驅逐艦이상의 重型軍艦 30 t級以上の 탱크및 미사일이었다. 오늘날에는 重型탱크를 除外하고는 이같은 範圍에 속하는 모든 武器를 1個國以上の 라틴아메리카國家들이 保有하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協定은 非武裝協定과는 反對되는 軍縮協定이 되어야할것이다. 라틴아메리카國家들이 國防費支出의 上限線을 設定하거나 將來의 武器購入을 制限하는 協定을 受諾을 기꺼히 受諾하리라고 생각아 니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協定の 意義는 그리크지못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政府들은 대부분 精巧한 武器購入에 관해서는 美國政策에 反對하는 傾向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武器들은 軍部の 政治的 役割을 保存하고 軍部各階層간의 敵對關係를 永統化하는데 一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防費支出은 낮으며 그밖의 다른 軍事購入分野에서는 라틴아메리카國家들이 美國의 勸告를 受諾했던것 같다.

라틴아메리카國家들은 아마도 將來의 武器購入을 制限하는 協定보다는 國防費支出의 上限線을 受諾할 可能性이 보다큰것 같다. 前者는 現狀을 公式化하는데 불과하다. 後者는 軍部の 役割을 某種의 영향

을 미치게 될런지 모른다. 國防費上限制에 의해 解放되는 資源은 그리 많지는 못할것이며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國家의 構造를 놓고 볼때 이같은 資源은 라틴아메리카 國家全體의 經濟的 社会的 發展에 크게 寄與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現事態에 의해 提起되는 戰爭의 危險性은 적다. 라틴아메리카의 主要紛爭은 國內紛爭이며 이는 또 軍縮協定이나 非武裝協定の 影響을 받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武器購入을 規制하려는 어떠한 協定도 그것은 世界의 餘他地域에서의 類似한 協定체결을 위한 先例를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發展的 現象이라고 強力히 主張할 수 있다.

#### 다. 供給政策

모든 武器供給國은 某種의 暗示的 또는 明示的 基準에 立脚하여 武器輸出에 관한 決定을 내린다. 相異한 範疇의 基準과 그 基準의 採択이 가져오는 結果를 檢討해 보는것도 價值있는 일이다.

才1次的 集團의 基準은 抑制性을 띤 基準이다. 스웨덴과 스위스같은 國家들, 그리고 어느程度이기는 하나 西獨과 日本은 武力紛爭에 關與하고있는 國家들과 부분적으로는 武力紛爭에 關與할 可能性이 있는 國家들에 대해서는 武器가 전혀 供給되어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適用하고있다. 武器導入은 設令 冬眠상태에 있다하더라도 紛爭狀態를 反映하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政策의 變形으로서 武器가 一切 輸出되지 않는 政策이 있을 수 있다. 어떤 國家가 그들이 國際問題에서 맡은 役割은 武器貿易을 一切 回避하는것이어야 한다는 決定을 내릴 수 있다. 例컨데 最近 스위스

에서의 武器貿易討議時 ( 많은 國際機構 特히 赤十字議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事實을 포함하여 ) 스위스식의 中立과 스위스의 武器輸出간에는 基本的 兩立不可性이 存在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같은 種類의 接近方式에는 두가지 問題點이 存在한다. 첫째로 이같은 接近方式은 어떤 紛爭에 있어서 보다 有力한 當事國을 隱然中 支援하게된다. 둘째로 만일 東西紛爭의 才3世界로의 波及이 抑制될 수 있다면 이같은 原則을 採択하는 弱小國들은 例컨데 美蘇兩國보다 더 適切한 武器供給源을 代弁할 수 도있다.

例컨데 美蘇兩國을 除外한 모든 主要武器供給國들이 紛爭에 關与하고 있거나 關与할 可能性이 있는 國家들에 대해 武器供給을 拒否하는 原則을 採択한다하더라도 眞正한 어려움은 있게될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各國들은 超強國들의 手中으로 더욱 깊이 墜入하게 할것이기 때문이다. 各國은 紛爭이 勃發하는 경우 彈藥 또는 裝備附屬品供給을 遮斷할런지 모를 供給源으로부터의 購買에 慎重을 期할것이 分明하다.

個別國家를 위한 妥協可能性이 있는 武器貿易政策은 武器가 紛爭 當事國들에게는 供給되어서는 안된다는 一般原則이 規定되데 그러나 行政府는 真相을 發表하고 그 措置를 正当化할 用意가 있는 特殊한 狀況下에서는 이같은 一般原則을 저버릴수있는 政策이다. 이같은 種類의 政策은 某種의 變越한 原則에 立脚하여 紛爭當事國에 대한 武器供給可能性을 남겨놓게된다. 이는 大原則으로서 紛爭當事國들에게는 武器를 供給하지 않는다는 原則이 如前히 遵守된다는

점을 除外한다면 앞으로 說明할 才3 才4 형태의 政策과 어느 程度 類似하다.

抑制性政策의 正反對가 되는 才2型態의 政策은 商業的 베이스에 立脚하여 武器를 要請하는 者에게는 武器를 供給한다는 政策이다. 이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武器輸出의 基準은 支払能力이 된다. 이같은 政策은 어떤 特定한 政治的 性向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떠한 형태의 補助도 없기 때문에 武器輸入國의 政變에 대한 武器供給國의 介入도 限定성을 띤다. 이같은 接近方式의 短點은 그것이 武器흐름의 全般的인 增加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으며 보다 富裕한 武器輸入國을 隱然中에 支援하게 된다는 점이다.

才3의, 형태의 政策은 武器輸出에 관한 決定의 基礎를 武器供給國의 輸入國에 對한 政治的 同調에 두는 政策이다. 이는 美蘇 兩國이 採択하고 있는 基準임이 分명한바 이는 被後見國의 弱爭的 武裝을 招來할 수 있는 基準이다.

才4 형태의 政策은 國際적으로 合意된 諸原則에 立脚하여 特定한 武器輸入國에 대한 支援를 決定하는 政策이다. 南아프리카共和國에 대한 一切의 武器禁輸와 플투갈에 대한 一定한 範疇의 武器禁輸를 規定하고있는 유엔安保理事會決議는 人種差別主義的 政權에 대해서나 또는 植民戰爭을 支援하기 위한 目的으로서는 武器가 一切 供給되어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反映하고있다. 어느 意味에서든 이 才4 형태의 政策은 國際聯盟에 依해서도 實施되었다. 당시에 適用된 特定한 原則은 侵略國에 대한 反對의 原則이었다. 이탈리아

아가 이디오피아를 侵略하자 國際聯盟은 1935年 加盟國들에게 對  
이탈리아 武器禁輸措置를 施行하도록 指示하는 한편 한 걸음 더나가  
아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도 武器禁輸措置를 實施하고있었던 스위스  
같은 國家들에게는 이를 解除하도록 促求했다.

이같은 原則의 適用은 紛爭을 孤立된 暴力싸움으로서가 아니라  
一聯의 広範한 國際問題와 混亂의 筈露로 취급하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한 紛爭當事國들의 競争的 武装化를 回避시킨다.

그러나 이같은 接近方式을 擴大 이를보다 實効性있는것으로 만드  
는데에는 크나큰 難點이 있다. 特定한 武器供給國들의 利害關係는  
이같은 諸原則 解釈上의 差異를 招來할 수 도있다. 이같은 利害  
關係의 相衛은 이미 南아프리카共和國과 폴투갈에 대한 武器禁輸措  
置의 實効를 저해하고있다. 더구나 才3世界の 많은 國家들은 美  
蘇兩國中 어느 一國과 提携하고있으며 따라서 어떤 紛爭에 있어서  
는 그들이 提携하고있는 強大國이 他方이 그르다고 速斷하는 傾向  
이 있다 이같은 分裂은 유엔—安保理事會나 總會—이 國際聯盟이  
이탈리아및 이디오피아에 관해 이룩한바와 같은 程度의 全員一致의  
意見을 이룰수있는 紛爭이 아마도 많지못할 것임은 뜻한다.

<供給側에서의 武器貿易抑制可能性> 美蘇兩超強이 才3世界武器의  
대부분을 供給하고있기 때문에 어떤 國際的인 規制協定이 없는 경  
우 이같은 武器供給흐름이 줄수있는 可能性은 주로 美蘇兩國의 政  
策에 左右된다. 現在로서는 이같은 武器供給흐름의 鈍化徵兆가 거  
의 보이지않고 있으나 이를 期待할 수 있는 狀況이 있기도하다.

가장 可能性이 큰 狀況으로서는 對立하는 武器供給國들이 그들 스스로 武器輸入國간의 紛爭에 휘말려들기 전에 이紛爭을 抑制하고자하는 경우를 들수있다. 利害關係가 一致할때에는 合意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있다. 아랍-이스라엘戰爭을 抑制하려는 外部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그 한가지 例가 될수있겠다. 1950年의 三大國宣言에 따른 軍備制限이 失敗한뒤 美蘇兩國으로부터 對中東武器禁輸를 暫定的인 試案들이 多數 提議되었다. 初期에는 西方側이 바그다드 條約(現在의 CENTO)에 대한 軍事防衛公約을 拋棄하려하지 않은것이 한가지 障礙가 되었고 또 한가지 障礙는 平和妥結策에 合意보지못한 事實이었다. 特히 1967年以來 蘇聯은 6月戰爭中에 占領한 아랍領土로 부터의 이스라엘軍撤収가 武器供給制限協定の 前提條件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따라서 中東에서 某種의 平和妥結策이 이루어지려면 平和妥結案의 一環으로서 4大國간에 武器供給에 관한 某種의 協定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協定은基本的으로 供給國의 協定이 되지않으면안될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協定이 武器輸入國의 支持를 얻을수있느냐하는데에는 疑問의 餘地가 있다.

世界餘他地域에서도 이와 類似한 事情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印度가 中共과 和解한다면 武器供給國들은 파키스탄과 印度에 대한 武器輸出을 制限하는것이 그들에게 有利하다는 결정을 내릴수도있다. 이같은 形態의 武器禁輸措置는 비록 그것이 外部로부터 強要되는 것이어서 安定性있는 解決策은 못된다 하더라도 局地的 紛爭의 危險性을 抑制할 수 있을것이다.

供給側에서 武器貿易을 抑制할 수 있는 또하나의 可能性있는 措置는 過剩保有武器의 廢棄이다. 美國은 1964年 廢棄機廢棄案을 提議하면서 이 廢棄案은 廢棄機가 他國의 手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해줄것이라는 主張을 내세웠다. 「投壳処分」 즉 新型武器確保를 위한 剩餘武器의 讓渡処分一은 오늘날에는 美國에서 1950年처럼 濫發되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政府는 아직도 台灣과 같은 일부 武器導入國에 剩餘武器를 供給하는데 関心을 갖고있다. 왜냐하면 이는 軍事援助에 대한 議會의 抑制措置를 回避할 수 있는 한가지 方法이 되기 때문이다. 蘇聯이 이같은 型態의 武器供給을 어떻게 보고있느냐 하는것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廢棄處分에 관한 協定이 반드시 美蘇兩國간의 協定型態를 띠 必要는 없다. 예컨대 NATO會員國들이 현재 西歐에서 遊休狀態에 있는 老후탱크를 스스로 廢棄處分하는데 合意할 수도있기 때문이다.

69) 이같은 協定은 武器를 廉價로 購入할수도있는 輸入國者의 能力을 줄일뿐만 아니라 武器供給을 위해 使用될 수 있는 武器備蓄量을 줄이게 될것이다.

보다 一般的인 可能性이 있을수도 있다. 美蘇兩國간의 緊張狀態가 顯著히 緩和되고 그에 附隨하여 兩國의 戰略武器에 관한 真正한 武器制限協定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兩國에서 孤立主義를 指向하는 趨勢가 일수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어느 경우에든 軍援提供額에 대한 懷疑가 漸次 커질 수 있고 그리하여 軍援總額을 減縮하라는 強力한 壓力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美議

會內에서는 이 같은 壓力이 팽배하고 있으나 行政府는 주로 軍援法  
 案이 아니라 豫算의 다른 部門에 軍援을 포함시키는 方法을 통해  
 이같은 壓力을 謀免하고 있다. 軍援에 割當되는 資源을 보다 有  
 用하게 달리 使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一部 集團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蘇聯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壓力이 있는지는 알 道理  
 가 없다. 武器供給中의 軍援構成比減少는 武器供給國에 대한 武器  
 導入國의 政治的 負債를 줄일수 있는 利點을 가질 것이며 또 이는  
 超強國의 市場占有率을 줄이게 된다. 貧國들이 美蘇兩國 어느 한  
 나라를 選擇하여 武器를 導入하는 한가지 理由는 武器를 廉價로  
 購入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尤 3世界國家에 대한 武器供給을 抑制  
 하는 美蘇兩國間의 暗黙的 또는 明示的 協定은 그 밖의 다른 主要  
 武器供給國들이 이 協定の 當事國이 된다면 그 实效性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당히 強化될 것이다. 어떤 協定이 美蘇兩國에만 局  
 限된다면 프랑스와 英國같은 그 밖의 다른 主要 武器供給國들의 武器  
 輸出이 증가할런지 모른다. 비록 이들이 武器輸出을 위해 美蘇兩  
 國보다 훨씬 적은 補助를 하고있기 때문에 美蘇兩國의 武器輸出이  
 減少하는 만큼 이들의 輸出이 增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 , 보  
 다 폭넓은 供給國協定은 多數의 中小武器供給國들의 國際的 立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中小武器供給國들은 國內軍備基盤이  
 世界政治에서 独自の인 位置를 차지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傾  
 向이 있으며 또 많은 中小武器供給國들은 輸出을 통하지 않고는 그  
 들의 軍備産業現構造를 維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같은 種類의 協定이 才3世界國家들에게 差別의인 것이 될 것임은 當然하다.

#### 4. 結論

才3世界國家들의 武器保有量增加는 戰後世界の 困惑스러운 한가지 새로운 特徵이 되고 있다. 그러나 武器貿易만을 規制하려는 提案이 才3世界の 軍備增強을 抑制할 수 있는 가장 適切한 方途인지는 疑心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提案은 必然的으로 武器非生産國들을 差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武器登錄案이 才3世界國家들에 의해 受諾될 가능성을 가지려면 確實히 武器貿易과 同時에 武器生産을 아울러 網羅하지 않으면 안된다. 武器의 實際的인 規制 또는 制限에 接近할 수 있는 가장 實効性 있는 方法은 武器貿易과 生産을 아울러 對象으로 하는 武器輸入國간의 地域的 協定을 통하는 方法인 것 같다. 強大國들의 敵對하는 軍事防衛公約이 重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地域에서는 美蘇兩國간에 妥結의 進展이 이루어지지 않는限 이 같은 協定이 체결될 展望은 全無하다. 協定체결 可能性이 가장 큰 地域은 強大國의 軍備競爭과의 關聯性이 가장 稀薄한 地域 例컨데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沙漠周邊의 아프리카地域이다.

武器貿易의 중요한 特性의 하나는 武器貿易이 다른 要因과 함께 才3世界の 軍備競爭을 東西對決과 關連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武器規制案은 이 같은 關聯性을 弱화시키고 武器非生産國의 軍事的 依存性을 줄이는 것을 한가지 目的으로 삼아야 한다.

供給側面에서는 비록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극히 적기는 하지만 일부 國家들이 보다 抑制性을 띤 政策을 採択할런지도 모를 可能性이 있다. 問題는 美蘇兩國의 政策이다. 만일 어떤 理由에서(이같은 理由를 想像할 수는 있다) 才3世界의 競争的 軍備增強에 대한 美蘇兩國의 関心이 弱화된다면 이는 才3世界의 軍備增強을 緩和시키는 가장 중요한 事態發展이 될것이다. 이것이 世界의 軍事的 不平等을 強化할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註]

- (1) 美國과 其他 列強間의 條約, 協約國際法, 議定書 및 協定 1776-1909, 才2卷, 워싱턴 1910
- (2) 講和條約 1919-1923, 才1卷 카네기 國際平和財團, 뉴욕 1924, PP 1-22
- (3) 國際聯盟條約叢書, 1922, No200, P.333
- (4) 베르사이유 講和條約 才126條에서 獨逸은 「1890년의 브르셀 一般法과 이를 補完 내지 修正하는 協約에 ……規定된 合意 內容을 受諾하고 이를 遵守」하기로 同意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제르맹平和條約 才90條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武器 去來에 關係 聯合國에 의해 이루어지는 또는 이루어질, 또는 聯合國과 其他의 列強사이에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질 協約들을 認定하고 受諾키로 한다」
- (5) 이 協約 才1條는 다음과 같다: 「協約當事國은 모든 種類의

砲, 모든 種類의 彈丸, 폭발物, 개스發射用 道具, 機關銃 및 小銃, 모든 種類의 火繩銃 등의 戰爭武器와 이같은 武器에 使用되는 彈藥의 수출을 禁止하기로 한다. 이같은 輸出禁止는 完成品 또는 附屬品을 莫論한 이같은 一切의 武器와 彈藥에 適用된다. 이같은 禁止措證에도 불구하고 協約當事國은 그 使用이 國際法에 依해 禁止되지 않고있는 武器에 있어서는 그밖의 다른 目的을 除外한 協約當事國 또는 協約當事國들의 政府요구를 充足시킬 수 있는 輸出免許狀을 發給하는 權利를 留保한다」

(6) 美國은 上院의 強力한 反對때문에 國際聯盟規約과 講和條約을 批准하지 않았다.

(7) 이같은 結論은 美國이 베르사이유 講和條約과 關聯하여 表明한 反對에서 導出될 수 있다. 「同 講和條約에 美國의 判斷으로 보아 一般的으로 門로독트린으로 通稱되고 있는 오랜 전에 定立된 政策에 依存하거나 이와 關聯을 갖는 問題들에 關한것이 規定되는 경우 美國은 國際聯盟總會나 理事會의 仲裁 또는 調査에 應하지 않을것이다. 門로독트린은 오로지 美國에 依해서만 解釋될 수 있는것이며 따라서 이는 全的으로 國際聯盟管轄權밖에 있는것이며 獨逸과의 베르사이유 講和條約에 포함된 어떤 規定에 依해서도 全혀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宜言하는 바이다」 (베르사이유 講和條約 및 國際聯盟規約에 대한 美上院의 14個留保事項에 關한 퍼디난드

차 년에서 의 로저 上院議員의 說明, 베르 사이 유 1919, 뉴요크  
1964, P 405 )

(8) 國際武器, 彈藥 및 戰爭道具 貿易 監視에 관한 會議의 條例 제베  
바, 1925年 5月 4日 - 6月 17日 國際聯盟 刊行物 A.B. 1925  
K, 제베바, 1925年 9月, 才 1次會議, P122

(9) Ibid., PP122-23

(10) Ibid., 才 2次會議 P 133

(11) Ibid., 才 4次會議 P 195

(12) Ibid., 才 1次會議 P 182

(13) Ibid., 才 4次會議 P 190

(14) Ibid., 才 1次會議 P 137

(15) 美國代表는 「어찌하여 民間武器 製造 禁止를 위한 會議가 召  
集되면서 政府 내지 公共武器 製造는 放置해 두어야 하는가?」  
라고 反問했다.

Ibid., P 251

(16) 國際聯盟叢書, 刊行物 K, 單縮, 1933, K 4 (單縮會議  
1959)

(17) 國際聯盟유니온, 「武器 製造」 No347, 런던 1933年 7月,  
PP7-8 參照

(18) F.White, 「武器 去來」 No269, 才 4版 國際聯盟유니온, 런  
던, 1934年 4月 P45

(19) 其他의 武器 生産 國들이 또한 제베바 協約을 批准할때 비로서

이 協約이 發効되어야 한다는 留保條項이 規定되었다.

- (20) YWCA, 國家委員會, "兵器統制를 위한 諸措置" 뉴욕 1935, P 34
- (21) "國際聯盟叢書" 刊行物 K, 軍縮 " 1935, K 61 (軍縮會議)
- (22) 그러나 1968年 스위스의 경우에서 처럼 政府統制가 非効 果的인 것으로 看做될때에는 武器産業國有必가능성이 다시 提起되는 傾向이 있다.
- (23) 1946年 10月23日 부터 12月15日까지의 才1次유엔總會 後半會期에서 채택된 諸決議 P 67
- (24) 安保理事會의 諸決議 및 決定, 1947, 1947年 2月13日의 決議 18 ( S/268 1 Rev 1/Con 1 )
- (25) 總會, "公式記錄, 才3次總會, 才1部 諸決議" (A/810) PP 17-18
- (26) 유엔文書 A/C I/L 347
- (27) 유엔文書 A/C I/PV 1392, PP 17-22
- (28) 유엔文書 A/C I/SR 1393
- (29) 유엔文書 A/PV 1562(Prov), PP 38-40
- (30) 유엔文書 A/PV 1685(Prov), P 68
- (31) 유엔文書 A/PV 1704(Prov), P 27
- (32) 유엔文書 A/C I/L 446, Paras, 5(d) 및 6
- (33) 유엔文書 A/C I/PV 1616, PP 7-16
- (34) 유엔文書 A/C I/PV 1624, PP 38-47

- (35) 유엔文書 A/C I/PV 1628, PP 23-26
- (36) 유엔文書 A/C I/PV 1617, PP 26-46
- (37) 유엔文書 A/C I/PV 1627, PP 17-외및 A/C I/PV 1629  
PP 27-31
- (38) 유엔文書 A/C I/PV 1617, PP 26-46 및 A/C I/PV 1624  
PP 38-47
- (39) 유엔文書 A/C I/PV 1629, PP 17-18
- (40) 總會決議 2454B(XX111)
- (41) 1969年 7-9月の ENDC會議時 현재 軍縮委員會로 불리  
는 이 委員會에 8個新委員國이 追加되었다. 同會議各稱  
은 軍縮委員會會議(CCD)로 改稱되었다.
- (42) CCD/PV 450, P 18
- (43) CCD/PV 451, P 19
- (44) CCD/PV 454, P 10
- (45) CCD/PV 462, P 35
- (46) WEU 7個會員國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和蘭, 英國, 獨  
逸聯邦共和國(西獨) 및 이탈리아 이다.
- (47) 西歐聯合議員總會, 才15次 一般會議(才2部), 文書500,  
P.2 : Strasborg, 1969年12月4日
- (48) Ibid, P7
- (49) ENDC 1165
- (50) ENDC/PV, 257, PP 15-19

- (51) CGD/PV 449, P 13
- (52) ENDC/227
- (53) 뉴요크타임즈, 1956年 4月 28 P-4
- (54) "國務省通報" 1957年 4月 1日 PP 524-526
- (55) 타임즈, 런던 1958年 2月 1日 P 6
- (56) "軍縮에 관한 文獻 1967" ACDA, 워싱턴 1968, P 263
- (57) Ibid, P 303
- (58) 워싱턴포스타, 1967年 6月 26日 및 ENDC/227
- (59) U.Alexis Johnson 政治担当國務次官, 1970年 3月 24日  
 "對外軍事版売法修正案 1970, 1971" 중에서, 1970年  
 3月과 5月の 第91次議會 2次会期, 美上院外交委員會  
 証言 P 35
- (60) 軍兵力上限을 設定한 1831年과 1840年の 콜롬비아-페루  
 條約 또는 "正當한 힘의 均衡"을 確立하기 위한 海軍艦  
 艇의 販売 또는 減縮을 規定한 1902年과 1903年の 아르  
 헨티나-칠레條約과 같은 雙務的 協定은 여기에서 考慮되지  
 않고있다.
- (61) "國務省通報" 1964年 1月 20日 PP 81-89
- (62) ENDC/PV 176, PP 5-8
- (63) ENDC/123 및 A/5827/Corr 1
- (64) T.HooPes 國際安保問題担当國防次官補의 發言 1967年 4月  
 90次議會 1次会期美上院外交委員會 "近東 및 南아시아問題

- (65) 마사추세츠工科大学 國際問題研究所, "開發途上地域의 地域的 武器統制協定" C/64-25, 마사추세츠, 1964
- (66) "軍縮에 관한 文書1965", ACDA, 워싱턴 1966, PP 555-580
- (67) 同盟内部에서 의 그리고 先進開發國 間의 武器交流는 一般的으로 共同生産의 政治的 所望性問題 또는 그經濟的 難點과 같은 전혀 判異한 政策問題를 提起한다. 事實상 모든 武器貿易規制案은 이같은 貿易을 아울러 포함하고있긴하지만 提案者의 關心은 本質的으로 開發途上國으로의 武器供給흐름에 있다.
- (68) 一國의 當局이 敵國의 潛在的 軍事力을 公公然하게 過小評價할수있는 경우가 있을수있다. 印度政府는 파키스탄軍事力에 關係 한누차례 이같은 過小評價를 했을런지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稀少하다.
- (69) 이같은 탱크의 대부분은 비록 그것이 이탈리아에 販賣되었기했지만 西獨製이다. 西獨은 그들이 西獨駐屯美軍의 駐屯費를 相殺하기 위해 美國으로부터 들여오지 않을수없는 莫大한 軍事購買에 依해 代替되는 品目을 廢棄處分하는것보다 이의 改善에 관심을 갖고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剩餘物賣가 1967年이래 거의 販賣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이 關心이 支配的인 아님을 示사하고있다.

## 才 2 章 極 東

### 才 1 節 序 論

極東에서는 武器供給이 超強大國 介入手段으로서 별로 큰 重要性을 갖지 않는다. 中東에서는 武器供給이 強大國의 주도권 확립에 큰 역할을 해온데 비해서, 極東에서는 특히 美國의 경우 直接介入이 보다 큰 比重을 차지해 왔다.

泰國, 「라오스」, 越南의 경우도 이들에게 供給된 武器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며, 美國이 이 나라들에 대한 直接介入에 투입한 資源은 武器供給을 위해 투입한 資源을 약 50:1의 비율로 앞지르고 있다.

極東지역에 대한 武器供給 양상은 地域内 紛爭의 추이에 따라 변천해 왔다. 예컨대, 韓國과 北韓은 1950 - 53年중에 極東地域 전체에 대한 武器供給量의 3/4을 차지했으며, 1958 - 59年 台灣海峡에 긴장이 조성된 직후 台灣에 대한 武器供給量은 極東地域 전체의 1/3을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紛爭시 이 두나라는 역시 全體의 1/3에 해당하는 武器를 供給받았으며, 南北 베트남은 1965年 以來 이 地域에 대한 武器供給量의 약 2/3를 차지해 왔다.

武器調達 內容은 항상 當事國의 軍事的 必要에 따라 변천해왔다. 예컨대, 南北韓을 在來式地上戰과 空中戰에 적합한 「탱크」와 航空機를 제공받았으며, 台灣은 海軍과 空軍力 증강에 必要

한 裝備를 제공받았다. 반면에 주로 「게릴라戰이 벌어진 「라오스」, 泰國 및 越南은 연습용 飛行機와 「해리콥터」등 COIN 裝備를 위주로 공급받았다. 특히 越盟은 美軍機의 폭격이 치열했던 1966~68년에 地對空「미사일」을 大量 供給받았다.

武器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因은 역시 供給國의 측면에서 찾아 봐야 한다. 特히 美國이 介入한 地域에서는 供給國과 受援國간의 關係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個別的 受援國의 武器要請은 援助內容의 결정에 그다지 큰 重要性을 갖지 않는다. 極東地域에서의 武器去來가 갖는 主要 特徵의 하나는 超強國이 供給國으로서 絶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 1 極東에 대한 主要國의 武器供給 상황 (1950-69)

1968年 價格基準

國 別	供給國	1950	1	2	3	4	5	6	7	8	9	60	1	2	3	4	5	6	7	8	9
브루나이	英																1	1	1		
	美	1	1						1		1	1	1	1	1	1	1		1	1	1
	英	1				1	1	1	1	1	1	1	1	1	1	1	1				
	仏												1		1	1					
	소련															1					
캄보디아	美						1	1	1	1	1		1	1		1		1			
	仏					1	1	1	1			1	1	1	1	1	1			1	1
	소련															1			1		
	中共															1	1	1		1	
	기타					1		1	1								1				
인도네시아	美	1	1	1	1	1	1	1	1	1		1	2	2	1	1	1		1	1	
	英	1	1	1	1	1	1			1		1	1	1							
	仏															1		1		1	1
北 韓	소련									2	3	2	2	4	3	3	2				
	기타	2	2	1	1	1	1	1	1	2	2	1	1	1	2	2	1				
	소련	2	2	2	3	1	2	1	1	1	1	1	1	1	1	1	2	3	1	1	
韓 國	中共	2	2		2				2	3	3	2								2	
	美	2	2	2	1	1	2	3	1	3	1	2	1	2	1	1	1	2	1	1	3
	기타				1													1			
라오스	美					1	1	1	1	1	1	1	1	1		1		1	1		
	仏						1				1		1	1							
말레이시아	美									1										1	1
	英									1	1	1	1	2	2	1	2	1	2	2	2



世界 武器去來 總額에서 超強國이 차지하는 比重을 65%에  
 比하여, 이들이 極東地域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90%가 넘는다.  
 中共의 武器輸出은 거의 전부가 極東地域을 상대로 한것이다.  
 이地域 武器去來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와 英國의 比重은 3%밖  
 에 안되며, 그나마 「말레이시아」, 「버마」 및 印支諸國에  
 한정되어 있다. 그밖의 群少 武器輸出國들도 極東에 별다른 武器  
 輸出을 하지 못하고 있다.

表Ⅱ 提供國別 武器供給상황 (極東)

單位：美貨100萬弗，1968年 價格기준

공급국	1950-54 연평균(%)		1955-59 연평균(%)		1960-64 연평균(%)		1965-69 연평균(%)		1950-1969 합계(%)	
美國	50	45.9	141	60.0	168	60.2	186	38.0	2754	49.0
英國	1	0.8	5	2.1	14	3.0	13	2.7	160	2.8
프랑스	1	0.8	2	0.9	3	1.1	3	0.6	45	0.8
소련	18	31.1	14	6.0	68	24.4	272	55.5	1958	34.9
中共	16	13.1	42	13.9	7	2.5	3	1.5	347	6.2
기타	10	8.2	31	13.2	19	6.8	11	2.2	352	6.3
會計	122	100.0	235	100.0	270	100.0	490	100.0	5616	100.0

A. 사사오입으로 단수불일치

資料 = SIPRI

極東地域에서의 美國의 武器提供은 軍隊波遣을 代贊하거나 이를 補充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地域에 대한 美國 軍事援助는 対象國의 軍隊를 훈련·장비하여 美軍의 직접적 波遣이 필요없도록 하는것이 그 主要目標의 하나로 되어있다. 韓國戰爭이 끝난후 極東에 대한 美國의 軍事援助가 급증한 것이라든지, 1969年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이지역에 대한 武器輸出이 증대하고 있는 事態는 이러한 美國의 政策을 반영하는 것이다.

表Ⅲ COIN型 裝備供給상황 (極東)

단위 : 台

	印支半島 a)			其 他 b)			比 率(%)	
	헬리콥터	연습기	초계정	헬리콥터	연습기	초계정	印支半島	其 他
1950 - 54	4	20	23	15	27	78	15	85
1955 - 59	50	162	68	28	99	39	11	89
1960 - 64	197	240	87	27	56	106	34	66
1965 - 69	395	49	59	39	6	45	74	26
合 計	546	481	237	109	188	268	44	54

a)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泰國 및 越南

b)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韓國, 필리핀 및 台灣

c) 그중 300 台는 1969 年에 공급됨

資料 : 國別調查

美国防長官 「멜빈·레이드」도 「美軍事援助計劃과 海外武器販売計劃은 「닉슨·독트린」 실행의 핵심적 手段」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므로 極東에 대한 武器援助는 대부분 現地使用을 전제로 한것이다. 물론 몇가지 다른 目的도 있다. 그중 한가지는 極東諸國의 越南戰 參戰을 권유한다는 것이었다. 泰國, 韓國 및 「필리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泰國은 越南波兵의 대가로 「호크」「미사일」1개 大隊의 설치를 약속받았다. 「필리핀」에 대한 美国軍事援助는 「필리핀」內 基地使用에 대한 代價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美国은 「필리핀」이 外部攻撃에 독자적으로 대항해야하는 경우를 심각하게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政府도 역시 美国이 武器를 提供해줄뿐 아니라 이나라를 지켜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北韓 및 越盟에 대한 蘇聯의 武器供給은 突戰 使用用인 동시에 中共의 武器供給과 均衡을 유지한다는 면도 고려에 넣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大量의 武器供給은 주로 政治的 利害關係를 고려한 것으로, 「수카르노」政府가 蘇聯과 손을 잡고 西方측의 影響力 減소를 企圖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었다.

#### 가. 兩極化

極東地域의 地域的 紛爭을 다른 어느地域의 紛爭보다도 美·蘇 兩極体制의 對決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은 兩極

化 過程은 韓國의 南北分斷에서 韓國戰爭에 이르는 과정에 보일 나  
타나 있다. 台灣과 中共간의 紛爭도 美國의 介入으로 國際적인 重  
要성을 갖게 되었다. 民族間的 對立과 伝來의 敵對關係로 복잡하게  
얽힌 印支事態는 植民戰爭으로 부터 급격하게 東西對立으로 발전해  
왔다. 兩側이 서로 자기편 集團을 武裝시킴으로써 國內紛爭은 冷  
戰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예컨대, 「라오스」에서는 山岳民族과  
平地의 「라오」族간의 伝來의 紛爭이 양측이 각각 越盟과 美國의  
支援을 받는 「이대올로게」紛爭으로 발전하였다. 1962年 中立國  
을 수립하려는 強大國의 企圖는 1年이 못가서 파탄을 보았다.

美國의 「사이링톤」上院議員은 1970年 2月 兩極化 過程을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먼저 獨逸을 分割했고 다음에 中國을 分割했다. 우  
리는 수많은 人員과 돈을 들여 獨逸과 中國에 駐屯하고 있다.  
우리는 韓國을 分割하여 그곳에 駐屯하고 있다. 또 越南과 「  
「라오스」도 分割, 수많은 人員과 돈을 들여 駐屯하고 있다.  
美國은 이번에는 어느나라를 分割할 計劃인가? # 2」.

1個月 後, 東西 兩陣營으로 부터 軍事援助를 받아 非同盟 立  
場을 고수하려했던 「캄보디아」의 「시아누크」公政權이 전복됐다.  
1970年 4月, 美國과 越南軍이 「캄보디아」로 進駐함으로써, 「캄  
보디아」는 美國이 支援하는 政府軍과 越盟과 中共이 支援하는 反  
軍으로 分裂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分裂이 한쪽은 美国, 그리고 다른한쪽은 蘇聯과 中共의 支援을 받는다는 그러한 형태로만 되어있지는 않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 美国이 한쪽을 지원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友軍은 越盟으로 부터 直接 支援을 받으며, 蘇聯과 中共은 간접적인 支援에 그치고 있다. 蘇聯이 越盟의 「라오스」 및 「캄보디아」介入을 독자적인 계산에서 支援하고 있는지, 아니면 中共과의 競争때문에 어쩔수 없이 支援하고 있는것인지는 전연알 수 없다.

兩極化 紛爭의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援助提供国과 受援国간 에 相互依存關係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相互依存關係는 台灣, 韓國, 및 印支半島에서 명백히 나타났다. 援助提供国은 受援国이 援助国의 意思에 反한 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援助를 中斷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軍備援助 中斷은 受援国의 敗亡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바로 이런 理由때문에 美国은 中国本土收復문제에 관하여 台灣과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自由中国에 大量의 軍備提供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 나. 獨立

極東에서의 몇가지 事例는 援助国이 受援国の 政策을 調整하고자 할때는 軍備支援을 独占해야 한다는 原則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極東地域의 社会主義国家인 越盟과 北韓은 中蘇를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獨立을 유지해 올수 있었다. 이것이 美国援助에만 의지해야 하는 韓國, 越南 및 台灣의 경

우보. 그들이 유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점이다.

이와는 形態가 다르지만, 「버마」와 「캄보디아」도 独自の 軍備調達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버마」에는 兩極化의 소지를 안고 있는 民族紛爭이 있지만, 「버마」政府가 거의 獨立主義的인 外交政策을 추구, 武器供給源을 多元化하여 주로 西方측에서 조달하면서도 社會主義國과도 선린관계를 維持해 왔기 때문에, 中共이 공공연한 지원을 제공 美蘇의 「버마」政府支援増大를 불려일으켰던 짧은 기간동안을 제외하고는 「버마」의 内部紛爭은 國際化하지 않은채 계속 國內문제로만 남을수 있었다. 「캄보디아」도 1970年3月까지는 強大國의 경쟁을 이용하여 獨立을 유지해 왔다.

다. 그밖의 受援國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武器供給은 極東地域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前 英國植民地였던 「말레이시아」는 계속 英國의 武器供給에 의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계속 英國軍이 駐屯해 있었는데, 英國軍 撤軍發表가 있는 직후부터 武器輸入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武器調達は 國內의 民族紛爭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스카르노」治下의 國內 種族紛爭은 特히 「말레이시아」와 對立을 가져와, 蘇聯으로 부터 武器를 購買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였다. 「말레이시아」와의 紛爭에서 蘇聯이 소극적이거나 「인도네시아」를 支援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國內對立은 자칫하면 東西 兩極化 過程을 밟을번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5年 「수카르노」의 실각후 西方側 軍隊가 「말레이지아」로 부터 撤収하고 蘇聯도 援助를 中斷한 이후로는 이 地域에 대한 武器供給에 관심을 갖는 強大國이 없는것 같다. 심지어 美國은 이 地域에서의 武器競争을 現상태에서 凍結시키기 위하여 英國이 「말레이지아」에 超音速戰鬪機를 공급하지 말도록 要請한것으로 보도되었을 정도이다.

현재 「말레이지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는 모두 對外 戰爭에 사용할만한 高性能武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바」紛爭이 政體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表Ⅳ 南,北韓에 대한 品目別 武器供給상황

單位：美貨100만 분, 1968年가격기준

	1950 - 54	1955 - 59	1960 - 64	1965 - 69	1950 - 69 (합계)	百分比(%)
北 韓						
航空機						
전 투 기	246	200	11	53	510	77.5
수 송 기	2	-	6	-	8	1.2
연 습 기	-	1	-	-	1	0.2
해 리 콧 터	1	-	-	2	3	0.5
艦 艇						
전 함 b)	-	6	1	16	23	3.5
기 타 c)	-	2	2	-	4	0.6
탱 크	18	15	10	1	43	6.5
미 사 일	-	-	-	66	66	10.0
합 계	267	224	29	138	658	100.0
南 韓						
航空機						
전 투 기	32	116	15	105	267	63.3
수 송 기	6	-	-	-	6	1.3
연 습 기	-	2	2	-	4	1.0
해 리 콧 터	-	4	-	-	4	1.0
艦 艇						
전 함 b)	10	2	2	1	15	3.5
기 타 c)	2	16	7	-	24	5.8
탱 크	33	12	17	3	65	15.4
미 사 일	-	1	2	35	37	8.7
합 계	83	151	44	143	422	100.0

a. 사사오입으로 단수불일치

b. 프리케이트함, 驅逐艦, 호위함, 초계정, 어뢰정, 砲艦 및 潛水艦 등 포함.

o. 소해정, 상륙용정, 예인선, 기뢰부설선, 해양탐사선, 정비선 등 포함.

資料 : SIPRI

## 才 2 節 北 韓

### 序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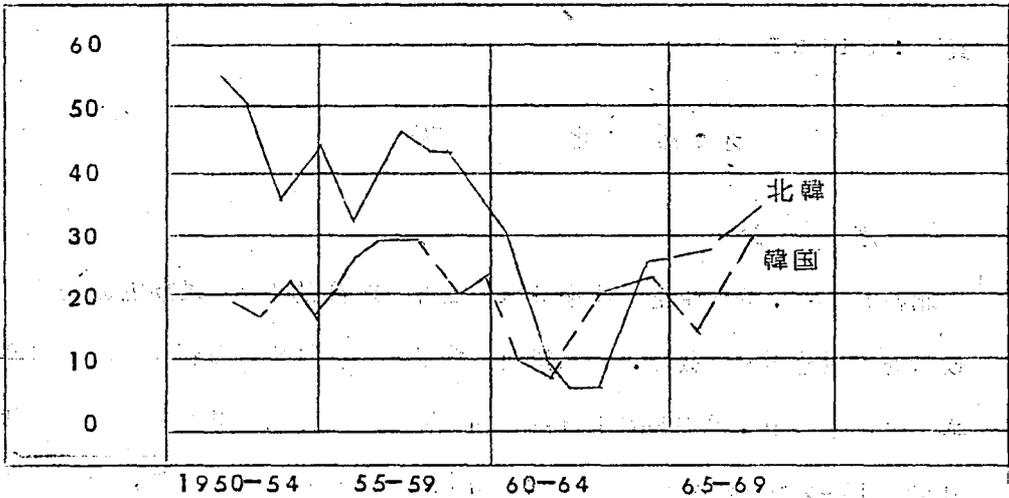
北韓은 中·蘇紛爭을 이용하여 보다 独自の이고 民族主義的인 政策을 발전시켜 왔다. 北韓에 대한 武器供給 內容은 본질적으로 北韓과 中·蘇兩強大國과의 關係變遷에 따라 변동을 가져왔다. 이를 1946~53年の 依存期, 1953~59年の 過渡期, 그리고 1959~70年の 自主期の 3段階로 区分해 볼수 있다.

#### 1946~1949年

日本이 항복한 1945년부터 1949年 1月 까지 蘇聯軍이 北韓에 駐屯하였다. 蘇聯軍과 함께 약 2萬名으로 추산되는 소위 「蘇聯系 韓国人」도 入國하였다. <sup>3)</sup> 또 하나의 「구름」은 원래 滿州에 亡命했던 韓国人들로서 1940年 日本에 의해 滿州로 부터 쫓겨나 이후 1945년까지 蘇聯에서 訓練받고 終戰時에는 蘇聯의 極東軍 將校로 있던 者들이다. 이들은 金日成을 포함 약 100名에 불과한 소규모의 集團이나, 歸國후에는 약 6,000名을 헤아리던 國內共產主義者들을<sup>4)</sup> 압도하여 1946年에 선포된 北韓政權에서 軍, 黨 및 行政府의 要職을 차지하였다.

圖 1 南北韓에 대한 武器供給추세

單位：美貨 100 萬弗，1968 年價格基準



資料：CIPRI

이러하여 이 期間중 北韓은 전적으로 蘇聯의 支配下에 놓여있었다. 蘇聯은 武器, 彈藥, 「개솔린」 機械등을 供給해 주었으며, 1946 ~ 50年 間に 약 5,600 萬弗의 經濟援助를 供給했다.

中共은 아직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北韓을 지원할 資源을 갖고있지 못했다. 이 당시 北韓이 갖고있던 武器는 蘇聯이 준것이거나 反日抗爭時期의 遺物이었다. 1948年에 北韓은 空軍(KPAFAO)을 창설했다. 6) 蘇聯은 北韓에 空軍裝備을 供給했으며, 1949年 撤軍후에도 여러명의 敎官이 남아 空軍要員의 훈련을 맡았다. 맨 처음에 供給한 航空機는 Yak-18 과 Po-2, 연습기, Il-10 폭격기(근접지원용) 및 Yak-9P 1人승 戦闘機였다. 1950年

6月 韓国戦争 당시 北韓空軍은 약 150台的 一線航空機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1個 Yak-9P 戦闘機聯隊와 1個 Il-10 聯隊가 포함되어 있었다. 1950年 4月과 5月に 蘇聯은 「탱크」, 「트럭」 및 重砲를 大量으로 지원해 주었다. 7)

가. 韓国戦争

이 戦争은 1950年 6月に 시작되었다. 그후 1950年 8月 10日까지에 UN軍은 도합 110台的 北韓空軍機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나머지 航空機는 압록강 건너 滿州의 基地로 후퇴 蘇聯教官들에 의해 再編成되었다. 이당시 滿州의 空軍基地를 제공해 준것이 北韓에 대한 中共의 첫번째 援助이다. 中共은 이어서 UN軍이 압록강으로 진격함에 따라 30萬의 義勇軍을 北韓에 投入했다.

蘇聯製 MIG-15 戦闘機가 처음 戦闘에 참가한 것은 1950年 11月이었는데 全体戦争期間을 통하여 大多數의 MIG機는 蘇聯비행사들이 조종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蘇聯의 軍事援助로 北韓空軍은 前보다 오히려 더욱 強化되어, 休戰當時에는 MIG-15, Yak-9P 및 La-9 戦闘機등과 Il-10 및 TU-2 爆撃機, 그리고 소수의 Il-28 變形「젯트」爆撃機를 보유하는 5個飛行師團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도합 250台的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北韓空軍은 休戰직후 北韓內 基地로 돌아왔다.

1953 - 1958 年

이 기간은 金日成이 延安波와 함께 親蘇波. 및 蘇聯系 韓國人の 세력을 제거한 기간이다. 8) 金日成 政權에 대한 大衆의 支持는 特히, 1951年 6月 23日 蘇聯이 UN에서 休戰會談의 「이니셔티브」를 취한 후 증대하였다. 蘇聯의 이러한 행동은 戰爭中の 막대한 손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南北分斷을 영구화하는 것이라 해서 北韓에서 광범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中共軍은 1958年 까지 北韓에 남아있어 北韓의 蘇聯 支配體制 反對를 촉진시켰다.

金日成은 政府를 改編하고 勞動黨員의 數를 대대적으로 늘림으로써 國內權力의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自立的인 經濟建設에 착수하였다. 蘇聯의 援助와 승인도없이 5個年計劃을 작성 1956年 4月 才 3次 全當大會에 제출하였다. 이 全當大會에서 金日成은 親蘇派를 제외한 中央委員會를 구성 세력기반을 굳혔다. 이 大會가 끝난 후 金日成을 權座에서 축출하려는 企圖가 있었는데, 金日成은 이를 蘇聯의 사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1957年까지만해도 蘇聯은 北韓에 主要武器를 제공해주는 唯一한 援助國이었다. 1953年 休戰이후여서 蘇聯의 教官들이 滿州의 北韓空軍學校에서 조종기술 훈련을 계속하였다. 1955年부터는 I1-28 「젯트」 폭격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1956年初부터는 낡은 MIG-15機를 MIG-17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美國政府는 1957년도 北韓空軍機數가 70台的 MIG-15 및 MIG-17機를 포함. 약 5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蘇聯의 影響은 直接的인 것이었음에 반하여, 1953年부터 中共이

北韓政策에 미친 영향은 間接的인 性格의 것이었다. 따라서 北韓은 中共에는 한번도 依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金日成이 特히 經濟문제에 관하여 中共으로 부터 高무를 받는것은 확실하다.

北韓은 1958年까지 集團化작업을 끝내고 소위 「千里馬運動」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은 모두 中共의 經驗을 흉내낸 것이다. 11)

中共은 1957年 이전에는 별로 武器를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1957年 北韓은 中共으로부터 여러대의 초계정과 蘇聯製 An-2 수송기들을 보급받았다. 1958年부터 中共은 MIG-15와 MIG-17機를 北韓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MIG-17이 대량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中共製인것으로 보이는데, 12) 어쨌든 이때 부터 軍事 및 經濟的 援助提供國으로서의 中共의 比重이 증대하였다. 13) 1957年 北韓空軍은 中共 및 蘇聯空軍과 指揮權을 통합했는데, 이 것은 이협정으로 北韓을 中共의 방어권에 끌어들이 中共에 特히 有利한 것이었다.

#### < 1959-65年 >

이 시기는 「호루시초프의 反「스탈전」運動에 뒤이어 北韓과 蘇聯의 關係가 최악의 상태로 되었던 기간이다. 14) 1961年에 시작된 7個年計劃도 社會主義陣營에 協同的인 經濟計劃을 추진하는 蘇聯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같은 해 北韓은 中共 및 蘇聯과 각각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했으나, 北韓이 계속 獨自的 政策을 추구하자 蘇聯은 1962年 모든 援助를 중단해 버리고 말았다. 15)

北韓 勞動當 機關紙는 이 문제에 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다. # 일부 사람들은 마치 어떤 1個國의 軍隊가 社會主義 陳營 全體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어떤 社會主義國가도 다른나라의 軍事力에 만 전적으로 依存하려해서는 안된다. # 16)

이렇게 해서, 1960年代 初에는 中共이 北韓에 「젯트」연료와 부속품을 공급하는 한편 Il-28 爆彈機로 추가로 援助하였다. 17)

北韓空軍은 瀋州의 瀋陽에서 생산되는 中共製 MIG-17機 5個聯隊을 주축으로 재편성되었다. 1963年경에는 北韓空軍은 도합 380台的 中共製 MIG-15 및 MIG-17機를 공급받았다.

中共은 그밖에도 「瀋陽」 Yak-18機와 MIG-15 UTI機와 함께 蘇聯의 An-2 항공기를 모방한 中共製 「풍·수」 No. 2 輸送機들도 공급받았다. # 결과 1963年末현재 北韓은 465台的 戰鬪機를 포함 도합 약 700台的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1965-1970 >

北韓은 1965年까지 蘇聯의 援助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失脚후 브레즈네프-코시긴政權은 對北韓關係를 改善하기로 決定하였다. 18) 1965年 5月 31日에는 蘇聯과 北韓사이에 追加軍接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追加軍接協定은 北韓軍事使範圍이 蘇聯에 數週日동안 滯在하면서 協商되었으며 北韓空軍에 미그機가 있다는 報道가 1965年에 처음 행해진 것으로 보아 당시의 協定內容에 미그 21機의 援助門題가 包含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이같은

和解關係로 인해 北韓이 親蘇政策을 펴도록까지 된것은 아니었으며 北韓言論機關들은 北韓이 經濟 文化및 理念的인 면에서 蘇聯에 独立的이어야한다는 必要性을 계속強調했다. 北韓은 独立自主인 經濟政策을 遂行小銃을 비롯하여 彈藥, 機關銃및 박격포등과 같은 小火器를 生産할수 있게되었다. 19)

對中共關係는 文化革命期間중에 크게 惡化되었다. 1967년에 들어 中共은 北괴를 条正主義라 非難하고 金日成을 人身攻撃했다. 國境紛糾도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報道되었다. 그러나 1968年以後부터는 正常的인 關係가 다시 이루어졌다. 1970年 7月에는 北韓軍事使範圍이 中共을 訪向했다. 金日成은 北韓人들이 1970年代에 韓國이 統一되는것을 보고자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蘇聯과 中共은 韓國의 平和統一에 대한 支持를 強化해왔다. 20)

### 第 3 節 韓 國

#### 序 論

韓國戰爭은 유럽 의에서 참戰化된 東西紛爭의 한증은례가 되고있다. 이러한 結果로 韓國은 美國의 「전방防衛地域」의 하나가 되었고 全적으로 美國의 支援에 依存해왔다. 韓國은 (다른 UN軍과 더불어) 直接介入하고있는 나라이며 武器援助는 美國의 對韓援助의 唯一한 断面이 되고있다. 美國의 對韓武器援助過程은 美國 武器援助政策의 不安定性을 說明해 주고있다. 韓國戰爭當時는 美國의 直接介

入時機였으며 당시 가장 重要한 것은 美軍을 派遣하는것이었고 韓國軍에게 武機를 補給해주는것은 그리큰 效果가 없었다. 그후 1950年代 後半에 들어서 現地軍이 制限攻進을 감당해야할 責任을 져야한다는 美國內의 팽배한 여론에 따라 對韓軍援이 大大的으로 強化되었다. 1960年代 초반에는 武器導入量이 減少되었고 軍援중 이미 援助받은 軍裝備의 운용과 정비에 사용되는 比率이 점차 增 大했다. 이와같은 結果는 美國이 「共產侵略」의 形態중 外部로 부터의 侵略보다 内部진복에 더욱 중점을 둔결과 비롯된것이였다. 끝으로 美國의 越南戰介入은 韓國의 武器輸入增大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對韓武器援助는 1965年부터 韓國軍의 越南派兵에 대한代 價으로 이루어졌다.

兩極化는 援助國과 受援國사이 에 相互依存關係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향가운데서 각 當事國은 相對方에 政治的 影響 力을 행사할수 있다. 대체로 말해서 韓國과 美國의 目標는 韓國 內에 非共產國家를 維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一致해왔다.

그러나 이따금 韓國政府는 美國政府의 의사보다 더욱 많은것을 바랐다. 韓國은 빈번히 美國을 說得하여 防衛條約下의 美國側 義務를 自動的인 義務로 規定하려고 시도했다. 이밖에도 韓國問題에 대한 韓國측의 자세는 가끔 美國이 받아들이고자 하는바 보다 훨씬 強硬한 것이였다. 한가지 예로써 美國은 이미 韓國戰爭이 발 발하기전 에 北韓을 侵略하려는 어떠한 企圖라도 제거하기위하여 韓 國軍을 防衛用小火器로 武装시키는 先見之明」을 갖고있었다. 21)

美上院外交委員會의 聽聞會에서 행한 「포터」駐韓美國大使의 對  
韓接助와 美軍의 韓國駐屯에 대한 証言은 청문록에서 削除되었으  
나, 다음과 같은 反應을 불러 일으켰었다.

「사이밍턴」上院議員: 「만일 「프랑스」나 英國이 南北戰爭時에 우  
리의 어느측에 대하여 「메릴랜드」나 「펜실베이니아」로 移動해들  
어가지 말라고 말했다는가, 「링컨」大統領이나 「그란트」裝軍에  
대하여 「버지니아」州로 進攻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면 우리나라에  
서 反應은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國民에게 그들의 國家를 防衛하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國家를 防衛하지 않으려하는데 대해 그들에게 代  
價를 지불해 주어야 할 것인가? 22)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난 1年内지 2年동안에 韓國政府는 美國側  
이 提供하고자 하는바 보다 훨씬 많은 裝備를 要求해왔다.

#### · <武器接助>

大韓民國은 1948年 8月 38度線以南 地域에서 建國했다. 美  
國은 正規美軍이 撤収한 후에도 韓國에 軍隊를 駐屯시켰다. 當  
時 韓國軍은 주로 2次大戰에 남은 裝備로 武裝되었다. 이들 各  
種裝備는 5千6百만「달러」어치 分에 해당하는 것으로 5만명의  
軍隊를 武裝시키기에 充分한 것이었으며 이중에는 海軍小艦艇을 비  
롯하여 Piper L-4 直絡機 T-16 Texan 練習機等이 包含되어있었  
다.

1950年 6月 25日 韓國戰爭이 발발하고 美軍과 UN軍이 直接

介入한 후로는 韓國軍에 대한 武器援助를 별도로 계산한 다른것은 별 意味가 없게되었다. 이期間중 美國의 軍事援助는 美國防省을 통한 直接援助로 代置되었다.

戰爭後 締結된 休戰協定은 새로운 武器導入을 禁止시켰으며 어느 측도 休戰協定締結當時의 水準이상으로 空軍力을 強化할 수 없다고 規定했다. 유엔軍 司令部는 北韓측이 이條項을 違反했다는 理由로 1957年 이같은 制限조치를 철폐하였으며 1950年代 後半에 가서는 武器導入과 軍事援助의 規模가 크게 擴大되었다.

韓·美間 相互防衛條約은 1953年 10月에 締結되었으며 1954年 11月부터 施行되었다. 1954年과 1960年사이의 항공기도입은 주로 약 2백대에 달하는 F-86 「세이버」戰機였으며 그중 최초분 5대는 1955년에 들어왔다. 1956년에는 75대의 「세이버」機가 들어오고 이해에 美空軍戰機部隊 1個旅團이 撤収했다. 海軍裝備의 導入規模도 커졌으며 특히 이중에는 上陸艇이 包含되어있었다. 당시 美軍의 한提督은 美軍과 現地軍間의 責任分割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 모든 自由아시아國家는 海上兵站線에 依存하고 있다. 才7艦隊는 空海上에서 그機能을 遂行하고있으며 現地軍은 領海에 대한 責任이 있지만 모든 나라가 相互防衛努力에 관심을 갖고있다. 」<sup>23)</sup>

이期間중 美國의 軍事援助量이 많았던 또 하나의 理由로는 당시

韓國軍의 軍需體制가 非效率的이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軍需責任은 1955년에 韓國軍에게로 移讓되었으나, 韓國戰爭부터 1960년까지의 期間에 대해서는 効果的인 補給品目錄表가 없었다. 그러므로 在庫品目이 무엇이든 必要以上の 物資가 船積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1960년부터 對韓軍事援助가 약간 줄어들었다. 美國政策目標의 重點이 外侵에 대비한 補給으로 옮겨졌으며, 韓國의 경우 內亂 問題는 重大한것이 되지않았다. 그러나 재래식武器의 供給이 아직도 大量으로 이루어지고있었다. Honest Tohn을 비롯하여 Nike Hercules 및 Hawk 등과 같은 新銳 미사일도 供給되었으며 1965~1966 期間에는 超音速 F-5 Freedom Fighter 機가 낡은 F-86 機와 代置되었다. 그점에도 불구하고 이期間동안의 新購구입을 위한 軍事援助額은 減少했다. 1964~65년까지 彈藥을 비롯하여 附屬品 食品 및 訓練費에 대한 金額이 全体無償軍援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후 1969~1970년에 이르러 作戰과 整備에 대한 比率이 더욱 높게되어 1969년에는 淸구無償軍援의 90%인 1億4千萬[달라]에 달했으며 1970년에는 97%로써 1億3千6百萬[달라]에 달했다.

이것이 美國의 對韓軍援助額全体에 대해 차지하는 比率은 각각 60%와 70%였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不拘하고 韓國에 대한 武器援助는 몇 가지 理由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첫째로 美國은 5萬名의 韓國軍을 派越한데 대한 代償을 지불할 義務를 지고있었다. 1965年 10月

韓國軍을 派越할때 美國은 韓國軍 3個豫備師團을 完全武装하여 火  
刀, 通信 및 機動力에 있어서 韓國軍의 現代化를 기하기로 公約했  
다. 그후 1966年부터 韓國은 탱크를 비롯하여 大量의 野砲小火  
器, 트레일러, 트럭 및 巡察艇을 援助받았다.

둘째로 1968年以末 韓國과 北韓間의 충돌회수가 急增되었으며  
1968年 1月の 「주에블로」号事件이후 美國의 武器援助와 軍事援助  
량이 增加했다. 1億 7千万「달러」의 정규軍援助에 1968~1969年  
분으로 3千 2百万「달러」상당의 對間諜裝備費가 計上되었으며 大統  
領의 年側 外授敎書가 발표되기 직전 1億「달러」가 追加되었다.  
1億「달러」는 對空裝備을 비롯하여 巡察艇, 「레이더」 彈藥 및  
항공기 購入에 쓰아 도록 되어있었으며 항공기는 이 1年동안에 韓  
國이 購入하기로 要請하는 「팬텀」機였다. 韓國은 1969年 여름  
에 5千 2百万「달러」상당의 1個飛行大隊를 引受했다.

美國은 駐韓美軍一部를 撤収하는데 대한 追加의인 代價으로 武器  
援助를 더욱 增大시켜달라는 상당한 壓力을 받고있다. 韓國은  
1972年부터 1976年까지 5年동안에 약 30億「달러」의 特別軍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같은 韓國側 要求는  
아마도 美國側이 提供하고자 하는바보다 많은것이겠지만 美軍減縮의  
影響은 武器援助의 增大로 相殺될것으로 보인다.

- 1) 1970年 10月 22日 「멜빈. 레어드」國防長官이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오찬회에서 행한 연설문
- 2) United States Socie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RePublic of Korea. 美上院 外交委員會 청문록, 1970年 2月  
P 1579.

- 3) P.Rudolph, North Korea s Political and Economic stru  
cture, New York, 1959. 이들 蘇聯系 韓國人들은 蘇聯에서  
양성된 蘇聯共產黨員들이다.
- 4) Pigulevskaya, koveiski narod v borbeza nezavisimost  
i demokratiju, Moscow 1952.
- 5) History of the Korean War, Seoul 1967  
J.A.kim. "Soviet Policy in North Korea " World Politics  
No. 2, Jan, 1970, P.241에서 引用
- 6) 以下の 설명은 모두 William Green and John Fricker, air  
Forces of the World, London, 1958에 依함.
- 7)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New York, 1960.
- 8) 延安派라 함은 才2次大戦中 延安에 머물러 있던 少数集團을  
말함. 1950年の 숙청에서 가장 저명한 延安派 人士인 金武  
亭은 拙당되어 다시 中共에 亡命했다. 中共軍의 介入후에도  
延安派는 세력을 회복치 못했다. ( J.Akim, "Soviet Policy in  
North Korea," World Politics, op cit, P.241에서 )
- 9) 金日成 회고록, 平壤 1965
- 10) 中共이 必要的 武器를 供給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한가지  
理由가 될것이다.
- 11)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Fourth Congr-

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g, Pyong yang 1961,  
Pp. 43-44.

- 12) 최초의 中共製 MIG-17 은 1956 年에 완성되어 매월 20-25 台씩 생산되었다. 이 당시 中共은 MIG-15UTI 「젯트」練習機와 MI-4 「헬리콥터」도 생산하였다.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60-61, John W.R. Taylor, ed, London 1960 에서)
- 13) 1960 年에 蘇聯借款 1 億 9,000 萬 「달러」가 취소되고 3500 萬 「달러」가 연기되었다.
- 14) P.186 및 P.428 참조
- 15) 1962 年까지 北韓은 도합 14 億 6,000 萬弗의 經濟援助를 받았는데, 그중 48.8%는 蘇聯이, 30.9%는 中共이, 그리고 나머지는 東歐諸國이 제공한 것이다.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Fourth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op, cit, (6)
- 16) 노동신문 World Politics, op cit, P.250에서 引用
- 17) 이 部分의 설명과 數字는 Air Progress, 1 May 1968 에 依함.
- 18) : 이와같은 政策을 越盤과 急進的인 Afro-Asia 團體에 對해서도 적용했다.
- 19) : Military Balance 1966-67 (「런던」의 戰略問題研究所 1966 年 발행) 에 따르면 1966 年 3 月에 14 台의 「미그」 21 機

가, 蘇聯으로부터 提供되었다.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66-67에 의하면 中共의 「미구」 21 機生産은 1966 年부터 비롯되었다. 또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68-69에 의하면 1968 年에 衛州의 瀋陽에 「미구」 21 機工場이 설립된 것으로 되어있다.

20) : Peking Review, (1970. 4. 17 발행) 참조.

21) : David Horowitz 著 From Yalta to Vietnam (1967 年 발행) P 117

22)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Republic of Korea, 1593

23) Harold A. Hovey 著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P 27

#### 才 4 節 社会主义開發途上国 (北韓. 越盟을 中心으로)

社会主义開發途上国家에 對한 蘇聯의 武器供給政策을 決定 推進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要素들이 作用하고 있다.

첫째 : 무엇보다도 重點한 要素의 하나는 소비엘 政權의 利害關係에 있다. 즉 對內的인 反政府 要因을 除去하고 同時에 外部的인 威脅을 除去, 對抗하기 위하여 軍事刀面에서 地位를 強化하는데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全般的인 面에서 말한다면, 社会主义陳營의 利害關係를 防戩하는데 蘇聯은 關心을 두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要素는 新生 社会主义開發途上國에 對한 蘇聯의 武器 및 裝備 등의 軍需物資提供政策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現在에도 하고 있다고 思料된다. 둘째 : 또 하나의 重要한 要素가 있다.

中共과 蘇聯간의 關係로서, 일단 中, 蘇理念紛爭이 露骨化되기 始作하자, 여러分野와 경우에 있어서 兩國間의 競爭은 치열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蘇聯은 武器供給問題에도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點이다.

세째 : 蘇聯과 社会主义開發途上國家들間的 關係 自体가 影響要素로 登場해 왔다.

어떤 경우에는 開發途上に 있는 社会主义國家들은 大部分 보다 . 独自の인 政策路綫을 追加하려고 試圖함으로서 蘇聯의 비위를 거슬렀고, 또한 小國인 開發途上國家들은 蘇聯이 對面方和解政策을 追求함으로서 自身들의 國家利益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非難을 加함으로서 蘇聯의 対応措置를 強要해 왔다.

이에 따라, 蘇聯은 壓力手段의 一環으로서 또한 不滿表示의 手段으로서 武器와 裝備의 支援을 削減하거나 때로는 중단 措置해 왔다.

마지막 네째는, 蘇聯과 西方國家 特히 對美關係가 蘇聯의 政策에 重要要素로서 作用하여 왔다.

一般論的으로 말하자면, 蘇聯은 大體로 美國과 直接的으로 대처하게 될 경우에는 社会主义開發途上國에 對한 武器供給을 回避해 왔다.

(勿論, 쿠바에 蘇聯의 미사일을 配置함으로써 危機를 造成시킨 경우는 例外로 취급된다)

이와 같이, 蘇聯의 對美關係는 蘇聯의 對 社會主義開發途上國 武器供給에 制限을 加하는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評價되는 것이다.

冷戰時代의 絶頂期라고 볼 수 있는 1945-1955年의 期間中에 있어서는 唯獨 北韓만이 蘇聯으로부터 武器供給을 받았던 社會主義 開發途上集團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1949年 1月에 蘇聯軍이 北韓地域을 撤収한 即後부터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軍兵器 및 裝備를 받기 始作하였다. 蘇聯의 對北韓 武器援助는 6.25 動亂期間中에는 急增하여 계속 北韓의 軍事分野의 武器와 裝備가 補強되었고, 1953年 休戰이 되던 해에는 그 絶頂에 達하였다.

1953年에 蘇聯이 北韓에 提供한 主要武器와 軍需品の 總規模는 1億 2千萬弗에 相當하는 大規模의 額數에 達하였다.

「스톡홀름」 國際平和研究所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發表한 「才3世界에 對한 軍備交易」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이 論評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最初에 蘇聯은 北韓이 武力手段을 繼하여 韓半島를 統一하려는 企圖을 支援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慎重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蘇聯의 變位層들은 社會主義黨内部의 結果問題에

신경을 集中하는 執着狀態에 있었고, 西方側을 軍事的으로 抑制하려는 데에 関心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北韓軍의 侵攻이 저지되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蘇聯은 北韓을 軍事援助한다는 決意를 確固히 表明하게 되었고, 主要한 軍裝備을 北韓에 提供함으로써 本格的인 軍事援助를 시작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評해서, 蘇聯은 社會主義共產政權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暗示하는 措置였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6.25 當時, 確實히 蘇聯의 支援를 本質的으로 받았으며, 北韓의 敗北는 곧 社會主義陣營 全體의 敗北라는 冷戰思想과 Bloo 概念의 関心 때문에 蘇聯의 國家利益의 損傷이라는 連鎖反應的인 論理의 結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蘇聯은 新生共產集團인 北韓을 全面 支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點에 関한 限, 蘇聯은 비단 北韓뿐만 아니라, 어느 共產國家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勝敗를 全社會主義 陣營의 勝敗와 연결시켜 事態를 評価했을 것으로 断定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이러한 狀況評価의 基準을 設定한 蘇聯으로서는 北韓이 逆轉의 敗北狀態로 轉落되고 붕괴되는 狀況으로 가기 前에 休戰을 수락하도록 모든 影響力과 壓力을 加했을 可能性은 濃厚한 것이다. 結局, 韓國動亂은 1953年 7月에 休戰으로 幕을 내렸다.

蘇聯은 戰爭이 韓國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擴大된다면 中共 地域과 어나가서는 蘇聯의 領土까지 번질지도 모른다는 憂慮要素도 事前에 考慮했을런지도 모른다.

「맥아더」장군의 主張과 戰勢의 氣運으로 봐서 「유엔」軍과 美軍이 決定하기만 한다면 蘇聯은 이 가공 할만한 危險사태를 現實로 받아야 한다는 狀況을 예견했다고 본다.

따라서, 蘇聯은 休戰會談에 北韓側이 참석하여 休戰決議를 받아들이도록 北韓當局에게 影響을 크게 發揮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以上과 같은 論理는, 비단 北韓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蘇聯의 對越盟軍事援助政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即: 蘇聯은 1954年 「제네바」 會談時 積極적인 役割을 했고, 當事國들이 合意에 도달하도록 온갖 支援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蘇聯은 結局 어느 한 開發途上에 있는 共產主義集團의 存続 自体를 위한 軍事支援 보다는 冷戰속에서 社會主義陣營을 全體的으로 이끌어 나가는 宗主國의 次元에서 陣營對 陣營의 對決意識爲主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蘇聯의 國家利益) 支援했다는 論理가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蘇聯의 立場은 韓國休戰과 「제네바」會談後 蘇聯은, 勿論 北韓과 越盟에 對한 支援을 계속했으나, 軍事支援에 있어서는 (多小間) 制限하는 傾向을 보였다.

戰爭의 休戰과 協商의 塔結이라는 點에서도 軍事援助는 輕減내지 制限되어야 할 狀況이었다. 軍事援助

軍事武器와 裝備의 支援現況을 보면, 1950年~1954年 期間에 1億9千萬弗이었던 것이 다음 5年間的 期間中에는 6,000萬弗線

으로 激減現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政策路線(軍事支援抑制)은 1956年 2月에 開催된 蘇聯共  
産黨 第 20 次 黨大會에서 主唱된 所謂, 「平和共存」 原則과 步  
調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平和共存原則의 核心은 超強大國間의 軍事的 對決을 回避하기 위  
하여 考案된 새로운 政策路線이라고 要約, 說明될 수 있다.

結局, 越盟에 對한 蘇聯의 軍事援助는 그 第 1 次的 目的이  
「베트남」政權의 國內政治的 均位를 強化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評  
價된다.

또한 北韓에 對한 蘇聯의 軍事支援은 共產主義政權의 붕괴를 막고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勢力均衡을 유지시키려는 저의를 內包하고  
있었다고 評價된다.

따라서 蘇聯은 이 期間中 北韓과 越盟에 對해서 赤化統一을 勸策  
하기 위한 方法으로 武力을 批發하는 (극단적으로) 企圖에 對해  
서는 影響力을 行使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과 越盟이 蘇聯의 影響力 行使와 要求에 對  
해서 無條件的으로 順應했다거나 服從했다고는 볼 수 없다.

勿論, 北韓과 越盟은 蘇聯의 政策路線과 主張에 多少間 適応했  
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구심을 가졌고 不信感을 보이기도한 것이  
다. 越盟과 北韓의 強硬論者들은 그들이, 決定的이거나 미온적이  
거나, 勝利를 爭取할 수 있다고 判斷하는 時機에도 不拘하고 蘇  
聯의 抑制措置와 壓力 때문에 승리의 好機를 捕捉하지 못했다고

看做했던 것이다.

同時에 勝利의 好機를 상실한 것은 勿論이러니와, 이에 附加하여 막대한 損失을 招來하게 되었다고 評價하고 있었다.

이러한 立場은 北韓에서 보다는 越盟當局에서 特히 強調되었다.

越盟의 變位層들은 越南을 흡수하여 決定的으로 統一政府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성숙과 好機를 잡은 시간에 蘇聯이 制禦한 것이었다는 通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한편, 北韓의 境遇를 보자.

北韓은 韓國動亂을 進發하여 失敗로 끝나고,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의 指示와 壓力에 依해 休戰에 임하게 된 이후, 1950年代末에 가서는 過去 보다는 한층 独自の 政略路線을 追求하려는 試圖를 보이기 시작했다.

1957年 - 1958年의 2年 사이에 北韓과 越盟의 對蘇關係는 느슨하게 풀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傾向은 中.蘇間에 理念紛爭이 漸次 加熱케 됨에 따라 보다 두렵하게 나타났으며 1960年 부터는 持徵적인 揚相을 보이기 시작했다. 特히 中共과 蘇聯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對한 正統性과 平和共存 原則採択 修正主義의 不正避性에 對한 理念論爭과 더불어 아세아, 아프리카, 地域에서 탄생하고 있는 新生國들에 對한 관심과 主導的 影響力 確保를 위한 競争을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北韓과 越盟은 더욱 獨自路線의 傾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越盟에 對한 中.蘇의 立場을 보면 1960年 12月, 越南人民解對前

線 ( The National Front for the Libevation of South Viet-Nom: NLF ) 이 創設되고 越盟政權이 이를 支援할 것을 決議했을 때에 中共은 적극적으로 越盟政權을 支持하고 나섰다.

同時에 北韓의 경우에도, 蘇聯의 對北韓軍事援助와 經濟援助도 中共의 主導적인 軍事 經濟援助로 代置되었다. 1958年부터 中共이 北韓에 重點적으로 支援한 軍事援助의 內訳을 보면 주로 航空機 中心이었다. 이는 6.25 動亂期間中 北韓軍이 苦戰했고 敗北한 制空權의 劣勢를 痛感한 데서 行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2年 - 1965年의 期間中에는 蘇聯의 對北韓援助는 完全히 중단 되었다.

이 期間中, 越盟. 舟是 中. 蘇紛爭過程에서 中共側에 接近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越盟政權當局者들은 蘇聯指導層을 "修正主義"의 옹호자들이라고 非難하는 中共例에 加担했다.

(註) 1963年 5月 16日

[ 中共 越盟의 共同聲明發表 ] 에는 " .....現時点에서 나타나고 있는 修正主義路線, 換言하면 極右機會主義者들의 存在는 國際共產主義革命運動에 主된 危險이 되고 있다. 修正主義集團들은 不斷히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革命精神을 말살하려고 劃策하고 있다 " 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蘇聯의 修正主義路線에 對한 中共의 非難에 편승한 北韓과 越盟의 獨立路線 傾向과 軍事援助 및 經濟援助의 중단 내지 激減現狀은 1960年代 中盤에 접어들어 「 흐루시체프 」 蘇聯首相이

失脚한 후 變化되었다.

「브레즈네프」書記官이 權力을 장악함으로써 三頭指導體制를 이 끌어 나가게된 蘇聯政府는 「호루시체프」時代に 影響力을 크게 發揮할 수 없었던 北韓과 越盟에 對해서 다시 以前狀態에서와 마찬가지로 蘇聯의 장악하에 그들의 影響力 擴大와 地位를 強化하기 위하여 諸般 對策을 講究하기 시작하였고, 同時に 中共에 對해서도 理念뿐만 아니라 實質的인 外交, 軍事, 交易分野等 많은 部門에 있어서 積極的인 攻勢의 立場을 取하기 시작했다.

蘇聯의 外交活動의 強化로 越盟과 北韓에 對한 地位는 많이 上昇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獨斷的이고 一方的인 影響力 行使를 決코 蘇聯은 許容할 方針이 아님이 分明하다는 事實을 多角的으로 表明한 時期이다.

그러나 어떤 點에서는 蘇聯의 外交活動의 成功傾向은 순수한 蘇聯의 能力에서 연유했다고는 보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성공의 背後에는 蘇聯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要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越盟自身이 危險狀態에 直面하는 새로운 狀況이 造成되었기 때문이다. 즉, 美國이 越南戰에 介入하여, 漸次 戰鬪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越盟은 武器와 軍事裝備獲得을 위하여 蘇聯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둘째는, 中共内部의 事情때문이다. 즉, 文化革命의 소용돌이 속에서 国内的으로 야기된 혼란상태 속에서 中共政權은 国内政治

安定과 對外關係에 앞서 政權의 維持基盤再確立이라는 大令題에 온  
신경이 集中되고 있었기 때문에 對外政策活動에 刀點을 할 수 없  
었다. 北韓과 越盟에 對한 中共이 外交活動도 弱화되었음은 勿論  
이다.

韓國軍의 体系的인 成長과 國內政府의 安定에 比較하여 北韓側은  
事實上, 心理的, 實際安穩面에 不安感을 갖게 되었고, 自然히  
蘇聯側에 다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事態가 進行되는 동안, 越盟은 最初로 變化된 狀況을 하나의  
現實로 받아들여기로 作定했다. 그당시의 狀況下에서는 蘇聯만이 越  
盟에게 必須的인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保障할 수 있는 唯一  
의 共產強大國임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情勢判斷에 立脚하여 越盟은 蘇聯의 政策路線에 가차히  
하게 되었고, 그結果 1965年初와 特히 1966年 - 1967年의 해에  
는 蘇聯의 軍事援助가 急增하게 되었다. 이 때에 最初로 蘇聯의  
高性能防禦武器들이 越盟에 提供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정밀무  
기의 例를 든다면, 地对空「미사일」等이다.

또한 1965年 - 1967年의 期間中 蘇聯이 越盟에 提供한 軍事援  
助額은 약 7億 5,000萬弗線에 達하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援助가 越盟에 提供하게된 主要 動機中의 하  
나는 中.蘇紛爭에 對해서 越盟이 蘇例의 立場을 同調했기 때문이다.  
事實上, 中.蘇紛爭의 歷史를 볼 때, 이 期間은 中共이 열세에  
달린 뚜렷한 時期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同時에 越盟은 蘇聯의

政策立場, 즉, 越南문제等 모든 國際問題의 協商은 中共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美國과 蘇聯과의 協商에서 타결된다고 보는 蘇側의 政策立場에 同意, 順應함으로써 이와 같은 막대한 軍事援助를 獲得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中共은 이에 對해서 軍事武器와 장비輸送의 通路를 占하고 있기 때문에 越盟으로 向하는 蘇軍事物資輸送에 지연작전을 범으로써 妨害한 事例가 있는 것으로 報道되었던 바 있다.

1968年 美軍의 北爆이 중단된 후에는 蘇聯은 地對空 「미사일」의 供給을 輕減시켰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蘇聯의 基本軍事政策路線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美國과 軍事的으로 심각한 對決狀態에 놓이는 경우를 最大限 피하며, 同時에 越盟에 要求되는 必順軍事援助에 重點을 두었다는 點이다.

北韓의 경우를 보자.

蘇聯은 1965에 가서 北韓에 對한 軍事援助를 再開하였다. 이것 역시 中·蘇紛爭과 묘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즉, 蘇聯의 對北韓軍事援助의 急回復은 北韓의 對中共 編向外交路線의 弱화를 意味한다.

그러나, 越盟과는 달리 北韓을 獨特하게 中共과의 關係가 느슨하게 풀어졌다고 해서 外交政策路線을 蘇聯側으로 急선회하여 對蘇編向의 길을 걸었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 北韓은 中·蘇紛爭의 와중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最大限 피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獨自路線을 모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쿠바에 對한 蘇聯의 軍事援助 現況은 省略하기로 한다. )

## 2. 중공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中共을 中心으로 軍事武器 및 裝備支援 ( 對 北韓中心 ) 事項을 簡略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0年 以來 中共은 新生社會主義國家들에 對해서 武器 및 軍需 支援을 繼續해 왔다. 그 中에서도 隣接 北韓과 越盟에 對해서 重點的인 軍事援助를 提供한 것으로 思料된다.

中共이 이들 兩側 ( 越盟과 北韓 ) 에 對해서 軍事援助를 積極的으로 提供함으로써 나타나는 結果는 무엇인가?

兩國의 立場에서는 蘇聯일변도에 의한 軍事援助政策을 탈피하게 됨으로서 獨自路線 追求에 有利할 狀況을 얻는 方向으로 中共의 支援이 作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越盟의 경우 1960年代 초반은 中共에 크게 依存했고 1965年 2月 越南戰의 段階的 擴大狀況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蘇聯에 크게 依存한것이 事實이지만, 全期間을 통털어서 본다면, 越盟은 中共과 蘇聯의 兩側으로 부터 軍事援助를 獲得하였고, 兩國에 共히 依存했다고 볼 수있다.

한편, 北韓의 경우 1961年 까지 中共과 蘇聯의 兩國에 共히 依存하는 二重軍事援助獲得時期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62년부터 1965年 까지의 3年間은 全然 中共側에 依存하는 對中共一辺도 軍事援助獲得時期였고, 1965年 부터 1969年 까지의 4年間은 全然 蘇聯側에 依存하는 對蘇一辺도 軍事援助獲得時期로 区分되는 特

徵을 보이고 있다.

中共의 立場에서는 越盟과 北韓의 存在를 果然 어떻게 評價하는가? 勿論, 越盟과 北韓은 中共의 前方防禦地域으로서 共히 政治 軍事的 側面에서 重要性을 띠고 있으나, 中共은 越盟과 北韓에 對해서 相異한 軍事戰略을 適用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그중거로서는 中共은 開發途上에 있는 全世界 어느 地域의 社會主義國家들 보다도 北韓政權에 對해서 最大規模의 軍事援助를 提供해 왔다는 點에서도 窺見된다. 中共이 開發途上의 社會主義國家들에 提供한 主要武器輸出總額의 약 3/4이 北韓側에 提供된 것으로 推算된다.

그러나, 이와는 對造的으로 對越盟軍軍事援助에 있어서는 1954年 以來 比較的 制限된 量만 提供해 왔다. 中共은 越南戰 問題에서 美國과 直接的으로 對決하는 모험을 避하려는 意圖에서 限定的인 援助를 하지 않았는가 볼 수 있으며; 本來의 財政難, 物資 보다는 口號와 宜伝게 의한 支援攻勞로서 代身한다는 方針等과 結付하여, 軍事援助의 大小를 策定하지 않았는가 思料된다.

보다 具體的으로 中共과 北韓, 中共과 越盟과의 關係를 分付해 볼 必要가 있다.

### 3. 北 韓

北韓은 韓國戰爭을 排逐하기 前까지는 軍事援助던 經濟, 技術 援助던 全的으로 蘇聯에 依存했다. 그 當時 中共은 小規模던 大規模던 北韓이나 其他 越盟과 新生會主義國家들에게 軍事援助를 提供할

能力과 餘裕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와는 反對로 韓國 亂의 발발을 契機로 中共이 參戰하게 됨으로서 蘇聯은 中共에게 까지 大規模의 軍事援助를 開始하게 되었다. 즉, 韓國 亂은 中共에 對한 蘇聯의 大規模 軍援을 하게 되는 序曲이었다.

한편, 韓國 亂 期間中 中共이 北韓에 軍事援助를 最初로 한 것은 裝備나 武器의 支援이 아니었다. 그것은 人海戰術을 主作戰武器로 삼았던 中共軍戰略의 基本要素인 人自力을 가지고 支援한 것이었다. 所謂, 「人民義勇軍」이라고 불리워졌던 약 30萬名의 中共軍을 投入했던 것이다. 그들의 裝備는 決코 一律的인 個人裝備를 갖춘 것이 아니었다. 中國內亂때 使用되었던 日本軍武器와 美國製 裝備等 混合된 個人裝備가 高작이었고 其外 迫發총이나 피리가 主武器였다. 中共은 一次的으로 人的 支援을 하면서 滿州地域에 空軍基地를 提供하였다. 이 航空基地는 勿論 蘇聯의 技術과 援助에 의해서 建設되었고, 中共軍과 北韓人民軍을 위하여 使用되었다. 이 基地는 韓國 亂 期間中에 建設되었다.

또한 1957年까지는 中共이 北韓에 主要 武器를 提供할 能力이 없었다. 1957年 부터 中共은 北韓에게 鎗備艇과 蘇製輸送船을 提供하기 시작하였다. 1958年에 가서는 中共에서 製造한 MIG-15 戰鬥機와 MIG-17 戰鬥機가 北韓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1年에는 「朝·中相互防衛條約」이 締結되기에 이르렀다.

蘇聯은 1962年에 北韓에 對해서 支援해 오던 軍事및 經濟援助를

중단했다. 여기에는 제트기의 燃料 및 航空器附屬의 支援중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中共軍(空軍)이 北韓空軍에 그들의 補給品과 裝備附屬品을 割當하여 주었다.

北韓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62年-1965年까지의 期間中에는 全的으로 中共의 軍事援助에 依存했다.

그러나, 中共의 「文化革命과 「호루시체프」의 失脚은 蘇聯의 對北韓援助에 變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 點에 關해서도 이에 言及한 바 있다.

中共은 文化革命의 騒音이 가라앉기 시작하게 되자, 1969年 부터는 北韓과 正常的인 關係維持를 回復할 수 있게 되었다.

1970年7月, 北韓의 高位軍使節團이 北京을 訪問하였고 中共의 新華社通信 등을 비롯한 通信 및 言論은 北韓의 所謂, 「平和的 統一」政策을 公公然히 支援하기 시작했다.

(註: Peking Review, 16-17 April 1970. PP 13-15)

#### 4. 越 盟

1950年 1月 中共軍兵力은 「통건」境界線으로 移動하였고 中共은 最初로 越盟을 承認하였다. 1950年 1月 18日 以前에 는 中國大陸의 事情으로 固하여 孤立되어 있는 越盟과 別다른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軍事援助는 즉각적으로 擴大되어 나갔다.

越南에 駐屯하고 있던 仏蘭西 軍司令部는 中共과 越盟 接境地帶에 設置된 中共軍 「게릴라」 訓練部隊에서 약 2萬餘名の 越盟軍

「게릴라」를 接受 訓練을 實施하고 있다고 報道한 것으로 알려  
졌다.

(註) : Keesing's Contemporary Archives, 13 August 1950

이것은 端的으로 中共이 越盟과 密着되기 始作했음을 뜻한다.

中共은 越盟 「게릴라」 部隊에 對한 訓練担当뿐만 아니라, 技  
術援助와 小火器 및 彈藥等 主要 小部隊單位 戰鬪用 裝備을 提供  
하기 始作하였다. 越盟에 對한 軍事援助는 1950年 6月 25日 韓國  
動亂이 勃發하자, 減小되었고 代身 北韓으로 援助가 強化되었다.  
그러나, 韓國戰이 休戰되던 1953年에 접어들어 中共은 다시 越  
盟에 對한 軍事援助를 擴大하기 시작했다. 制限된 數의 中共의  
軍事顧問들이 越盟에 파견되어 活動하기 시작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註) : Keesing's Contemporary Archives, 10 April 1954

事實上 中共이 이와같은 對越盟 軍事支援은 매우 큰 役割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1954年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디엔, 비엔. 푸」 戰鬪에  
서 越盟이 勝利를 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要因이 있으나, 中共  
의 軍事戰略과 政策이 主효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릴라」戰의 形態가 中共軍의 經驗과 胡志明의 土着的 經驗等  
에 연결을 이루어 作戰에 成功할 수 있었고 「게릴라」戰에 필수  
적인 小火器類를 中共이 크게 支援함으로써 基本的인 戰鬪裝備을  
補強할 수 있었던 것이다.

(勿論, 核心은 越南内部秩序의 교란 및 社会的 無秩序가 더 큰 要因이 되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現在에도 越盟은 事實上 中共에 보다 依存的인 狀態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但, 미사일等 最新 武器類는 계속 蘇聯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1954年의 狀況을 一瞥해 보면, 中共은 消極的인 立場에 있었다고 評價된다.

즉, 1954年 「제네바」 會談 當時, 中共의 立場은 可能的인 限 美國의 影響力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中立的인 인도차이나 地域化를 하는 것이 有益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길이 美國과 直接的으로 對決할 加能性을 적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中共은 印渡의 提案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그 當時 狀況으로는 越盟의 勝利가 눈앞에 닥아온 것처럼 有利한 立場에 있었으나, 中共은 「인도차이나」 地域의 平和案을 同調하였고, 또한 最終解決方案을 타결 하는데 있어서도 印渡案을 支持하고 나섰다.

(印渡는 「제네바」 會談에 招請되었거나 參席하지는 않았으나 중재역할을 담당했다)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 The secon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3. The thir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4. The four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5. The fif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6. The six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7. The sev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8. The eigh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9. The ni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0. The t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1. The elev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2. The twelf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3. The thir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4. The four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5. The fif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6. The six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7. The seven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8. The eigh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9. The nine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0. The twentie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1. The twenty-first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2. The twenty-secon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3. The twenty-thir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4. The twenty-four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5. The twenty-fif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6. The twenty-six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7. The twenty-sev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8. The twenty-eigh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9. The twenty-ni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30. The thirtie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附 錄

1. 美国防에 關聯된 援助現況 (a)



단위 : 100만 \$

내역	FY 1967	FY 1968	FY 1969
○ 第3世界에 대한 軍事援助計劃	727.5	672.8	558.3
○ 第3世界에 대한 對外軍事販賣計劃 (b)	220.5	262.5	404.0
○ 東南亞兵力에 대한 軍事援助 (c)	[480]	[870]	[990]
○ 第3世界에 대한 剩餘品目引渡	44.8	43.9	116.5
○ ( Supporting Assistance )	718.4	464.4	594.5
○ A I D 公共, 安全 計劃	7.8	6.7	7.1
○ 直接軍事 支援 및 公共安全用 P.L - 480 對元資金	145.5	154.9	[150]
第3世界總計 (e)	2340	2480	2820
○ 對外軍事販賣 ( 歐洲, 日本, 호주 및 뉴질랜드 ) (b)	686.9	747.0	897.8
○ 歐洲 및 日本에 대한 軍事援助 計劃	86.0	45.9	31.1
○ 歐洲 및 日本에 대한 剩餘品目引渡 (d)	1.9	1.4	0.8
世界總計	3120	3270	3750

-123-

<< 註 >>

(a) 묶음표속의 項目은 推算임。

(b) 여기에는 私企業이나 個別的으로 販賣한 軍事販賣額은 포함하지 않음

(c) 越南에 派兵된 타일랜드, 필립핀 및 韓國軍 維持에 支出된 美國負擔額을 포함한다。

이 計算은 FY 1971의 東南亞細亞 兵力에 대한 軍事援助額이 22億弗이었기 때문에 적은 額數가 算出된 것이다。

(d) 이 項目은 효용가치로서 價格을 定한 것이다. 즉 獲得原価의  $\frac{1}{3}$ 에 해당한다。

1001	1001	1001	1001	1001
1002	1002	1002	1002	1002
1003	1003	1003	1003	1003
1004	1004	1004	1004	1004
1005	1005	1005	1005	1005
1006	1006	1006	1006	1006
1007	1007	1007	1007	1007
1008	1008	1008	1008	1008
1009	1009	1009	1009	1009
1010	1010	1010	1010	1010
1011	1011	1011	1011	1011
1012	1012	1012	1012	1012
1013	1013	1013	1013	1013
1014	1014	1014	1014	1014
1015	1015	1015	1015	1015
1016	1016	1016	1016	1016
1017	1017	1017	1017	1017
1018	1018	1018	1018	1018
1019	1019	1019	1019	1019
1020	1020	1020	1020	1020

1001 1001 1001 1001 1001  
 1002 1002 1002 1002 1002  
 1003 1003 1003 1003 1003  
 1004 1004 1004 1004 1004  
 1005 1005 1005 1005 1005  
 1006 1006 1006 1006 1006  
 1007 1007 1007 1007 1007  
 1008 1008 1008 1008 1008  
 1009 1009 1009 1009 1009  
 1010 1010 1010 1010 1010  
 1011 1011 1011 1011 1011  
 1012 1012 1012 1012 1012  
 1013 1013 1013 1013 1013  
 1014 1014 1014 1014 1014  
 1015 1015 1015 1015 1015  
 1016 1016 1016 1016 1016  
 1017 1017 1017 1017 1017  
 1018 1018 1018 1018 1018  
 1019 1019 1019 1019 1019  
 1020 1020 1020 1020 1020

《 資料 出處 》

- Military Assistance and Military Sales Facts,  
March 1970.
- The Foreign Assistance program,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s 1967, 1968, and 1969,  
Washington, 1968, 1969, 1970.
-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Sub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91st Congress, parts 1, 2, 3 and 6.
- Foreign Assistance Act 1969, Hearing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July and August  
1969.

※ 가. 軍事援助計劃 < M A p = The Military Assistance  
program >。

M A p 資金은 「 對外援助法 」 < The Foreign Assistance Act >  
에 依拠하여 認可된다。 그러나 豫算은 國防省이 統割한다。  
또한 이 軍事援助計劃은 越南, 라오스 및 타일랜드를 除外한  
모든 國家들 相對로 軍事裝備의 認可를 망라하고 있다。

나. 軍事販賣計劃 < M S p = The Military Sales program >

美國政府에 의한 對外販賣는 「 軍事販賣法 」 ( The Military

Sales Act)에 依해서 認可된다. 同時에 이 「軍事販賣法」에 따라서 國防省이 借款을 提供하거나 保證할 수 있도록 資金을 認可하게 되어 있다.

그외에도 1970年度 「軍援調達認可法」(The Military procurement Authorigation Act)은 이스라엘에 대한 軍事裝備을 無制限으로 販賣할 것을 認可하고 있다.

#### 다. 東南亞細亞 兵力에 對한 軍事援助

定例國防豫算中에는 1967年以來 越南에 對한 軍事援助와 1968年 以來 타일랜드와 라오스에 對한 軍事援助가 包含되어 있다.

또한 東南亞地域國家兵力에 對한 軍事援助속에는 韓國과 필립핀의 越南戰 參戰에 따른 軍事的 代價物의 形式에 의한 援助와 兵力維持費 資金도 防衛 豫算으로 포함되어 있다.

#### 라. 剩餘裝備品目的 引渡

1971年 限에는 美軍이 必要로 하는 所要分을 超過한 武器와 裝備에 대해서는 議會의 承認이나 制限없이 外國에 提供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마. 海軍 합정 借款

이 借款은 特別法에 의거 認可된다.

#### 바. 追加 援助(Supporting Assistance)

追加 援助에 對해서는 지금까지 多様하게 定義되어 왔다.

一般的으로 追加援助는 經濟援助로 構成된다。

이 援助는 때로는 豫算支援이나 下部構造(施設支援)提供形態를 取하기도 한다。 追加援助의 目的은 弱小國家들로 하여금 大軍 事力を 維持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追加援助는 「對外援助法」(The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해서 認可되며 國務省의 後援下에 國際開發機構(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A I D)가 施行한다。

#### 사. 平和를 위한 食糧計劃(PL-480)

本 計劃에 依拠, 弱小國들은 自國화폐(Local Currency)로 美國의 잉여농산품을 購買하게 된다。

對象資金의 一定分은 軍事援助나 追加援助로 割當될 수 있다。

#### 아. 公共安全計劃(The public Safety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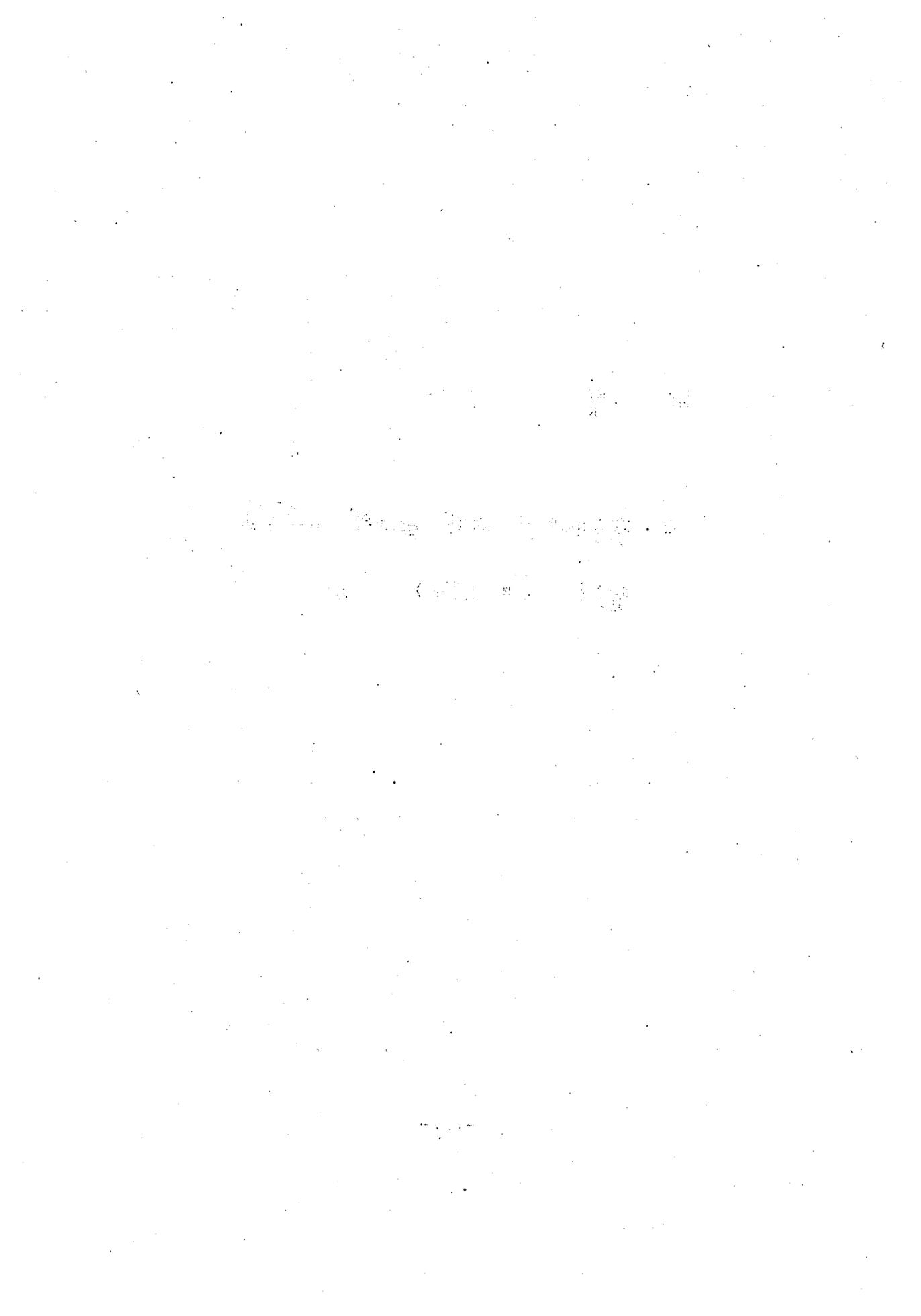
이 計劃은 警察力에 대한 援助로서 構成되며 A I D가 施行한다 第3世界, 특히 라틴.아메리카 國家에 있어서는 警察兵力은 大体로 治安維持를 위한 하나의 軍事的 機能을 가진다。(本 計劃에 대해서는 具體적으로 論述하지 않음。 研究範圍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



## 附 録

### 2. 才3世界에 对한 美国의 軍事援助

現况 (地域別) (a)



單位：100 萬弗 (美會計年度)

年 度	1949-1952	1953-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b)	1949-69
地 區															
中 東 (c)	160.7	2403.7	627.8	606.7	501.6	495.4	523.3	651.8	563.7	648.9	535.6	673.0	1026.9	1064.2	10483.3
Indian Sub-Continent (印度亞大陸)	-	160.4	92.9	102.7	79.1	56.7	29.7	108.4	64.2	64.0	7.6	6.0	5.6	1.6	778.9
中 東	16.6	163.6	151.4	113.5	95.2	60.6	44.1	91.3	44.8	77.9	108.3	164.9	116.9	83.4	1332.5
그리스·터키	559.4	1350.2	392.8	290.8	217.2	128.7	191.3	258.0	184.8	222.4	179.2	162.5	175.9	165.0	4478.2
북아프리카	-	-	1.1	1.6	2.7	5.1	5.0	12.2	11.6	5.8	5.1	13.8	10.8	6.9	81.7
시하라지역아프리카	-	14.6	8.8	5.3	7.3	6.4	18.6	14.0	16.7	11.8	16.8	18.0	22.7	14.4	175.4
라틴아메리카	0.2	151.8	47.9	54.0	53.7	111.4	132.8	82.3	75.7	67.3	82.0	76.5	99.2	37.9	1072.7
계 3 세계 총계	736.9	4244.3	1322.7	1174.6	956.8	864.3	944.8	1218.0	961.5	1098.1	934.6	1114.7	1458.0	1373.4	18402.7



<< 註 >>

- (a) 包含된 것 (軍事援助計劃, 그리스와 터키援助, 自由中国海軍援助, PL-454 필리핀援助, 함정借款, 越南援助(1967-69) 및 타일랜드와 라오스 援助(1968 ~ 1969) → 國防省豫算
- (b) 借款援助는 除外
- (c) 인도차이나에 대한 未支給援助額은 除外

<< 資料 出處 >>

-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1945-1966, and 1945-1968,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1967 and 1969
- Military Assistance and Foreign Military Sales Facts, May 1967 and March 1970.
- Military Assistance Facts, March 1968 and May 1969.



< 附 錄 >

3. 才3世界에<sup>(a)</sup> 对한 美国의 軍事援助 現況

( 美国이 定한 範疇別 ) (b)

www.ck12.org

Page 16

(Copyright © 2011 CK12)

單位：100 萬弗（美會計年度）

년도	1949-1952	1953-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sup>(c)</sup>	1949-59	1960-69
라 오 스	-	31.7	5.4	7.5	13.4	33.4	37.1	[47.9]	[30.7]	[44.4]	[54.6]	[82.4]	[90]	[100]	44.6	533.9
타 일 렌 드	16.5	205.1	19.7	18.0	24.7	23.9	39.1	68.5	52.7	36.4	40.8	44.9	76.5	73.5	259.3	481.0
월 남	-	277.8	53.2	41.9	70.9	65.0	144.0	198.1	186.9	274.7	170.0	[300]	[500]	[600]	372.9	2509.6
인도차이나전방	16.5	514.6	78.3	67.4	109.0	122.3	220.2	314.5	270.3	355.5	265.4	427.3	666.5	773.5	676.8	3524.5
방어지역 (총계)(d)																
필 립 핀	78.7	119.2	21.1	20.5	19.5	23.6	21.5	24.5	10.7	18.2	26.0	21.0	29.1	18.8	239.5	212.9
대 한 민 국	11.7	527.8	331.1	190.5	190.2	192.2	136.9	182.5	124.3	173.1	153.1	149.8	197.4	210.0	1061.1	1709.5
자 유 중 국	48.0	1178.9	162.1	239.5	139.9	94.5	84.4	85.2	128.1	184.8	76.5	71.3	117.2	55.3	1628.5	937.2
이 란	16.6	133.9	73.0	90.9	89.1	49.2	33.3	70.1	27.3	49.9	93.5	75.3	85.8	50.9	314.4	624.4
파 키 스 탄	-	[140.4]	[92.9]	[102.7]	[79.1]	[56.7]	[21.2]	[99.8]	[55.8]	[56.0]	[1.4]	-	2.3	0.1	356.0	372.4
그 리 스	323.5	433.7	143.4	89.2	116.7	42.8	34.9	85.8	83.2	104.0	78.7	44.0	45.0	56.2	989.8	691.3
터 키	235.9	916.5	249.4	201.6	100.5	85.9	156.4	172.2	101.6	118.4	100.5	118.5	130.9	108.8	1603.4	1193.7
전방 방어 지역 (총계)	730.9	3985.0	1151.3	1002.3	844.0	667.2	708.8	1034.6	801.3	959.9	795.1	907.2	1274.2	1273.6	6869.5	9265.9
자유세계 F 오 리 엔 테 손 J 지역 (총계)(e)	3.9	80.8	94.5	42.3	21.4	34.6	65.2	74.1	64.7	56.3	43.8	128.5	81.5	59.3	221.5	629.4
라틴 아메리카(총계)	0.2	151.8	47.9	54.0	53.7	111.4	132.8	72.3	75.7	67.3	82.0	76.5	99.2	37.9	253.9	818.8
제 3 세계 (총계)(f)	736.9	4244.3	1322.7	1174.6	956.8	864.3	944.8	1218.0	961.5	1098.1	934.6	1114.7	1458.0	1373.4	7478.5	10924.2

COMPANY REPORT

Item	Q1	Q2	Q3	Q4	YTD	Target	Variance	Notes
Revenue	1000	1100	1200	1300	4600	4500	100	Exceeded target by 100
Expenses	800	850	900	950	3500	3600	-100	Under budget by 100
Profit	200	250	300	350	1100	900	200	Significant profit increase
Market Share	15%	16%	17%	18%	17.5%	17%	0.5%	Growing market share
Customer Satisfaction	4.5	4.6	4.7	4.8	4.65	4.5	0.15	Improving customer feedback
Employee Retention	95%	96%	97%	98%	96.5%	95%	1.5%	High employee loyalty
Operational Efficiency	80%	82%	84%	86%	83%	80%	3%	Streamlined processes
Product Development	2	3	4	5	14	12	2	Accelerated R&D
Marketing Spend	100	110	120	130	460	450	10	Optimized ad spend
Logistics Costs	50	55	60	65	230	240	-10	Reduced shipping costs
IT Infrastructure	30	32	34	36	132	130	2	Invested in new software
Legal & Compliance	20	21	22	23	86	85	1	Proactive legal review
Research & Development	150	160	170	180	660	650	10	Key investment area
Administrative	100	105	110	115	430	420	10	Efficient office manage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Strong financial control
Human Resources	40	42	44	46	172	170	2	Invested in training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Improved service quality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Increased output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Expanded reach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Targeted campaign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pipeline growth
Legal	20	21	22	23	86	85	1	Compliance updates
IT	30	32	34	36	132	130	2	Cloud migration progress
HR	40	42	44	46	172	170	2	Talent acquisition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Investment strategy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Feedback loop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Quality control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Supply chain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Brand awarenes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Innovation focus
Legal	20	21	22	23	86	85	1	Contract reviews
IT	30	32	34	36	132	130	2	System upgrades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engage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reporting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Service excellenc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Manufacturing efficienc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optimization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Lead generation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atent applications
Legal	20	21	22	23	86	85	1	Intellectual property
IT	30	32	34	36	132	130	2	Security protocols
HR	40	42	44	46	172	170	2	Performance reviews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Budget management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Resolution tim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volume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Inventory levels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Conversion rate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totype testing
Legal	20	21	22	23	86	85	1	Regulatory changes
IT	30	32	34	36	132	130	2	Hardware refresh
HR	40	42	44	46	172	170	2	Recruitment drive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Capital expenditure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Net Promoter Scor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qualit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Delivery reliability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Website analytic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Market research
Legal	20	21	22	23	86	85	1	Dispute resolution
IT	30	32	34	36	132	130	2	Data backup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benefits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Debt management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hurn rat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safet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Warehouse expansion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Social media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artnerships
Legal	20	21	22	23	86	85	1	Contract renewals
IT	30	32	34	36	132	130	2	Network security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training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Investment returns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loyalty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capacit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costs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Brand positioning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lifecycle
Legal	20	21	22	23	86	85	1	Litigation risk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upport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morale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health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retention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Supply chain resilience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ROI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innovation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unsel
IT	30	32	34	36	132	130	2	IT infrastructure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develop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strategy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experienc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quality control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network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automation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development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mpliance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ecurity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engage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reporting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feedback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volume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costs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spend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pipeline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risk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upport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training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health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retention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qualit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efficiency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effectivenes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innovation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mpliance
IT	30	32	34	36	132	130	2	IT infrastructure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develop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strategy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experienc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network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automation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development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mpliance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ecurity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engage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reporting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feedback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volume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costs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spend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pipeline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risk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upport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training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health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retention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qualit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efficiency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effectiveness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innovation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mpliance
IT	30	32	34	36	132	130	2	IT infrastructure
HR	40	42	44	46	172	170	2	Employee development
Finance	50	52	54	56	212	210	2	Financial strategy
Customer Support	30	31	32	33	126	125	1	Customer experience
Production	200	210	220	230	860	850	10	Production efficiency
Distribution	150	155	160	165	630	620	10	Logistics network
Marketing	100	105	110	115	430	420	10	Marketing automation
R&D	150	160	170	180	660	650	10	Product development
Legal	20	21	22	23	86	85	1	Legal compliance
IT	30	32	34	36	132	130	2	IT security

《 註 》

- (a) 上同 ( 附錄 (2)의 (a) )
- (b) 괄호 [ > ] 안의 項目은 推算임
- (c) 借款援助는 除外
- (d) 인도차이나에 대한 未支給分 援助額은 除外
- (e) 美軍이 基地權을 所有하고 있는 國家는 除外
- (f) 未支給된 地域別 援助額은 除外

《 資料 出處 》

-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1945-66, and 1945-68,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h ington 1967 and 1969
- Military Assistance and Foreign Military Sales Facts, May 1967 and March 1969,
- Military Assistance Facts, March 1968 and May 1969.
-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Sub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Op. Cit., parts 2 & 3.

(1) (2) (3) (4)

...

...

...

...

...

...

...

...

...

...

...

...

...

...

...

附 錄

4 . 南北韓의 軍事防衛條約

發 售

光緒二十九年 庚子年 正月 廿五日

一〇一

## 가. 韓美相互防衛條約

### [ 註 ]

1953年 10月 1日 韓國과 美國의 兩側代表에 衣해 正式으로 調印되고 1954年 11月 17日 「워싱턴」에서 批准狀을 交換함으로써 發効를 보게 되었다.

### [ 前 文 ]

本條約의 締結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政府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자 하는 希望을 再確하며, 모든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一國이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 부터의 武力攻擧에 對하여 그들자신을 防護하고자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는 正式으로 宜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効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 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자 提團的 防衛를 위한 努力을 堅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合意한다.

### < 第 1 條 >

當事國은 關係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

나 当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武力의 行使를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 才 2 條 >

當事國中 어느 一國이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 부터의 武力攻擊에 의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을 防止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強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實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意下에 取할 것이다.

< 才 3 條 >

各 當事國은 他當事國의 行政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今後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 갔다고 認定하는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処하기 위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宜言한다.

< 才 4 條 >

相互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을 陸軍, 海軍, 空軍을 大韓民國

의 領土內와 그 周邊에 配置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 第 5 條 >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交換되었을때 그 効力을 發生한다.

< 第 6 條 >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当事國이든지 他 当事國에 通告한 後, 1年後에 本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の 証據로서 下記 全權委員들이 本 條約에 署名하였다. 本 條約을 1953年 10月1日 「워싱턴」에서 韓國文과 英文의 2通으로 作成되었다.

大韓民國을 위하여

李 榮 泰

美合衆國을 위하여

존 . 포스터 . 델레스

< 美合衆國의 諒解事況 >

< 本 條約은 批准에 있어서 美合衆國은 條約의 批准을 同意 通告하는 美 上院의 1954年 1月26日字 決議文中에 포함된

다음 條件을 添付하며, 本 條約은 이 條件에 拘束當하는바, 美國 政府가 韓國 政府에 通告한 그 條件의 文件은 다음과 같다.

美國은 前示 條約 才3 條에 있어서 어느 當事國도 他, 當事國에 對한 外部로 부터의 武裝攻擊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他 當事國을 援助할 義務가 없으며, 또 大韓民國의 行政管轄下에 合法的으로 들어 갔다고 美合衆國이 認定한 領土에 對한 武裝攻擊의 境遇 以外에는 美合衆國이 大韓民國에 援助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고 解釋할 아무 條件도 없다고 理解한다>

나. 朝, 蘇友好協調 및 相互援助 條約

<註>

1961年 7月 11日에 締結되었고 蘇聯과 北韓間의 防衛同盟條約은 同年 9月 10日 「모스크바」에서 發効되었다.

[前 文]

蘇聯最高會議幹部會와 朝鮮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는 社會主義의 國際主義의 諸原則에 의한 蘇聯과 朝鮮間의 友好關係의 發展強化에 努力하여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 強化의 促進을 希願하면서 締結國 雙方의 어느 一方에 어떤 國家 또는 國家聯合의 武力攻擊이 있을 경우 相互 援助와 支持를 주는 決意에 充滿하고 蘇聯과 朝鮮間의 友好와 善義協

力關係의 強化는 兩國 人民의 切實한 利益에 合致하고 또 兩國의 經濟的, 文化的 發展을 一層 잘 促進할 것으로 確信하고 이 目的을 가지고 本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여 兩國 全權代表는 다음 事項에 同意한다.

< 才 1 條 > :

締結國 雙方은 今後에도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行動에 參加하여 그와 같은 高次元의 目的 實現에 貢獻할 것이라고 聲明한다.

締結國의 一方이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라도 武力攻 擊을 받고 戰爭狀態에 들어갔을 경우, 他方은 즉각 그 保有하는 모든 手段을 가지고 軍事的 或은 其他의 援助를 줄 것이다.

< 才 2 條 >

締結國 雙方의 各國은 締結한 他方에 對抗하는 如何한 同盟도 締結치 않고 如何한 聯合이나 또는 行動 或은 措置에도 加担하 지 않는 義務를 진다.

< 才 3 條 >

締結國 雙方은 平和와 全般의 安全을 促進하는 熱望에 이끌리 면서 兩國의 利益에 抵触되는 모든 重要한 國際問題에 있어서 相 互 協義하기로 한다.

<第 4 条>

締結國 雙方은 平等, 國家主權의 相互尊重, 領土保全, 相互內政에 對한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友好와 協力의 精神에 있어서 蘇聯과 朝鮮 兩國의 經濟的, 文化的 連携를 相互 發展 強化시키는 義務를 진다.

<第 5 条>

締結國 雙方을 朝鮮의 統一은 平和的, 民主的 土台위에서 行하여질 것이며 이러한 解決은 朝鮮人民의 民族의 利益에도 極東의 平和維持에도 適合한 것으로 생각한다.

<第 6 条>

本 條約은 平壤市에서 行하여지는 批准書 交換日로 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本 條約은 10 年間의 効力を 갖는다. 万若 締結國 雙方의 一方이 期限滿了 一年前에 條約 破棄의 希望을 表明치 않는 限, 本 條約은 계속 5 年間 効力を 가지고 本 規定에 따라 延長되는 것으로 한다.

本 條約은 1961 年 7 月 6 日 「모스크바」市에서 朝鮮語와 露西亞語로 各各 2 部씩 作成되었으며 이 두 原文은 同等한 効力を 가진다.

北韓 內閣首相 金 日 成

「소비에트」社会主义共和國聯邦最高 「소비에트」常任委員會의 委任에 의하여 內閣当担 「호루시초프」

a. 朝.中 友好協調 및 相互 援助 條約

<註> 本 條約은 朝.蘇 條約이 締結되던 해인 1961年 7月 11日에 調印되 있고 同年 9月 10日 北京에서 發効했다.

<才 1條>

締結國 雙方은 아시아 및 世界平和와 各國 人民의 安全을 守護하기 위하여 繼續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다.

<第 2條>

締約國 雙方은 締約國 雙方中 어느 一方에 對한 어떤 國家로 부터의 侵略이라도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措施를 共同的으로 取할 義務를 지닌다. 締約國이 어떠한 一個國 또는 數個國의 聯合으로 부터의 武力侵略을 當함으로서 戰爭狀態에 對하게 되는 경우에 締約國相對方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

<才 3條>

締約國 雙方은 締約國 雙方이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締約國 相對方이 反對하는 어떠한 集團과 如何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다.

< 才 4 条 >

締約國 雙方은 兩國間의 共同利益과 關聯되는 一切 重要한 國際 問題에 對하여 계속 協議한다.

< 才 5 条 >

締約國 雙方은 主權에 對한 相互尊重 內政에 對한 相互不干涉 平等과 互惠의 原則 및 親善協定 原則에 立脚하여 兩國의 社會主義 建設 事業에도 相互 可能한 限 모든 經濟的 및 技術的 援助를 提供하여 兩國間의 經濟 文化 및 科學技術 協調을 계속 堅固化發展시킬 것이다.

< 才 6 条 >

締約國 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반드시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基礎 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朝鮮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國際紛爭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

< 才 7 条 >

本 條約은 批准을 받아야 하며, 批准事를 交換하는 날부터 効力을 發生하며, 批准書는 平壤市에서 交換한다.

本 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하는데 對한 雙方의 合意가 없는 以上 계속 効力을 가진다.

本 條約은 1961年 7月11日 北京에서 調印되었으며 朝鮮文과 中國文으로 各各 2通씩 作成된 이 두原文은 同等한 効力을 가진다.

<附 録>

5. 韓国軍 現代化 및 駐韓美軍 減縮에  
關한 韓·美間의 同共聲明 (1971年2月6日)

<del> <del>

1974-1975  
(1974-1975)

<內 容>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는 韓國軍現代化計劃과 駐韓美軍 減縮에 대한 諸般 措施에 關하여 滿足스러운 會談을 完了하였다.

美合衆國은 大韓民國政府가 그 國軍을 現代化하려는 努力에 對하여 兩國軍當局의 共同選議에 立脚한 長期的 軍事援助計劃을 통하여 大韓民國政府를 援助할 것에 同意하였다.

大韓民國政府는 美國議회가 前記 現代化計劃의 才1次年渡分을 위한 追加豫算으로서 1億5千萬 「달러」를 承認한 것을 滿足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駐韓美軍 2萬 兵力의 減縮과 이에 따른 韓國軍 및 美軍의 再 配置에 關한 兩國 政府의 協議 역시 相互 理解와 緊密한 協力の 精神에서 終結되었다.

駐韓美軍 兵力 水準의 減縮은 1954年에 發効된 大韓民國과 美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에 의거,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擧에 對 處한다는 國合衆國政府의 決意에 추호도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 다.

大韓民國에 對한 軍事的 威脅의 性格을 分, 許價하기 위하여 兩國 政府의 外交 및 國防關係 高位官 가 參席하는 「年例安保協 議會」가 開催될 것이다.

이와 같은 討議에 있어서는 그러한 威脅에 對한 全岐的인 防衛 能力이 評價될 것이다.



<附 録>

6. 韓国軍事援助에 關한 「유엔」 安全保障  
理事会 決議 (1950年 6月 27日)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安全保障理事會는 北韓(괴뢰)軍의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撃이 平和破壞를 造成한다고 斷定하였으며,

戰鬪行爲의 即時 停지를 要求하였으며, 또한,

北韓(괴뢰) 武裝軍을 即時 北緯 38 度線까지 撤収시킬 것을 北韓(괴뢰) 當局에 要求하였으며, 또한, 北韓(괴뢰) 當局은 戰鬪行爲를 停止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武裝軍의 北緯 38 度線 까지의 撤収도 實行하지 않았으며, 또,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回復키 爲하야는 緊急한 軍事的 措置가 要請되고 있다는 國際聯合韓國 委員會의 報告를 注目하였으며,

이 地域에서 그 武力攻撃을 止退하고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爲한 必巵한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하도록 國際聯合 諸會員國에게 勸告한다.

Handwritten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and the angle of the paper. It appears to be a list or a series of notes.